

호주

정보수정일자: 2011. 04. 12

작성처: 시드니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8
- 주요 산업 동향 /9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2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7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9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31
 - 대한수입규제동향 /41
 - 관세제도 /41
 - 주요인증제도 /42
 - 지적재산권 /44
 - 통관운송 /4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9
- 외국기업 투자동향 /52
- 우리기업 투자동향 /55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7
- 진출형태별 절차 /63
- 투자입지여건 /66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71
- 조세제도 /75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9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82
- 물가정보 /84
- 바이어발굴 /85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87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89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2
- 이주정책 가이드 /96
- 출장가이드 /101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16
- 유관기관 웹사이트 /119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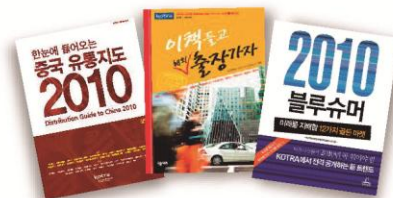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500만원/년
250만원/년

대상

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39')
면 적	768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행정 구역	6州(state) 2準州(territory)
수 도	캔버라
주요 도시	시드니(433만 6,000명), 멜버른(380만 6,000명), 브리스베인(185만 7,000명), 퍼스(155만 4,000명), 아델레이드(115만 8,000명)
인 구	22,565천 명(2010년)
민족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아랍계(1.4%)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 교	영국성공회(24%), 천주교(26%) 등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Julia Gillard총리(실권자) - 2007년 총선에서 당선된 Kevin Rudd 총리 정권에서 부총리를 역임하다 2010년 6월 국민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당내 투표를 통해 노동당 대표로 선출, 국민 투표를 통해 자유당의 Tony Abbott과 접전을 벌이며 호주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로 당선됨.

자료: 호주통계청 등

나. 경제 지표

GDP	US\$ 12,200억(2010년 추정)
실질GDP 성장률	2.7%(2010년)
1인당 GDP	US\$ 54,868(2010년)
실업률	5.0%(2010년 평균)
물가 상승률	2.9%(2010년 평균)
화폐 단위	Australian Dollar(A\$)
환율	US\$1.0564/A\$1.00(11.4.12기준)
기준 금리	4.75%
산업 구조	농림수산업·광업: 9.9%, 제조업: 9.8%, 서비스업: 76.6%
교역 규모	○ 수출: US\$ 2,126억 달러(2010) ○ 수입: US\$ 1,936억 달러(2010)
교역국	○ 수출: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미국 ○ 수입: 중국,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교역 품목	○ 수출: 석탄, 철광석, 금,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구리, 밀 등 ○ 수입: 원유, 승용차, 석유제품, 금,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

자료: IMF, 호주중앙은행, 호주통계청 등

다. 한-호 관계

체결 협정	'65. 09. 21: 무역협정 '75. 06. 17: 무역 및 경제발전 협정(무역협정 대체) '79. 05. 02: 원자력 협정 '82. 07. 12: 이종과세 방지협정('84.1.1 발효) '83. 11. 23: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 교환('83.11.24 발효) '83. 11. 23: 어업협정('83.11.24 발효) '88. 08. 09: 세관지원 양해각서 '88. 11: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교환 '92. 02. 26: 항공협정('92.9.7 발효) '92. 08. 25: 형사사법공조 조약('92.12.19 발효) '92. 08. 31: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 교환('92.9.30 발효) '93. 12. 17: 경제공동위 설립 약정 '95. 03: 표준 및 인증 기술협력 약정 체결 '96. 02. 15: 한-호 환경협력각서 교환 '96. 11. 14: 산업 및 기술협력 약정 '99. 09. 17: 민사사법공조조약, 과학기술협력협정, 자원협력 양해각서 체결 '04. 08: 한-호 자원협력협정 체결 '06. 12: 한-호 FTA 타당성 조사 개시 발표 '08. 04: 한-호 FTA 타당성 조사 완료 '08. 08: 한-호 FTA 협상개시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합의 '09. 03: 양국 정상 회담 개최 및 FTA 협상개시 발표
교역 규모	○ 대 호주 수출: US\$ 66.4억(2010) ○ 대 호주 수입: US\$ 204.6억(2010)
교역 품목	○ 대 호주 수출 품목 -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금, 종이류, 자동차 부품 등 ○ 대 호주 수입 품목 - 원유, 석탄, 철광석, 알루미늄, 아연광, 쇠고기, 사탕수수당, 석유가스, 동광 등
투자 교류 (신고 기준)	○ 호주의 대한 투자: - '62~'10년간 신고 건수 394건, 신고액 19.13억 달러 - '10년 호주의 대한 투자: 신고 24건, 7백만 달러 ○ 한국의 대호 투자 - '62~'10년간 신고 건수 1,142건, 신고액 51.4억 달러 - '10년 한국의 대호 투자: 신고 78건, 6.4억 달러
교민	○ 약 13만 명 추정(어학 연수, 워킹 홀리데이 등 포함)

자료: 외교통상부, 한국 관세청, Invest Korea, 한국 수출입 은행 등

2. 정치 사회 동향

가. 2009~2010 년 호주의 정치·사회 동향

1) 국내 정치

2009 년까지만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노동당의 케빈 러드 총리가 민심을 잃으면서 당내 투표를 통해 부총리인 줄리아 길라드에 의해 일선에서 밀려나게 된다. 집권 후 2 년동안 높았던 그의 정책과 인기는 경기부양책의 하나인 홈인슐레이션 프로그램이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케빈 러드 총리의 주요 공약이었던 탄소절감정책의 실연이 불투명해진 것도 대중의 외면을 받게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09 년 말 등장한 야당, 토니 아보트의 등장 역시 케빈 총리의 인기를 누그러뜨린 이유라고 보겠다. 2010 년 8 월 당내 투표로 총리가 된 줄리아는 2011 년 초에 있을 연방 선거를 앞 당겨 시행하였으며 호주 정치 역사상 70 여년만에 절대 다수당이 없는 형 의회를 형성하였다. 자유당이 주가 되는 연합당과 각고의 접전 끝에 노동당이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과의 연합을 이끌어 내는데 가까스로 성공하여 노동당 정부의 재집권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는 노동당 정부의 NBN(National Broad Band) Project 와 탄소배출거래권 등 신 재생 에너지에 집중한 환경정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2) 금융위기 속 플러스 성장

2008 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병행한 호주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주효하여 2009 년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후 4%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각종 부양책에 따라 부동산 과열 등의 부작용이 하였고, 결국 선진국 최초로 출구전략을 단행했다. 1%의 성장을 보여준 2009 년에 이어 2010 년에도 2~2.5%의 성장이 예상된다.

3) 교역 자율화 확대 기조 유지

정부는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강도 높게 비난해왔으며 보호무역주의 억제를 결의한 G20 선언문을 크게 환영했다. 자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 반면 서비스 부문의 대외 진출 여지는 아직 크다는 것이 이 같은 기조의 주요 배경이다.

4)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호주는 북한 로켓 발사 등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아시아 제국과의 FTA 협상을 확대하는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입지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조기 도입 등을 통하여 녹색 산업 및 녹색부문 국제 협력에 있어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현 정권의 주요 정책안

□ 브로드밴드 정책

비전	관민 합작 투자로 전 국가적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
자금 조달	관민 합작 투자를 위한 47억 달러 규모의 정부 펀드 투입
기술	전국적 FTTN 망
자금 지원 방법	communication fund(20억) + Future Fund(27억)
의사 결정 기구	현 태스크포스 대체
규제	현 규제시스템의 전면 개편
강점	Wimax에 비해 Fixed-Line Fiber 기술이 진보해 있음
약점	정부 펀드 운용 가능성 불확실
비 서비스 지역에 대한 대안	위성통신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관련 전담 기관 "Infra Australia" 설치 및 전담 장관 임명
- 국가 전체의 인프라 망 점검과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해 범국가적 "인프라 감사"를 실시
- 대도시 혼잡 해소를 위한 "Major Cities" 프로그램 가동
- 향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는 사상 유래 없는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택

주택 문제 관련 장관 수준에서 지원	“주택부 장관” 임명, 택지 공급 관련 조사 활동을 위한 국가 기관 설치
주택 인프라 관련 투자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Housing Affordability Fund” 조성: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조세 등의 합리화에 따른 인센티브로 활용
공공 임대 주택 공급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 제공(공급자에 대해)

□ 기술 인력 확보

- 전담 기관인 ‘Skills Australia’ 설치
- 25억 호주 달러를 투입, 중등 교육 기관 내에 직업 훈련원 설치
- 한편 이를 통해 취업 준비 자격증(Job Readiness Certificate)도 발부 예정임.

□ 노사 관계

- 하워드 정부의 Work Choice Policy 를 다시 노동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 노동자 다수가 원할 경우 반드시 단체 교섭을 실시하도록 함.
- 하워드 정부 시절 이뤄진 변화를 전면적으로 환원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은 없을 듯

□ 환경 정책

- 현 재생 에너지 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시행 ('09년8월 법안 통과)
- 교도협약 비준

2) 사회 동향

호주는 IT 붐 - 주택 가격 붐 - 지하 자원 붐 등 고점에서 고점으로 이동하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10 년 이상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 왔다. 그 결과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외견상으로는 이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비교적 첨예한 이슈는 기업 중심의 노동 법 개정, 이라크 파병 문제 등이었으나 전체 호주 사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08 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세계를 강타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주효하여 2009 년 1%에 가까운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였다. 금융위기 후에는 저금리 및 각종 부양책에 따라 일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 최초의 출구전략을 펼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10 년 들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실업률 마저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고급 기술 인력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인 문제는 경제 호황으로 인해 청년층이 어려운 기술이나 학문을 배우기 보다는 요식직업 등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인적 인프라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도시의 급속한 도시화도 문제점이다. 원주민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이민, 유학 등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시드니 지역 등의 경우

사회 인프라가 이를 적절히 뒷받침 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도심의 교통 혼잡,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 각종 편의 시설 부족 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제21차 한-호 자원협위원회 개최 및 자원협정 발효(2005.7월)

2005.7.11~12일 캔버라에서 양국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인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한국 33명, 호주 37명)한 가운데 자원 협정이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1) 양국 간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 수급 현황 및 전망, 2) 교역 확대, 3) 한국이 지분 95%를 가지고 있는 와이웅 탄광 개발에 호주 측이 철도, 수출 항만 확충 등 적극 협조, 4) 호주 Woodside사와 한국 석유 공사 간에 한국 대륙붕 동해심해 지역에 대한 공동 평가 추진, 5)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에너지 부문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출범(2006.1월)

호주,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은 공동으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역내 협정 추진에 합의하였다. (2005년 7월 27일) 이는 미국 주도로 2005년 상반기(약 5개월간)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간에 협의된 아·태 청정 개발 및 기후관련 파트너십(Asia-Pacific Partnership for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에 호주도 참여한 것으로, 동 구상은 역 내의 경제 개발 및 성장의 저해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에 중점을 두었다. 2006.1.11~12 개최된 국별 각료 회의를 통해 "아·태 6개국 기후 변화 파트너십"이 드디어 공식 출범하였으며 동 회의 기관 중 한국은 호주 측과 개별로 반덤핑 및 FTA 등 양국 간 통상 현안과 아·태 파트너십 내 Task Force 운영 방안과 LNG, 유연탄 등 자원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다. 한-호 FTA 타당성 조사 개시(2006.12월)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호 시 한-호 FTA 타당성 조사가 개시되었다. 그간 호주 측은 지속적으로 한-호 FTA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한-미 FTA 등에 따른 우리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지연되어 왔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협상이 개시되면 농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호주의 경우 이미 미국, 태국, 싱가포르, 태국과 FTA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 중국과 타결이 예상되는 등 활발한 양자 협정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라. 노동당 집권 이후 한-호 FTA 진행 전망

양국 FTA 공동 연구는 2006년 12월 발표됐으며 2007년 5월에 개시되었다. 2007년 8월 6일 경제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한-호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한-미 FTA 타결이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시장 개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공동 연구 한국 측 담당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접촉한 결과, 공동 연구는 연내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총선 이후의 한-호 FTA 추진 여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먼저 노동당의 통상 정책을 살펴보면, 1) 다자간 협상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지역·국가 별 FTA는 다자간 협상을 기본으로 해 어디까지나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2) 호주는 WTO 협상에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3) 양자 간 협상에 의한 시장 개방 정도는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 수준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당은 기존 FTA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가해 왔다.

-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협상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 간 협상에 치중함.
- FTA가 호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상 타결 자체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음.
-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호주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음.
- 환경 문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포괄적 FTA 결여
-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가 부족함.
- 협상 시작 전의 타당성 검토 및 영향 평가 조사가 부실했음.

그러나 다자간 협상과 양자 간 협상의 우선권 문제는 특별히 현정부의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다자간 협상이 2006년 중단 위기를 거쳐 겨우 재개되는 등 극히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하워드 정부가 양자 간 협상에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 집권 이후에도 특별히 양자 간 FTA 협상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 또한 FTA 타결이 다자간 협상 진척에 비해 해당부처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므로 관계 부처들은 FTA 협상 진행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노동당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축소해야 한다”와 같은 식의 극단적 주장은 일절 퍼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한-호 FTA 협상 개시가 추진된다면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위에서 언급한 협상 범위의 문제, 절차상 문제 등이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협상 진행이 상당히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한-호 FTA 협상을 위한 예비협의회 개최에 합의(2008.8월)

양국 정부는 2008년 4월 한-호 FTA 타당성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08.8월 정상 회담 시 FTA 협상을 위한 예비협의회 개최에 합의하였다. 예비협의회가 개최되면 여기에서 합의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본 협상이 개시되게 된다.

한편 2008년 4월에 발표된 타당성 연구 결과 보고서는 호주의 ITS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이며 양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동 보고서는 한-호 FTA 기대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서비스 부문 장벽 완화
 - 한국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 기업들의 진출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호 FTA를 통하여 호주는 금융, 법률, 회계 서비스 부문에의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은 서비스 시장 전체적인 유연화와 경쟁력 개선을 추구할 수 있음.
 -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2020년까지 한국은 실질 GDP US\$ 141억, 호주는 US\$ 98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투자 촉진

- 투자 부문 개방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호주 자원 부문 등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임.
- 향후 IT, 금융 서비스, 자동차 산업, 레저 부문에 대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투자 부문 개방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는 2020년까지 한국이 US\$ 63억, 호주가 US\$ 52억으로 추산됨.

○ 상품 시장 장벽 완화

- 관세 장벽
 - 관세 인하로 인해 한국의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 호주 농업계는 한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낙농제품, 곡물, 원당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약품, 화학제품, 와인 등도 주목되는 품목임.
- 비관세 장벽
 - 검역 및 반덤핑 규제 부문에서의 투명성 증대, 라벨링 및 검사 규정 등에서의 협력 증대 등
 - 또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장기간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 및 체제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

종합적으로 한-호 FTA에 따라 포괄적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과 호주는 2020년까지 각각 US\$ 296억, US\$ 227억의 GDP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외교부는 여전히 다자간 협상이 호주의 대외경제정책 핵심임을 강조하면서도 한-호 FTA가 호주에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밝혔다.

바. 2010~11년 한국과의 주요 이슈

1) 한-호 FTA 협상 진행

2009.3 월 양국 정상 회담시 한-호 FTA 협상 개시가 발표되었다. 이 후 세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측은 상품, 투자 등 협정문협상의 대부분을 합의하고 상품양허 핵심 품목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0 년 5 월 제 5 차 협상을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의 상품양허안(관세인하 및 철폐계획)과 관련하여 품목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치고 양허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FTA 체결 시 서비스 부문 장벽 완화, 투자 촉진 등으로 한국과 호주는 각각 US\$ 296 억, US\$ 227 억의 GDP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주가 기존에 태국 등과 FTA 를 체결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던 자동차,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업계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2) 녹색 산업 협력

양국 모두 녹색 산업을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조 및 시공 능력, 호주의 원천 기술 및 파이낸싱 능력 등 상호 보완의 여지가 커 향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계를 중심으로 한 호주 업계는 탄소배출억제 프로젝트와 관련, 한국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2011년, 한-호 수교 50주년

2011년은 한-호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은 2011년을 '우정의 해'로 지정하여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한-호 FTA 협정 추이를 마무리할 때 2011년 내에는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경제 호조와 더불어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선전 등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교 50주년 기념의 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활용, 양국의 비즈니스 확대가 기대된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호주 경제 특징

1) 동부 해안지대에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2010년 기준 동부 3개 주의 인구의 77.5%, GDP의 74.9%를 점유하고 있다.

구분	NSW	VIC	QLD	기 타
GDP 비중 (인구)	32.4% (722만 명)	24.8% (553만 명)	20.3% (450만 명)	22.5% (502만 명)

2) 서비스업과 1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은 취약

2010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6.6%를 차지하며 부동산·비즈니스서비스, 금융보험, 건설업 등이 특히 발달하였다. 제조업은 저임금밀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발달이 부진한데 기계류(자동차 등), 금속제품, 식품 제조업이 비교적 활발하다.

호주의 산업별 GDP 기여도

구분	농림수산·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GDP 비중	9.9%	9.8%	76.6%	3.7%

○ 호주 자동차산업

- 도요타, GM 홀덴, 포드 3개사가 324천만 대 생산('08. 3 미쯔비시 철수)
- 연간 승용차 판매 101만 대(수입산 비중 83%)

3) 광업 부문이 민간투자 및 수출 주도

광업 투자는 전체 민간 투자의 약 17%를 차지하며 2008년까지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자원부문 투자 지속 확대 및 건설업, 운송업 등의 연계 투자를 유발하면서 호주 경제 견인해 왔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호주 광업은 투자 위축, 수출가격 하락, 수요 감소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나 경기 회복 시의 수혜 또한 가장 큰 산업 부문이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광종	매장량(EDR) 세계 순위(비중)	생산량 세계 순위(비중)
석탄	5위(9%)	4위(4.9억톤)
구리	2위(12%)	5위(6%)
다이아몬드	3위(17%)	-
금	2위(12%)	3위
철광석	2위(17%)	1위(3.9억톤)
니켈	1위(38%)	3위(11%)
우라늄	1위(38%)	-
아연	1위(27%)	2위
납	1위(33%)	2위

자료: Geoscience Australia

4) 높은 해외 자본 의존도

토착 자본 미약, 광업 부문 해외 자본 유입으로 외자 의존도가 높다. 은행의 해외 차입을 통한 민간 외채 규모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해외 자본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지급으로 경상 적자도 확대되었다.

나. 2009년 ~2010년 호주의 경제 동향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당초 -1%의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호주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이 주효하여 2009년 2사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0.9%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다. 호주 정부는 금융위기 후 저금리 및 각종 부양책에 따라 일부 주택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선진국 최초의 출구 전략을 시행했다. 2009년 10월부터 연이은 금리인상 단행 및 부동산 시장 지원책에 대한 단계적인 철회가 시작되었다.

호주 중앙은행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4.5%까지 연이어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부동산 가격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의 경기 침체는 거의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소비자 구매력도 2009년 0.8%에서 최대 3.5%까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동향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다. 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으며, 외국 자본이 경제 개발 및 자원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3차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GDP 기여율이 12%에 불과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호주 수출은 농림 수산물에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동남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타겟으로 생산 수출되고 있다.

나. 각 주 별 산업 현황

호주는 연방국가로 6개의 주(States)와 두 개의 자치 테리토리(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드니가 위치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911년에 캔버라를 호주의 캐피탈 테리토리(ACT), 즉 연방 정부의 수도로 정하였다. 호주 전체의 인구는 2,207만 명이며 면적은 7,682,300km 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수도	시드니
인구	7,165,400명
면적	309,443평방미터
주요 산업	철강산업과 기계산업, 전기, 섬유, 화학산업 등 호주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의 석탄 생산
주요 농산물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일
특이 사항	- 풍부한 은과 아연의 보고지. 풍부한 지하 자원 및 농산물 해외 다량 수출. - 시드니와 수도인 캔버라가 위치함.

빅토리아 주

수도	멜번
인구	5,474,300명
면적	87,884평방 미터
주요 산업	자동차, 의약품, BT, 섬유 및 식품가공 산업
주요 농산물	곡물, 낙농식
특이 사항	-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로 내륙에 위치 - 높은 인구 밀도 - 자동차 산업 및 R&D를 기반으로 하는 호주 제조업의 중심지 - 호주 유명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역 본부가 다수 소재 - 호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 차지 - 인구 밀집 지역이 흩어져 있는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시드니 상권과는 별개

퀸즐랜드 주

수도	브리스베인
인구	4,450,400명
면적	667,000 평방 미터
주요 산업	관광산업, 농산물 수출 산업
주요 농산물	설탕과 곡물, 면 등
특이 사항	- 열대 우림에서 온난한 기후대의 다양한 기후 - 아연, 동, 니켈, 석탄 및 천연가스 대량 매장 지역 - 관광산업은 1960년대 이래 발전하여 온 이 지역의 주요 산업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퍼스
인구	2,259,500명
면적	975,290 평방 미터
주요 산업	기계, 철강 및 운송기기 산업
주요 농산물	양모, 고기
특이 사항	- 서유럽과 비슷한 면적 - 수도 퍼스에 지역 인구 70%거주 -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 - 풍부한 양의 금과 각종 미네랄, 철, 니켈 등의 자원 매장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아들레이드
인구	1,629,500명
면적	380,070 평방 미터
주요 산업	전기제품, 자동차 산업
주요 농산물	와인 그라이프, 고기
특이 사항	농업에 부적합한 토양

노던 테리토리

수도	다윈
인구	227,000명
면적	520,280 평방 미터
주요 산업	광산업
특이 사항	우라늄과 구리, 보크사이트, 망간 다량 매장

타스마니아

수도	호바트
인구	504,400명
면적	26,383 평방 미터
주요 산업	목재, 철강, 섬유 산업
주요 농산물	양고기, 각종 과일.
특이 사항	Bass 해협으로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 사이의 작은 섬들이 하나의 작은 주를 이루고 있음.

다. 자동차 산업

호주 인구는 2,100만 명을 돌파하였는데,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의 등록 대수는 약 1,500만 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호주인 두 사람당 자동차 한대(2: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자동차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호주의 자동차 산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엠 홀덴(GM Holden)의 경우 남부 호주 지역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의 적극적인 호주 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호주 자동차 산업은 가격, 기술개발 및 투자 측면에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Ford Australia가 호주 내 자동차 신모델 개발 및 글로벌 디자인 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A\$18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답례로 2006년 5월 초에 A\$1억 이상을 Ford Australia에 지원하기로 발표하는 등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Ford 자동차가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인 GM, Toyota, Ford가 공히 호주 빅토리아 주에 국제 디자인센터를 가지게 됨에 따라 빅토리아주가 자동차 디자인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매년 약 35만 대의 자동차가 호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 총 생산량의 약 35%에 해당하는 14만 대 정도가 중동 등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현지의 침체된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억 호주 달러를 자동차 업계에 지원하는 대신에 관세율은 예정대로 2010년부터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라. 낙농 산업

호주 낙농업(dairy) 제품 생산 규모는 33억 호주 달러로 농산품 중 소고기, 밀에 이어 세 번째이다. 전체 농장 수는 8800여 개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약 50%가 수출되고 있다. 낙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용 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는 생산자조합(co-operatives)이 낙농제품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들의 비중은 50-60% 선까지 감소하였다. 생산자 조합사 중 가장 큰 기업은 Murray Goulburn이며 Dairy Farmers Group, Bonlac Supply Company, Bega 등 연간 우유 사용량(intake volumes)이 1~10억 톤에 이르는 중소 규모 조합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기업은 Fonterra, San Miguel, Parmalat, Nestle, Kraft 등이다.

호주 낙농 기업들의 주요 생산제품 라인은 1) SMP(skim milk powder)·BMP(butter milk powder)·Butter, 2) butter·casein 3)cheese 4) WMP(whole milk powder)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치즈와 WMP 생산에 무게가 실려가는 추세이다.

우유를 제외한 낙농 제품의 경우 전체의 80%가 수출되며 우유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50%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총 수출의 60-70% 정도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된다.

마. ICT 산업 - 호주 브로드밴드 시장

2008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다시 전년대비 19% 증가한 520만 명을 기록하였다. 2006년에는 전년대비 64%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바 있으나, '07년에는 29% 증가, '08년에는 19%에 그쳐 증가 폭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의 브로드 밴드 가입자수 증가세는 최소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유럽 및 아시아의 경쟁국들과는 계속해서 2년 정도의 처진 페이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별로는 Telstra의 ADSL 서비스가 전체 고객의 34%를 장악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Optus의 Cable 서비스가 7.5%로 뒤를 잇고 있다. 3위는 Telstra의 Cable 서비스가 7.2%, 나머지 시장은 소형 Reseller 및 소형 통신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별 점유율
 - Telstra ADSL (34.4%)
 - Optus Cable (7.5%)
 - Telstra Cable (7.2%)
 - ADSL Retailers (46.9%)
 - 소형 통신업체 (4.0%)

호주 정부는 열악한 호주의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A\$430억 불을 투자하여 NBN Project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향후 8년간 진행될 전국적인 대형 프로젝트이다. 3개 그룹으로부터 입찰신청을 받아 진행을 하였으나, 모두 자격 미달로 판단되어 민간 지분 49%와 정부 출자 51%를 통해 새로운 정부 주도 회사를 설립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건설될 통신망은 기존의 Fiber-to-the-Node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Fiber-to-the-Home network 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 통신망은 호주 전역에 있는 학교, 가정, 직장의 90% 이상에게 초당 100 megabits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주 국민들은 지금보다 100배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통신망이 닿지 않는 호주의 나머지 10% 지역에는 위성 및 무선 통신기술을 통해 초당 10megabits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 이다. 제일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지역은 호주 남동부에 있는 섬인 Tasmania주로서, 이 지역에만 47억 호주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바. 농축산업

농업(축산업 포함) GDP 기여도는 과거 3% 수준이었으나 최근 가뭄 연속으로 2%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전체 농업(축산업 포함) 면적은 4억 4,300만 헥타르(전 국토의 58%)이며 퀸즈랜드, 서호주, NSW, 노던테러토리, 남호주 순으로 넓은 농업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농가수는 15만 5,000, 전체 농업 인구 33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곡물류로는 보리, 밀, 수수, 옥수수, 귀리, 쌀이 가장 중요한 작물이며 기타 작물로는 사탕수수가 호주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농작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 지역은 아시아 지역과 중 동 지역이다.

수년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 아시아 지역 인 구 증가 및 식품 소비 패턴 변화, 전 세계적인 재고 수준 저하, 청정연료용 수요(사탕수수 부산물)의 증가 등이 호주 농업 부문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목축은 퀸즈랜드 및 NSW 주가 가장 발달하였으며 호주 전체로는 2,900만 마리의 소와 9,300만 마리의 양, 28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주요 수출 축산품은 양모, 쇠고기, 양고기, 치즈류 등이며 북미,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지로 광범위하게 수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 쇠고기 수입 시장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 은 신선·냉장 91%, 냉동 66%로 절대적이며 이 외 사탕수수원당, 밀, 양모 등도 주요 수입 품목이다.

사. 광업

1) 세계 자원 보유 및 생산 면에서 주재국의 위상

국토 총 면적이 한반도의 약 35배(7,686,850 평방km)에 이르는 호주는 주요 광산물 수출 국으로 OECD 국가중 수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이다.

이밖에 주요 광물 자원으로 보크사이트, 동, 주석, 은, 우라늄(세계 EDR의 27% 차지, 세계 1위), 니켈, 텅스텐, 중사, 연, 아연,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호주는 광물 자원 외에도 원유(세계 EDR의 0.3% 차지, 세계 4대 수출국)와 액화 천연가스(LNG, 세계 EDR의 1.4% 차지, 5위 수출국)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부존 자원 현황 및 생산 동향

□ 원유(Petroleum)

호주의 원유 매장량은 35 억 배럴로 세계 총 매장량의 0.3%를 차지하며, 주요 매장 지역은 남호주 Bass Strait(18 억 배럴) 및 서호주 Carnarvon Basin(11 억 배럴) 지역이다. 원유는 호주의 4 대 수출 품목으로 총 수출의 4.2%(연 A\$50 억)를 차지하고, 주 수출 국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다.

□ 천연가스(LNG)

천연가스는 70 년대 서호주 북서해상 지역인 North West Shelf (NWS)에서 발견되어 생산이 시작됐고, 1989 년부터 LNG 수출을 개시하여 세계 제 5 위 및 아태 지역 제 3 위 의 수출국으로 세계 LNG 수출의 7%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LNG 수출은 연 A\$ 24 억으로 주로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일본 지역 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 한국 등 수출 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는 세계적 수준 의 천연가스(natural gas) 보유국으로 그 매장량이 아태 지역에서 최대 수준인 약 100 Tcf (trillion cubic feet)로 세계 총 매장량 의 2%를 차지하고, 현 생산량 기준시 약 100 년 이상 공급이 가능한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탐사를 통해 추가 발굴 가능 한 잠재 보유량도 50~170 Tcf 정도 존재한다.

□ 석탄(Coal)

세계 총 매장량의 8.3%에 해당하는 약 821 억 톤의 석탄 매장량(향후 230 여년 채굴 가능)을 보유하고 아울러, 세계 제 1 위 석탄 수출국으로 전 세계 석탄 교역의 32%를 차지한다. 연간 2.7 억 톤을 생산하여 세계 제 4 위 생산국(세계 총 생산의 7% 차지)이며, 국내생산의 79%(2.2 억 톤)가 해외로 수출된다. 탄종별로는 제철용탄 (coking coal)이 세계 총수출의 50%이상을, 발전용탄(thermal coal)이 세계 총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은 호주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총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이며, 한국은 석탄 총 수입의 약 4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다.

□ 우라늄(Uranium)

호주는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확정 매장량(RAR: Reasonable Assured Resources, US\$80/kilogram 의 비용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 714,000 톤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RAR 의 27%로 세계 최대 매장국이다. 호주의 6 개 주요 우라늄 광상으로는 올림픽 댐(남호주, 세계 최대 매장지), 앨리게이터 강 주변의 Ranger 와 Jabiluka, Koongarra(노던 테러토리), Kintyre 와 Yeelirrie(서호주)가 있다.

□ 니켈

호주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국으로 세계 매장량의 19.3%인 2,700 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호주의 니켈 생산량은 연간 약 19 만톤이며, 서호주의 Ravensthorpe 와 타즈마니아의 Auebury 에서 새로 생산이 진행되면서 호주의 Murrin Murrin 의 생산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

□ 구리

세계 구리 매장량의 4.6%인 4,300 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 아연

세계 아연 매장량의 17.4%인 8,000 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 철광석

세계 매장량의 13.9%인 25 억 톤을 보유, 세계 3 위 철광석 매장 대국의 자리에 있다.

□ 금

호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은 세계 제 2 위 금 생산국이다. 전국적으로 금광이 산재 해 있으며 대부분이 노천 채굴법으로 생산된다.

□ 망간

세계 최대의 망간 광석 생산국으로 Bootu Creek 탄광, Groote Eylandt 탄광, the Woodie Woodie 탄광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주요 광물 자원 부존 현황

광종	호주(A)	전 세계(B)	(A)/(B)(%)	순위
아연(천 t)	80,000	460,000	17.4%	3
이트륨(t)	110,000	610,000	18.0%	3
일메나이트(천 t)	160,000	1,200,000	13.3%	4
카드뮴(t)	91,000	1,600,000	5.7%	5
금(t)	6,000	90,000	6.7%	2
은(t)	37,000	570,000	6.5%	5
코발트(t)	1,700,000	13,000,000	13.1%	3
지르코늄(천 톤)	30000	72,000	41.7%	1
주석(t)	300,000	11,000,000	2.7%	8
탄탈(t)	80,000	150,000	53.3%	1
동(천 t)	43,000	940,000	4.6%	6
토륨(t)	340,000	1,400,000	24.3%	1
납(천 t)	28,000	140,000	20.0%	2
니켈(t)	27,000,000	140,000,000	19.3%	1
하프늄(t)	600	1,100	54.5%	1
보크사이트(천 t)	7,900,000	32,000,000	24.7%	2
마그네슘(천 t)	120,000	3,600,000	3.3%	6
망간(천 t)	160,000	5,200,000	3.1%	3
리튬(t)	260,000	11,000,000	2.4%	7
루틸(천 t)	31,000	100,000	31.0%	1
희토류 원소(t)	5,800,000	150,000,000	3.9%	4
철광석(백만 t)	25,000	180,000	13.9%	3

주: 2006년 기준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주요 광물 자원 생산이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광종	비중	순위	광종	비중	순위
보크사이트(천 t)	34.8%	1	망간 광석(천 t)	15.1%	3
알루미늄 정광(천 t)	5.7%	5	니켈 광석(천 t)	12.6%	3
안티모니 광석(t)	0.1%	10	니켈 정광(천 t)	8.6%	4
비스무스 광석(t)	7.8%	5	백금 광석(t)	0.0%	10
카드뮴(t)	2.3%	12	셀렌 정광(t)	0.3%	17
크롬 광석(천 t)	0.4%	12	은광석(t)	9.1%	4
코발트 정광(t)	7.6%	7	주석 광석(천 t)	0.5%	10
동광석(천 t)	5.9%	4	주석 정광(천 t)	0.2%	15
동정광(천 t)	2.5%	14	티탄 광석(천 t)	34.7%	1
금광석(t)	11.2%	3	우라늄 광석(t)	19.8%	2
납광석(천 t)	18.3%	2	아연광석(천 t)	10.4%	3
납정광(천 t)	3.5%	6	아연 정광(천 t)	4.3%	6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아. 프로젝트 산업

1) 시장 규모

2009 년 3 월 말 기준 호주 프로젝트 시장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6329 억 호주달러 규모이다. 진행단계 프로젝트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34 억 호주달러, 계획단계 프로젝트는 10.3% 증가한 3956 억 호주달러를 기록했다.

- 프로젝트 범위: 500 만 호주달러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집계
 - 광업(Mining&Metal)
 - 경제기반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도로, 항만, 전력 등
 - 농업(Agricultural Related)
 - 상업건축물(Commercial Building): 사무실 건물 등
 - 제조업(Other Manufacturing)
 -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병원, 복지시설 등

2) 부문별 동향

- 광업 프로젝트
 - 광업 프로젝트 규모는 1938 억 호주달러로 전체 프로젝트시장의 35.6%를 차지
 - 전체 광업 프로젝트 규모는 연말 대비 16.1% 증가했는데,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중 대형 프로젝트의 고려단계(under consideration) 이행, 대형 광물 프로젝트의 건설 개시 (under construction) 이행 등에 기인함.
 - 에너지 및 금속 광물의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이므로 이 같은 광업 프로젝트 증가세는 주목할 만한 동향임.

광업 프로젝트 현황(2009년 3월 말 기준)

(단위: A\$ 억, %)

		Coal	Oil&Gas	Metal ores	Other	계
Under Construction	금액	36	149	225	19	430
	증가율	-1.9	-0.6	58.6	0.2	23.4
Committed	금액	1	116	13	0	130
	증가율	-	14.1	-55.1	-	-1.5
Under Consideration	금액	66	820	379	7	1,271
	증가율	-	77.1	14.1	44.0	46.9
Possible	금액	69	234	100	17	419
	증가율	-	-28.9	-43.2	-7.2	-29.2
계	금액	172	1,318	718	43	2,251
	증가율	-0.4	26.4	5.5	1.7	16.1

주: 2008년 12월 말 대비 증가율임.

자료: Access Economics

- 경제기반 인프라 프로젝트
 - 경제기반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는 A\$ 2247 억으로 전체 프로젝트시장의 35.5%를 차지
 - 전체 경제 인프라 규모는 연말 대비 6.7% 감소했으며, 진행단계 중 "under construction"단계 프로젝트 규모는 13.4%, 계획단계 중 "Under Consideration"단계는 11.3%, "possible" 단계 프로젝트는 5.1%의 감소세를 보임.
 - 경제 기반 인프라 전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 규모가 감소해 프로젝트시장 위축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2009년 3월 말 기준)

(단위: A\$ 억, %)

		진행단계				계획단계				계	
		Under Construction		Committed		Under Consideration		Possible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lectricity, Gas & Water	Electricity supply	75	-11.1	27	24.8	148	-3.2	140	-8.5	390	-5.3
	Gas supply	0	-100.0	0	-	7	-	10	-	17	-12.5
	Water supply & drainage	109	-1.1	40	54.4	47	-24.3	57	-26.0	253	-8.1
	소 계	184	-6.6	67	40.8	202	-9.0	207	-13.8	660	-6.6
Transport & Storage	Road	274	-2.5	5	-	118	0.2	317	-	714	-0.9
	Rail	79	-29.1	16	-6.3	60	-	162	-	316	-9.6
	Water	37	-38.0	58	970.7	17	-67.3	6	-	119	-3.9
	Air&Space	208	-16.4	10	-12.2	1	-77.8	14	-36.2	233	-18.8
	Pipeline& Other	10	70.9	1	-	19	-30.0	43	-	72	-5.1
	Storage	0	-	0	-	0	-	1	-	1	-
	소 계	609	-14.0	90	128.3	214	-17.8	542	-1.5	1,455	-6.6
Telecommunication		5	-67.8	5	-	103	-	19	-	132	-8.0
총 계		798	-13.4	162	76.1	519	-11.3	768	-5.1	2,247	-6.7

주: 2008년 12월 말 대비 증가율임.

자료: Access Economics

- 제조업 프로젝트
 - 제조업 프로젝트(생산시설) 규모는 A\$ 491 억으로 전체 프로젝트시장의 7.8%를 차지
 -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비금속제품·장비 및 기계류 제조시설 프로젝트가 특히 부진함.
- 상업건축물 프로젝트(숙박시설 제외)
 - 상업건축물 프로젝트 규모는 A\$ 303 억으로 전체 프로젝트시장의 4.8% 차지
 - 전분기 대비 6.2% 감소세
-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의 교육부문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실시로 전체 프로젝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3) 지역별 동향

그 동안 호주 프로젝트 투자를 주도한 서호주주가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3개 주(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 프로젝트 현황

(단위: A\$ 백만, %)

	금액	증가율(전분기 대비)	비중
NSW	88,309	-1.5	14.0
빅토리아	80,188	-1.8	12.7
퀸즐랜드	136,524	-0.7	21.6
서호주	172,119	0.2	27.2
남호주	36,536	8.4	5.8
타스매니아	10,466	-3.6	1.7
ACT	5,301	-10.9	0.8
노던테러토리	47,278	60.2	7.5
기타	56,159	20.7	8.9
계	632,880	4.2	100.0

자료: AccessEconomics

자. 녹색에너지 산업

호주는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케빈 러드 수상이 이끄는 현 여당의 기후정책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25%, 2050년까지 60% 감축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재생에너지발전목표(RET) 법안이 2009년 8월 20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재생에너지발전목표법안의 통과로 호주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 수준보다 45,000 GWh가 증가한 약 60,000 GWh에 달하게 되며 이의 달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별로는 호주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 풍력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은 호주 전체 전력 생산의 0.7%를 차지한다. 연평균 전력생산은 2,500GWh로 추산된다. (자료: Auswind) 현재 운영중인 풍력발전소는 70곳이며 남호주주(South Australia)에 호주 전체 풍력발전시설의 51%가 위치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총 48개 풍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진행단계(착공 또는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7개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호주 프로젝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풍력 프로젝트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토 단계(타당성 조사 또는 기초 조사)에서 진행단계로 이행하는 프로젝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자금조달상 어려움 및 투자심리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는 없으며 풍력협회(AUSWIND)는 이 같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단, 대형 전력 회사가 풍력 시설에 의해 전력을 조달할 경우 받게 되는 간접적이 손해는 존재한다.

풍력 발전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주)	기업명	시설규모(KW)
Wattle Point	SA	AGL	90,750
Alinta Wind Farm	WA	Babcock and Brown Wind Partners	89,100
Lake Bonney – Stage 1	SA	Babcock and Brown Wind Partners	80,500
Emu Downs	WA	Stanwell Corporation and Griffin Energy	79,200
Mount Millar	SA	Tarong Energy	70,000
Cathedral Rocks	SA	Hydro Tasmania & Corporacion Energia Hidro electrica de Navarra- EHN(Spain)	66,000
Woolnorth Stage 2(Bluff Point)	TAS	Roaring 40s	54,250
Challicum Hills	VIC	Pacific Hydro	52,500
Canunda Wind Farm (Lake Bonney Central)	SA	International Power	46,000
Starfish Hill	SA	Tarong Energy	34,500
Yambuk	VIC	Pacific Hydro Ltd	30,000
Albany	WA	Verve Energy	21,600
Toora	VIC	Stanwell Corporation	21,000
Codrington	VIC	Pacific Hydro	18,200
Windy Hill	Qld	Stanwell Corporation	12,000
Wonthaggi	VIC	Wind Power	12,000
Woolnorth Stage 1	TAS	Roaring 40s	10,500
Blayney	NSW	Eraring Energy	9,900
Crookwell	NSW	Eraring Energy	4,800
Nine Mile Beach, Esperance	WA	Verve Energy	3,600
Ten Mile Lagoon, Esperance	WA	Verve Energy	2,030
Huxley Hill – King Island 2 TAS	TAS	Hydro Tasmania	1,700
Hampton	NSW	Hickory Hill Wind Energy	1,200
기타(57개)			6,788
계			818,118

자료: ABARE

□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발전소

Anangu Pitjantjatjara Solar Station, SA	○ 용량: 200kW ○ 공사금액: \$2.5 백만 ○ 남부호주 북서쪽 원주민구역에 시범설치
Hermannsburg, Yuendumu & Lajamanu Power Station, NT	○ 용량: 720kW(3 개지역에 나뉘어 설치) ○ 총 공사비: \$700 만 ○ 발주, 공사, 운영: Solar Systems
CSIRO Energy Centre, Newcastle, NSW	○ 용량: 실험용으로 90kW-PV Cell, 60kW-Pacific Solar, 120kW-Tyco two Capstone natural gas microturbines 등 3 종의 설비 ○ 총 공사비: \$34 백만 달러, CSIRO 에서 운영
Large scale Solar Concentrator Power Plant, VIC	○ 공사스케줄: 2010 년 착공하여 2013 년 완공 ○ 주관회사: Solar Systems Pty Ltd. ○ 발전소위치: 83 Lime Avenue, Mldura, Victoria ○ 총공사규모: A\$420 백만 달러(A\$295 백만- 민자, A\$125 백만-연방 및 주정부 지원) ○ 총 발전규모: 154MW ○ 발전량: 27 만 MWh/년(45,000 가구 1 년 전력사용량과 같은 규모) ○ 발전방식: Solar Systems 가 자체 개발한 태양집열판인 Heliostat Concentrator Photovoltaic(HCPV)셀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 접시와 같은 태양전지가 집열을 하여 발전하는 방식. HCPV 는 기존 솔라셀보다 3 배 이상의 집열 효과가 있다고 함. ○ 입찰계획: 2009 년 중 후반에 공개 입찰할 예정 ○ 주관업체인 Solar Systems 에서는 HCPV 를 멜버른에서 직접 생산하고 생산설비를 수출도 할 예정임.

재생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가 여러 국가들의 정책적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호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9년도에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각주 정부의 지원책이 다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는 2009년 7월 오픈을 목표로 뉴캐슬에 The Australian Solar Institute를 설립하여 그 동안 뒤쳐진 태양전지분야 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있다. (재생에너지기금 5억 달러 중 1억 달러 투자)

호주에서의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는 상업용보다는 주로 가정용 발전과 온수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5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Solar Cit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최소 5기가 용량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Solar City: 연방정부에서 5년간 7,500만 달러를 출연하여 5개의 솔라시티를 지정 운영 향후 5년안에 5MW용량의 태양전지모듈을 설치할 계획임. 지정된 솔라시티로는 애들레이드, 타운즈빌, 블랙타운(시드니), 앨리스 스프링스 등이 있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양열 온수보일러의 경우 일본/미국 합작회사인 Rheem(Solahart)사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기타 여러 공급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가정용 태양광 모듈발전 시스템 공급업체가 3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며 설치하는 BCSE에서 인가한 설치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 온수시스템은 호주의 5개 업체에서 생산이 되어 국내공급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생산량 약 10만대 규모). 주요 생산업체는 Chromagen, Conergy, Dux Hot Water, Ecosmart Hot Water, Rheem 등이다.

태양열발전소의 경우 2010년 착공을 목표로 북서부 Victoria주에 Solar Systems라는 회사가 154MW규모의 PV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 또 호주는 2030년까지 5기가와트의 전력을 태양열발전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대규모 발전소 프로젝트는 하기의 Large Scale Solar Concentrator Power Plant이다. 연구/대모용 및 벽지의 소규모 발전용으로 약 20여 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다. (발전용량: 약 8메가와트 규모)

태양광전력생산에 핵심적인 부품인 PV(태양전지)의 경우 호주유일의 생산업체인 BP Solar가 내년 3월에 시드니올림픽공원에 위치한 공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어서 태양전지 제품에 대한 수입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호주의 통상정책 기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호주의 경우 오히려 수입규제 품목이 감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와는 현저히 먼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호주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위축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제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전체 교역 장벽을 낮춤으로서 자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미 호주의 케빈 러드 수상은 주요 선진국 수반에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으며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자국 철강산업의 위기가 예상되자 이를 크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과 국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호주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기 타결 FTA 현황 및 효과

1) 기 타결 FTA 현황

- 뉴질랜드(1983.1 발효)
- 싱가포르(2003.2 타결, 2003.7 발효)
- 태국(2003.10 타결, 2005.1 발효)
- 미국(2004.5 타결, 2005.1 발효)
- 칠레(2008.5 타결, 2009.3 발효)
- 호주-뉴질랜드-ASEAN FTA (2008.8 타결, 2009 하반기 발효)

2) FTA 발효국과의 상품 교역 동향

FTA 발효 이후 대미, 대 싱가포르 수입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대미 수입 증가율은 전체 수입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 싱가포르 수입 증가율은 점차 감소세에 있다. 2008년의 대 싱가포르 수입 급증은 호주에서 생산된 원유를 싱가포르 소재 정유소에서 정제하여 수입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FTA의 효과로 볼 수 없다.

반면 대 태국 수입 증가율은 매년 30~40%의 증가세를 보이며 급상승하였다. 특히 호주의 수입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2009년의 경우에도, 태국은 상위 10개 수입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국가이다. 이는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 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 일본 등 글로벌 기업이 태국으로 제조기지를 이전하거나 태국에서의 생산물량을 증가시킨 점 등을 반영하고 있다.

호주의 대 FTA 발효국 상품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전체	미국	싱가포르	태국
2006	금액	132,778	18,531	8,069	4,723
	증가율	11.9	13.6	23.0	28.9
2007	금액	157,926	19,824	8,801	6,629
	증가율	18.9	7.0	9.1	40.4
2008	금액	190,868	22,594	13,867	8,626
	증가율	20.9	14.0	57.6	30.1
2009	금액	159,272	17,565	8,812	9,246
	증가율	-16.55	-22.25	-36.46	7.51
2010	금액	193,542	20,899	9,784	10,108
	증가율	21.6	27.0	11.04	9.3

자료: World Trade Atlas

수출 측면에서는 어느 국가와도 FTA를 통해 수출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호주의 주력 수출 상품이 관세가 거의 없는 지하 자원류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대 FTA 발효국 상품 수출 동향

(단위: USD백만, %)

		전체	미국	싱가포르	태국
2006	금액	123,478	7,595	3,441	3,222
	증가율	16.6	7.6	9.1	6.9
2007	금액	141,379	8,441	3,417	3,704
	증가율	14.5	11.1	-0.7	15.0
2008	금액	186,504	10,210	5,249	4,563
	증가율	31.9	21.0	53.6	23.2
2009	금액	154,427	7,566	4,247	3,365
	증가율	-17.20	-25.88	-18.85	-26.16
2010	금액	212,743	8,481	4,460	5,395
	증가율	37.7	12.08	5.0	60.3

자료: World Trade Atlas

3) FTA 발효국과의 서비스 교역 동향

서비스 수출의 경우 대 싱가포르, 대 태국 서비스 수출은 2005년 이후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수입의 경우 대 태국 서비스 수입이 2005년 이후 전체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대 FTA 발효국 서비스 수출입 동향

(단위: AUD백만, %)

서비스 수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전체
2005~2006	금액	2,767	698	5,352	43,738
	증가율	12.11	5.43	18.04	8.70
2006~2007	금액	3,064	820	5,482	47,931
	증가율	10.73	17.47	2.42	9.58
2007~2008	금액	3,828	934	5,750	52,580
	증가율	24.93	13.90	4.88	9.69
2008~2009	금액	2,935	1,079	5,644	52,998
	증가율	-23.32	15.52	-1.84	0.79
서비스 수입		싱가포르	태국	미국	전체
2005~2006	금액	4,007	1,209	7,550	43,231
	증가율	33.70	32.56	7.00	6.95
2006~2007	금액	4,310	1,621	8,883	48,289
	증가율	7.56	34.07	17.60	11.69
2007~2008	금액	4,959	2,055	10,488	57,646
	증가율	15.05	26.77	18.06	19.37
2008~2009	금액	3,488	2,283	10,072	53,777
	증가율	-29.66	11.09	-3.96	-6.71

주: 회계연도 기준 작성 자료. 호주의 회계연도는 7.1~6.30임

자료: 호주통계청

다. 협상 진행 중인 FTA

1) 중국(2005.4월 협상 개시)

2008.12.1~5일 제13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 중국 이 호주의 수출능력을 크게 보아 국내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반면 호주는 가뭄 등에 의한 생산 감소 등을 강조하였다.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체제 등을 포함,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세관 절차 관련 협의는 거의 완료되었으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매우 더딘 상황이다. 세관절차에 관한 협의에서는, 통관 품목의 위생 특히 식물 위생 관련한 절차와 기술적인 장벽(TBT)이 양국간 다소 완화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하여 WTO 절차 준수에 대한 합의 및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건설적인 논의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 측이 다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 투자, 항공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의학 및 교육, 양국간 인적 이동에 대해 중국 측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달 시장 관련 개방 논의는 중국측의 비적극성으로 거의 진전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FTA로 커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정부가 위구르 지도자 Rebiya Kadeer의 입국을 허용한 문제와 중국이 호주 자원회사인 Rio Tinto의 직원 3명을 첩보활동

협의로 구속한 사건으로 양국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나, 시몬 크린(Simon Crean) 호주 통상장관은 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 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FTA 제14차 협상이 '09년 9월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말레이시아(2005.4월 협상 개시)

2006년 협상이 개최된 이래 양국간 협상은 2007년 초에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당시 최종 타결시점에 이르렀던 호주-뉴질랜드-ASEAN FTA (2008년 8월 타결) 에 양국이 우선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10월 양국은 협상 재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 회담이 2008.11월 개최되었다. 기 체결된 호주-뉴질랜드-ASEAN FTA에 부가하여 새로운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호-말 FTA 협상의 관건이다.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MAFTA) 5차 협상이 2009년 8월 17-20일 사이에 콰라룸푸르에서 열렸는데, 그 동안 중단되었던 협의내용 전체를 상호 점검하기 위한 모임의 성격이 강했다. 양국간 MAFTA의 중요성은 앞서 8월 4일에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Joint Trade Committee (JTC)에서도 재차 강조된 바 있다.

MAFTA 5차 협상에서는 관세, 서비스, 투자, 인적 이동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내용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진행이 이루어졌는데, 세관 절차, 투자, 통신, 인적 이동, 원산지 표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레이시아 측에 의해 제기된 지적 재산권, e-Commerce, 경쟁 정책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호주 캔버라에서 2009년 12월 7-11일 사이에 개최될 계획이다.

3) 일본(2007.1월 협상 개시)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8차 협상에 이어, 2009. 7월 27-31일 사이에 호주 캔버라에서 양국간 9차 FTA 협상이 개최되었다.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있어서 지난 회의에서보다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양국간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전달되었는데, 호주는 금융서비스, 통신, 법률 서비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분야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적용이 어려운 난제가 있어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상품시장과 관련해서는 애완동물 음식, 해산물, 원예상품 등에 대해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호주는 이 분야에서의 시장접근이 더욱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주의 생산역량이나 늘어나는 국내 수요를 감안하면, 일본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생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 형태의 시장개방이라도 일본의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양국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산지 표기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농산물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 외 에너지 및 천연자원, e-Commerce, 정부 구매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큰 진전은 없지만, 꾸준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GCC(2007.7월 협상 개시)

2007.11월 이후 오랜 지연 끝에 3차 협상이 2009.2월 개최되었고, '09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4차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구매, 경쟁정책, 법률산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상품시장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미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행은 완만하였지만 협의에 따른 별다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측간의 입장 설명과 그에 대한 확인 정도가 이루어졌다. 투자는 양측간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워낙 차이가 커 협의가 다음 회의로 다시 미루어졌으며, 정부구매는 상당부분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몇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기회로 추가 협의가 미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양국은 앞으로 정례 FTA가 아닌 중간 중간에도 수시로 만남을 가져 FTA 타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5) 한국(2009.3월 협상 개시)

2009.3월 국빈 방호 시 FTA 협상 개시가 공식 발표되었다.

□ 추진경과

- 2006.12월 한-호주 정상회담 시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및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에 합의
- 2007.05/08/10월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 개최
- 2008.4 한-호주 FTA 민간공동연구보고서 완료
- 2008.4.22 한-호주 FTA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서울)
- 2008.10.13-15 한-호주 FTA 제1차 예비협의(서울)
- 2008.12.16 한-호주 FTA 제2차 예비협의(화상회의)
- 2009.02.16 한-호주 FTA 관련 공청회(서울)
- 2009.3.5 한-호 정상회담 시 협상 개시 공식 발표
- 2009.4.23-24 한-호주 FTA 사전준비회의 개최
- 2009.5.19-22 1차 협상(캔버라)
- 2009.8.31-9.4 2차 협상(서울)
- 2009.11.30-12.4 3차 협상(캔버라)
- 2010.3.15-18 4차 협상(서울)
- 2010.5.24-28 5차 협상(캔버라)

□ 한-호 FTA 기대 효과

- 서비스 부문 장벽 완화
 - 한국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 기업들의 진출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호 FTA 를 통하여 호주는 금융, 법률, 회계 서비스 부문에의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은 서비스 시장 전체적인 유연화와 경쟁력 개선을 추구할 수 있음
 -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2020년까지 한국은 실질 GDP US\$141억, 호주는 US\$98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투자 촉진
 - 투자 부문 개방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호주 자원 부문 등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임
 - 향후 IT, 금융서비스, 자동차산업, 레저 부문에 대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투자부문 개방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는 2020년까지 한국이 US\$63억, 호주가 US\$52억으로 추산됨
- 상품시장 장벽 완화
 - 관세 장벽
 - 관세 인하로 인해 한국의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 호주 농업계는 한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낙농제품, 곡물, 원당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약품, 화학제품, 와인 등도 주목되는 품목임
 - 비관세 장벽
 - 검역 및 반덤핑규제 부문에서의 투명성 증대, 라벨링 및 검사 규정 등에서의 협력 증대 등
 - 또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장기간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 및 체제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
- 종합적으로 한-호 FTA 에 따라 포괄적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과 호주는 2020년까지 각각 US\$296억, US\$227억의 GDP 증가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6) 기타

- 대 인도네시아 FTA 타당성 조사 완료
 - 결과보고서: http://www.dfat.gov.au/geo/indonesia/aus-indon_fta_ifs.pdf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호주의 2010년 수출은 미화 2,127억 달러, 수입 1,935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09년 대비 대폭 상승한 4,06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상국, 9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최근 교역 규모 및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십억 달러, %)

순위(10 기준)	국가	2008	2009	2010
	전체	378.0	313.4	406.20
1	중국	57.3	62.0	90.20
2	일본	58.9	43.1	56.80
3	미국	32.8	25.1	29.40
4	한국	20.8	17.5	25.50
5	태국	15.50	14.30	17.8

자료: World Trade Atlas

최근 수출 실적 및 주요 수출국

(단위: 십억 달러, %)

순위(10기준)	국가	2008	2009		2010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187.2	154.2	-17.2	212.7	37.7
1	중국	27.5	33.6	22.3	53.9	60.3
2	일본	41.9	29.8	-29.0	40.1	34.5
3	한국	15.2	12.3	-18.9	18.9	53.3
4	인도	11.3	11.6	2.3	15.1	30.2
5	미국	10.2	7.6	-25.9	8.5	12.1

자료: World Trade Atlas

최근 3년간 수입실적 및 주요 수입국

(단위: 십억 달러, %)

순위(10기준)	국가	2008	2009		2010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190.8	159.2	-16.6	193.5	21.5
1	중국	29.4	28.6	-2.8	36.3	26.9
2	미국	22.6	17.6	-22.2	20.9	19.0
3	일본	17.3	13.3	-22.3	16.7	25.8
4	태국	8.6	9.2	7.5	10.1	9.3
9	한국	5.5	5.3	-2.8	6.6	24.1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2010년 중 호주는 모든 부분에서 상승세를 나타냈고 구리는 전년 대비 48.29%라는 큰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품 목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45.2	-22.87	61.3	35.54
2	광석	31.2	-11.72	57.5	83.14
3	금	12.9	-2.98	14.8	14.38
4	육류	5.2	-13.16	6.1	18.09
5	무기화학류	4.1	-30.79	5.2	27.45
6	기계류	4.3	-15.24	5.2	21.02
7	곡류	4.3	-4.91	4.7	9.80
8	알루미늄	3.5	-33.84	4.5	28.02
9	의약품	3.2	-3.77	3.6	13.35
10	구리	2.2	-30.31	3.2	48.29

자료: World Trade Atlas

품목별 수입 동향을 보면 2009년에는 국제 자원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금을 제외한 전 품목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주요 수입품목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품목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기계류	25.0	-9.49	28.8	14.99
2	원유	20.3	-335.35	26.6	21.03
3	자동차	16.8	-27.53	24.6	46.32
4	전자기기	17.8	-5.4	20.8	16.81
5	의약품	7.1	4.63	8.5	19.95
6	금	8.6	-12.08	8.3	-3.96
7	의료기기	5.7	-6.1	6.7	17.33
8	플라스틱	3.7	-16.92	4.5	22.32
9	철강	3.6	-13.1	3.9	8.70
10	유기화학	2.8	-16.43	3.4	20.99

자료: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08년 사상 최대 적자를 시현했던 대호 무역수지는 2009년 들어 그 수치가 조금 증가하였으나 2010년 다시 감소했다. 수출은 66.4억 달러로 '09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고, 수입 역시 205억 달러로 38.6% 늘어났다.

한국의 대 호주 연도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2	2,340	7.7	5,973	7.9	-3,633
2003	3,272	39.9	5,916	-1.0	-2,644
2004	3,378	3.3	7,438	25.7	-4,060
2005	3,812	12.8	9,859	32.6	-6,047
2006	4,692	23.1	11,309	14.7	-6,617
2007	4,691	-0.0	13,232	17.0	-8,541
2008	5,171	10.2	18,000	36.0	-12,829
2009	5,243	1.4	14,756	-18.0	-9,541
2010	6,642	26.7	20,456	38.6	-13,815

자료: KITA 무역통계

나. 품목별 한-호 수출입 동향

자동차 및 부품, 경유, 휴대폰, 가전제품 등이 대호 주요 수출품목이다.

2010년에는 승용차, 경유 등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휴대폰, 칼라 TV 등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10년 2월 승용차 판매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수출은 승용차부분에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 호주 품목별 수출

(단위: U\$백만,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0		2011.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411	승용차	1,995	52.3	315	10.5
2	1332	경유	792	0.5	101	-24.7
3	7461	선박	234	456,681	73	2,120,604
4	7420	자동차부품	144	52.0	47	146.8
5	1331	휘발유	190	150.3	44	71.6
6	8121	무선전화기	317	-15.4	38	7.4
7	2340	복합비료	15	-30.8	24	375
8	1336	윤활유	66	141.4	21	209.8
9	2140	합성수지	124	20.3	19	9.3
10	7412	화물자동차	103	39.1	19	1.9
11	2522	인쇄용지	121	39.6	17	-8.9
12	7251	건설중장비	87	6.4	17	54.0
13	3203	타이어	97	-1.0	16	-11.7
14	8211	칼라TV	142	-17.5	16	41.0
15	7111	원동기	29	105.7	16	34.4
16	8500	전선	145	121.6	16	-4.5
17	8230	냉장고	60	15.3	13	21.2
18	8352	축전지	78	59.9	11	-9.1
1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9	8.7	10	-9.0
총계			6,642	26.7	1,066	17.6

주: 품목분류는 MTI 4단위 기준임

자료: KITA 무역통계

2010년에는 경기회복 및 자원가격 상승으로 대호수입이 38.6%로 증가 하였고 2011년에는 더 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철강, 원유 등 광물/에너지자원과 육류, 사탕수수 등이 대호주 수입 주요 품목이다.

한국의 대 호주 품목별 수입

(단위: U\$백만,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MTI)	2010		2011.1~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1120	철광	4,304	97.2	902	108.6
2	1322	유연탄	4,950	15.3	893	51.6
3	1310	원유	2,453	30.1	604	107.7
4	1130	동광	1,023	137.5	166	-15.4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800	22.8	148	18.7
6	1340	천연가스	450	-10.5	124	50.1
7	221	가축육류	652	31.8	114	35.2
8	158	당류	658	51.3	113	32.6
9	111	곡류	268	13.9	99	145.3
10	1190	기타금속광물	493	31.2	87	-7.1
11	1111	금	375	25.4	79	30.4
12	6231	니켈괴및스크랩	371	61.0	74	70.1
13	1321	무연탄	339	37.9	68	53.0
14	2282	암모니아수	110	26.1	51	184.3
15	1329	기타석탄	166	224.6	48	220.6
16	1160	아연광	168	67.6	44	-23.7
17	1350	LPG	320	48.1	40	-38.5
18	6251	연괴및스크랩	83	-7.6	26	2.8
19	6191	강반제품	316	133.3	25	-61.5
총계			20,456	38.6	3,950	46.8

주: 품목분류는 MTI 4단위 기준임

자료: KITA 무역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동향

2009년 9월 16일 기준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은 19개로 '08.12월 조사시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신규 규제 품목은 중국산 휴지, 그리스산 건포도 등 기존에 조사가 진행되던 3품목으로 규제 대상 품목 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최근 호주에서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호주의 경우 오히려 수입규제 품목이 감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와는 현저히 먼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호주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위축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제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전체 교역 장벽을 낮춤으로서 자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미 호주의 케빈 러드 수상은 주요 선진국 수반에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으며,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자국 철강산업의 위기가 예상되자 이를 크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과 국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호주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09.9.15일 기준, 호주의 신종 플루 바이러스 감염자가 36,138에 이르고 사망자 수가 171명으로 식품류 등에 대한 검역이 다소 엄격해졌다.

□ 자동차 관련 보호무역주의 동향

동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기보다는 자국 제조업 부양책의 성격이 강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호주산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므로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캐빈 러드 호주 총리는 2008년 11월 10일 위기에 처한 현지 자동차 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62억 호주달러(38억 미달러)의 규모의 정부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호주 자동차 생산업체는 2008년 초 미쓰비시사의 철수로 현재 3개사(도요타, 지엠홀 덴, 포드)가 있는데, 이 중 지엠홀덴과 포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현지 생산 자동차의 판매 부진으로 호주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최근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우려로 자동차 판매대수가 더욱 감소하자 사실상 자력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자동차 산업 지원 계획은 2008년 8월, 전 빅토리아주 수상 Mr. Bracks가 호주 정부에 보고한 '호주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됐는데, 이번 지원계획에서 발표된 보조금 지원규모는 이 보고서의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했다. 호주 정부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 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호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자칫 호주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호주의 자동차 산업은 부품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고용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호주 최대의 제조산업이며, 최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호주도 현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했다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 정부 보조금 주요 지원 내용

- ATS(Automotive Transition Scheme)
 - 규모: 34 억 달러(Mr. Bracks 는 25 억 달러 지원 건의)
 - 대상: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
 - 목적: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확대, 수출장려
 - 기간: 10 년간(2011~20 년)
 - 성격: 2001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ACIS(Automotiv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Scheme)를 대체하게 되며, ACIS 보조금은 관세 크레딧 형태로 지원되는 데 반해 ATS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원 예정임.
- 친환경차 프로젝트
 - 규모: 13 억 달러(Mr. Bracks 는 10 억 달러 지원 건의)
 - 대상: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
 - 목적: 연료 절감형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
 - 기간: 10 년간(2009~2018 년)

- 자동차부품업계 구조조정 보조금 지원
 - 규모: 1 억 1,630 만 달러(Mr. Bracks 는 6,000 만~8,000 만 달러 지원 건의)
 - 대상: 자동차 부품 업체
 - 목적: 기업 간 인수·합병, 기업 내 생산설비 통합 촉진
 - 참고: 호주 정부는 호주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약 200 개사 중 60 여 개사는 장기 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부품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LPG 차량 교체 지원
 - 규모: 1050 만 호주 달러
 - 대상: 기존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소비자
 - 참고: 기존에는 LPG 차량으로 개조 시 1,000 달러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8 년 11 월 10 일부터는 2000 달러로 상향 조정
- 기타 지원 정책
 - 자동차 부품 유통구조 개선(2,000 만 달러)
 - 수출 마케팅 촉진(630 만 달러)
 - 자동차 산업 혁신위원회 설립(자동차 생산업체, 부품업체, 노조, 연방 및 주정부 장관으로 구성)

나. 수입 규제 제도

1) 수입 허가

동식물,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수입은 사전 수입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에도 자동차는 사전 수입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호주에 수입되기 전(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 수입상은 수입 대상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 부처와의 상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검역 관련 부처(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입 허가 신청 품목에 대한 Risk Analysis Management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특정 품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

2) 원산지 규정

수입된 모든 품목들에는 원산지 규정(ROO)이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 수입 할당, 반덤핑, 상계 관세, 라벨링 문제 등의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데, 호주는 1995년에 체결된 WTO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WTO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인 경우에는 우선 순위로 빠른 처리와 여러 혜택이 고려되며, 특혜 관세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원산지를 규정하는 원칙은 수입된 품목이 어느 특정한 나라 한 곳에서 전부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한 곳 이상의 나라에서의 생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짓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적용함으로써 판단되기도 한다.

- 관세 등급/분류에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
- 자세한 제조 과정
- 첨부된 다른 부가가치의 비율

그 밖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할 수 있다.

- Director Origin Australian Customs Servic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ACT 2601 Australia
- Fax: 02-6275-6377
- Home Page: <http://www.customs.gov.au>
 -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좌측 메뉴에서 'import/export'를 클릭, 'Free trade agreements (ROO)'을 선택

3) 관세법 위반 시 제재 내용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분류/적용되어 처리된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업자나 업체에서 전체적인 벌금이나, 부분적인 벌금을 물게 된다.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벌금이 부과되지만,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서류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은 서류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하며 최소벌금은 A\$ 500 이다.

- 호주 세관 정보 센터
 - New South Wales 3rd Floor, Tower Sydney Central Building, 477 Pitt St GPO BOX 8 Sydney NSW 2000
 - Tel) 1300-363-260
 - Fax) 02-9213-4043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ustoms Hous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City ACT 2601
 - Tel) 02-6275-5041
 - Fax) 02-6275-6005

4) 검역 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검역 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하여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 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빠른 검역 통과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의 정확한 라벨링과 편리한 포장 상태가 요구된다.

모든 품목들에 대한 일반적인AQIS의 검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물품 반입 시 호주 검역청에 제반 선적 서류 제시
- 검역청이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 작성
- 검역관의 검역 실시(정밀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역관이 지정하는 특정 검역 장소로 운반)
-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인도
- 검역의 결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의 성질에 따라 소독/폐기/기타 처리됨.
- 검역이 완료된 경우 검역청은 확인 서류 발급
- 검역 완료 이후 수하인이 7일 이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검역청은 해당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음.

검역 기준에 따른 식품류의 주요 품목별 수입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Canned Meat Product(캔 처리된 고기 식품)
 - 생선류가 아닌 육류를 5%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수입 시 사전허가 필요
- AQIS의 승인을 받은 가공 공장에서 제조된 상품만 수입 가능
- 육류는 열처리 되어야 하며, 공인된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함.
- 도살된 가축은 도살 전후에 공인된 수의 공무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함.
- 매 선적 분마다 공인된 수의사가 발행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고기 성분의 맛이 함유된 라면 등 면류의 제품은 수입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함.
- Poultry(가금류)
- 조리된 통조림 제품(cooked canned poultry)은 특별한 가공 조건을 충족해야 함.
- Cooked uncanned poultry의 제품은 뉴질랜드에서만 수입 가능
- Dairy Products(유가공 식품)
- 모든 유가공 및 유 함유 제품을 10% 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AQI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국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음.
 - Category1: Foot and Mouth Disease(FMD)가 없는 국가
 - Category2: FMD의 예방 접종을 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FMD의 발병이 없는 국가
 - Category3: 기타 국가
- Fish and Fish Products (어류 및 어류 식품)
 - 연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산물에 검역상에 별다른 큰 문제 없음
- Eggs and Egg Product(달걀 및 달걀 제품)
 - 계란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며, 계란 함유량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AQIS의 허가 하에 수입이 가능
- Fresh Fruits and Vegetable(신선한 과일 및 채소): 수입 시 사전 허가 필요
- Frozen Fruit and Vegetable(냉동과일 및 채소): 18°C상태로 운송된 제품만 수입 가능

5) 수입 금지 지역

AQIS는 특별히 수입 금지 지역을 정하여 놓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지역별로 한해 호주의 사람/동물/식물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하여 놓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 품목을 재배/생산하는데 대한 양 국가간의 특정 협약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그의 한 예로, 필리핀의 망고는 수입 금지 품목 중 하나였으나, 필리핀이 호주의 pest risk 협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수입되고 있다.

6) 수입 금지 품목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AQIS의 Risk Analysis Management 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 및 오렌지를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Narcissus Fly, Genud Musa, Xanthomonas Campestris, Fire Blight(고사병), Pear Blight(배고사병), Cabbage Butterfly(배추흰나비), Pieris Rapae, Pseudomonas Syringae, Corynebacterium Flaccumfaciencis, Colletotrichum Lindemuthianum, Mosaic(모자이크병), Narcissus Fly, Downy Mildew(노균병), Wood Wasps(목재 말벌) 등의 질병 및 해충의 위험이 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이며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제가 따른다.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여부에 따라 수입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그 밖에 내용물이 사실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7) 검역 관련 기관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검역청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수입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은 검역청의 ICO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케이스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로부터도 접근이 가능한데, 호주 검역청의 웹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 Australian Quarantine & Inspection Service
- <http://www.daffa.gov.au/aqis>

8) 수입 쿼터

수입 쿼터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9)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 절차 개관

대호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TGA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한다. 아래 설명은 의료기기 중심이나 의약품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호주 의료기기 시장은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에서 규제한다.

-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
 - Email: info@tga.gov.au
 - Phone: 02 6232 8610, Fax: 02 6232 8605
 - Post: TGA,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http://www.tga.gov.au>
- 일반적인 의료기기 관련 연락처
 - Email: 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
 - Phone: 1800 141 144(freecall)
 - Fax: 02 6232 8785
 - Post: Office of Devices, Blood & Tissues,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의료기기 테스트 관련 연락처
 - Email: 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
 - Phone: 02 6232 8432
 - Fax: 02 6232 8555
 - Post: Office of Devices, Blood & Tissues, TGA, PO Box 100, Woden ACT 2606, Australia
- Device Electronic Application Lodgement(DEAL, 온라인 등록시스템) 제도 관련 연락처
 - Email: cab.medical.device.information@tga.gov.au
 - Phone: 1800 141 144
 - Fax: 02 6232 8785

□ 의료기기 규제 체계

- 규제 법령: The Therapeutic Goods Act 1989
 - 이 법령은 <http://www.comlaw.gov.au> 에서 전문 조회 가능함.
-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의 하위 조직인 The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가 상기 법령의 집행을 담당하며 The Office of Devices, Blood and Tissues (ODBT)가 의료기기 규제와 직접 연관된 부서이다.
- 규제 체계의 특징
 - 의료기기의 세부 분류는 각 기기가 가진 위험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 합법적 판매와 관련한 규제 제도의 핵심은 TGA 에 등록(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하는 것이다.

□ 의료기기 등록 기본 체계

- 모든 의료기기는 TGA에의 등록이 요구됨.
- 의료기기 등록과 관련한 표준 및 규제 등은 미국, 유럽 등의 체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CE Mark 등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테스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TGA에 대한 등록 자체는 필수적이다.
- 호주 내에서의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TGA 등록은 호주 측 파트너(법률에서는 Australian Sponsor라고 규정하고 있음.)만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 수출의 경우 바이어나 에이전트가 등록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 기존에 등록된 의료기기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ebs.tga.gov.au/ebs/ANZTPAR/PublicWeb.nsf/cuDevices?OpenView>

□ 등록 대상 의료기기

- TGA는 의료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래의 목적으로 인간에게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 기계, 기구, 물질, 물품(any instrument, apparatus, appliance, material or other article (whether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and including the software necessary for its proper application) intended by the person under whose name it is to be supplied, to be used for human beings for the purposes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diagnosis, prevention, monitoring, treatment or alleviation of disease
 - diagnosis, monitoring, treatment, alleviation of or compensation for an injury or handicap
 - investigation, replacement or modification of the anatomy or of a physiological process
 - control of conception
- 위 장치, 기구 등의 액세서리도 포함한다.
- 약리학, 면역학,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료 기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법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구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 요약하자면 제조자가 치료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판매를 하는 경우 예외 없이 TGA의 등록 대상인 ‘Medical Device’로 분류된다.

□ 의료기기 분류

- 의료기기 사용목적, 위험도, 인체에의 침습성(invasiveness)에 따라 크게 5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 상세한 분류 자료는 다음 문서 참조
 - <http://www.tga.gov.au/docs/pdf/devguid25.pdf>

10) 적합성 검사(conformity assessment)

위에서 언급한 분류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충족시켜야 할 적합성 조건이 도출된다. 해외 수출업자가 당해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 내 또는 해외에서 TGA 또는 TCA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테스트를 받는 방법과, CE Mark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호주의 적합성 검사 절차는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를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CE 마크가 있는 경우 등록에 문제가 없으나 해당 CE 인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TGA가 결정한다. CE 마크 인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http://www.tga.gov.au/devices/fs_eccert.htm#q4 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등록 관련 컨설턴트의 수배

기존에 TGA는 테스트를 포함한 등록 절차 수행을 의뢰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현재는 아래 관련 협회 리스트만을 등록하고, 해당 협회를 통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 Association of Therapeutic Goods Consultants Inc.
 - PO Box 273
 - ANNANDALE NSW 2038
 - Website: www.atgc.com.au
 - Email: info@atgc.com.au
 - Fax: 02 9660 8106
- The Australian Self-Medication Industry Association
 - PO Box 764
 - North Sydney NSW 2059
 - Website: www.asmi.com.au
 - Ph 02 9922 5111
 - Fax: 02 9959 3693
- Complementary Healthcare Council (CHC)
 - PO Box 104
 - DEAKIN WEST ACT 2600
 - Website: www.chc.org.au
 - Ph: 02 6260 4022
 - Fax: 02 6260 4122
- Association of Regulatory and Clinical Scientists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ARCS)
 - Suite 904
 - 28 Clarke St
 - CROWS NEST NSW 2065
 - Website: www.arcs.com.au
 - Ph: 02 8905 0829
 - Fax: 02 8905 0830

- Medical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MIAA)
 - PO Box 299
 - ST LEONARDS NSW 1590
 - Website: www.miaa.org.au
 - Ph: 02 9437 1151
 - Fax: 02 9437 3177

11) 식품 수입 관련 규제

□ 검역(위의 검역 관련 내용과 일부 중복)

식품 관련 호주 검역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나 가공(건조, 냉동 등)되어 진공 포장(비닐, 캔 등)된 식품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계속적인 수입에 지장이 없다.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은 냉동-진공 포장되지 않은 육류, 어류, 채소류 등이나 이러한 품목의 경우 우리의 수출 수요 자체도 크지 않은 편이다.

한편 검역소 등 수입 관련 당국은 어디까지나 수입업자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제반 절차는 바이어가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고수리 및 허가 발부기관은 호주 검역청 Australia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으로 상업 목적의 식품류 반입은 모두 AQIS에 사전 신고 및 허가 대상이 되나 세부 요건은 식품의 종류, 원산지, 최종 사용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참고: <http://www.daffa.gov.au/aqis>)

한편 품목별 기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AQIS는 통관 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직접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

신고 및 허가 절차는 대부분 통관대행사(관세사)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 품질 기준

FSANZ(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단, 약품 부문은 TGA에서 관할함) 식품류에 관한 표준과 그 이행을 담당한다. FSANZ는 식품 표준을 정하고 당해 표준들 중 상당수를 AQIS를 통하여 통관 단계에서 검사되도록 하고 있다. 동 기관 웹사이트의 "The Code" 카테고리는 실질적인 표준의 세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Food Matters" 카테고리는 보다 쉬운 관점에서 식품류의 다양한 표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Food Labeling" 카테고리는 구체적인 상품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라벨링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 ARTG(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시스템 등록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련 제품으로 분류,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호주 보건국 산하의 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로부터 품질 안전성 인증과 함께 ARTG시스템 상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야 상품 유통이 가능하다. ARTG 등록은 호주 측 파트너(법률에서는 Australian Sponsor라고 규정)의 소관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바이어나 에이전트가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동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 건강 제품 중 극히 일부만이 ARTG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0년 5월 기준 총 1개 한국산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입규제 유형은 모두 반덤핑이다.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백판지	4810.13.90/56 4810.19.90/57 4810.29.90/64 4810.99.00/80 4810.99.00/85	반덤핑	'04.12.15	'05.7.28	관세율: 31.7% '05.7.27가격인상약속 발효

기존에 규제를 받던 품목 이외에 신규로 조사 대상이 되거나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 품목은 없으며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 규제 품목 수 변화: 10 개('06.6) → 9 개('06.12) → 8 개('07.5) → 6 개('08.4) → 5 개('08.8) → 4 개('08.12.5) → 3 개('08.12.18) → 2 개('09.4.2)
 - '08.12 월 4 일 초저밀도폴리에틸렌(LDPE)에 대한 덤핑 규제가 종료
 - '08.12 월 18 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 대한 덤핑 규제가 종료
 - '09.4.2 철/합금강평판압연제품(Hot Rolled Plate Steel)에 대한 덤핑 규제 종료
 - '10.3.23 PVC(폴리염화비닐)에 대한 덤핑 규제 종료

신규조사 개시, 예비판정 등 한국제품에 대한 새로운 불리한 조치는 없으며 신규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관세제도

□ 각 품목의 관세율은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273>

2005년 발표된 호-미 FTA, 호-태 FTA 등의 체결로 미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품목은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0%이거나 유예품목이 있으므로 위 관세율표 상의 schedule 5 (미국)와 schedule 6(태국)을 참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관세율표 보는 법(예: 5402.33류 품목)

5402.33품목명..... 5%, DC 5%

Unless otherwise indicated NZ, PG, FI, DC, LDC and SG rates are Free

Unless indicated in Schedule 5, rates for US originating goods are Free

Unless indicated in Schedule 6, rates for TH originating goods are Free

기본 관세율은 5%이며 식품류에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석을 보면 싱가포르,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LDC(후진국) 국가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미국 및 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관세이나 schedule 5와 6을 참조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LDC 국가와 DC 국가(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customs.gov.au/webdata/resources/tariff/schedule1a.pdf>

□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HS CODE	5402.33.00
일반	5%
미국	2010년 전까지 3%, 이후 0%
태국	2007년 1%, 08년부터 0%
싱가포르,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 뉴기니, LDC 국가	0%
DC국가	5%

원산지 규정에 의해 한국 제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적용될 뿐이다. 한편 모든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General Sales Tax)가 부과되나 향 후 수입업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호주는 FOB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다시 관세가 부과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6. 주요인증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을 갖고 있어도 호주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 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가. 품질 인증 제도 개요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 과 수입 제품이 호주 내 관련 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 과정을 통하여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 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RCM 마크 제도(Regulatory Compliance Mark): QAS와 같은 취지이나, 특히 전기제품에 한정하여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형식적으로는 자율성을 띠고 있으나 전기제품 생산/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나. 적용 대상 품목

QAS 마크의 경우 품질 보증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은 정부 관련 기관이 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 규정이 있다.

RCM 제도는 모든 전기제품에 적용된다.

다. QAS 주요 내용

QAS(품질마크 제도):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이 호주의 기술 표준과 Standard Australia 가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 (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 안전 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 기준 등)

196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호주 QAS의 품질보증 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이다.

라. 공통 검사 항목

QAS 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제품을 검사한다. 1)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는지 여부, 2) 제조 공정상 품질 관리(Quality of Manufacturing):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제조 과정 확인, 3) 사후 관리(Ongoing Monitoring): 품질보증 마크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

마. 주관 기관: 호주표준협회(Standards Australia)

호주의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주관 기관은 Standards Australia(민간 기관)이며,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표준 규격 및 규율 등을 제정한다. (예, 통신기기 관련 제품 규정은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가 제정)

품질보증 마크의 등록/검사 및 승인 등 실무 업무는 Standards Australia의 계열사인 SAI-Global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동 사는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 Standards Australia 연락처

- 주소: Level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1
- 전화: (국내) 1800 623 503, (해외에서 걸 때) (61-2) 8206 6060
- 팩스: (61-2) 9237 6010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 E-메일: researchsydney@standards.org.au
- 설립연도: 1922 년
- SAI-Global 사의 연락처도 위와 동일 함.

바. 건강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인증

건강식품, 의료기기, 의약품이 의약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호주 식약청(TGA)의 인증이 필요하나 실제 한국 기업이 이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제품 심사 과정과 공정 심사로 이루어지는 동 인증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 한국 제품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과 관련한 표준 및 규제 등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체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CE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경우 테스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나 TGA(www.tga.gov.au)에 대한 등록은 필수적이다.

TGA 등록은 호주 측 파트너(호주 국내법에서는 Australian Sponsor로 규정되어 있음)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 현지 바이어나 에이전트가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 호주 내 인증 대행 기관(한국인 담당자 있음)

- Testing and Certification Australia
 - 웹사이트: <http://www.tcaust.com.au/>
 - 전화: 612 9410 5111
 - 주소: 14 Nelson St. Chastwood NSW2064

7. 지적재산권

호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너무 엄격히 보호하고 있어, 너무 지나친 규제는 현실에 맞추어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 기업이 호주 내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허권(Patent)

특허란 새롭게 개발/개선된 상품이나 특정 방법으로 창의력과 유용함이 내재되어 있는 제품에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 장기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신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허권의 신청자는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들과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예술 작품이나 수리학적 모델, 계획(Scheme)을 포함한 정신적 사고에 의한 것은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 호주의 특허 관련 업무는 IP Australia(www.ipaustralia.gov.au)에서 맡고 있다. 일반 특허의 보호 기간은 20년, 혁신 특허의 보호 기간은 8년인데, 일반 특허는 5년, 혁신 특허는 2년째 되는 해부터는 매년 유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나. 상표권(trade mark)

상표권은 단어나 기호, 그림, 음악, 향기, 로고 등을 포함하거나 이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집합체로서 다른 상품과 구분될 수 있는 그 상품만의 특성을 가진 제품에 주어지는 것이다.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며, 호주 내에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지역 이름이나 특정 성(Surname), 혹은 일반인들에게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상표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상표권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공정거래 위원회(Department of Fair

trading and Practice)에 의하여 등록이 권고된다. 최초 상표권 등록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 종료 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년씩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업무는 Trade Mark office of IP Australia 가 관할한다.

다. 디자인

디자인이란 완제품의 패턴이나 모양,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디자인의 등록은 제품의 패턴이나 모양이 상업적인 용도이며, 이에 따른 보호를 원할 때 등록이 가능하며 예술 작품의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 등록된 디자인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보호되며 총 16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 등록 및 관리 업무는 Design Office of IP Australia 가 관장한다.

라.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미술, 음악, 필름, 방송,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게 하는 법적 조치이다. 원본 자료는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Copyright Act 1968에 의하여 저작권의 라이선스와 권리를 인정 받게 되는데, 원본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Fair dealing Provision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저작권의 명확한 표기(copyright notice)가 의무는 아니나 필름이나 방송, 멀티미디어 관련 품목에는 저작권 표기가 권고되고 있다.

작품의 성격 및 출판 여부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 기간의 제한이 있다.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대개 작가의 사망 혹은 최초 출판된 해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영화 및 음향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 및 방송된 때로부터 50년간 지속된다.

2003년 초부터 음반 업체들이 대학생들의 CD 무단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들 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참고로 호주 관세청의 웹사이트에서도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문제가 수출입 상품의 통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http://www.customs.gov.au>를 방문하여, 좌측 메뉴 바에서 import/export를 선택하면 intellectual property 를 찾을 수 있다.)

마. IP Australia 연락처

- 주소: Ground Floor, Discovery House 47 Bowes Street Phillip ACT, 2606
- 전화: 61-2)6283 2999
- 홈페이지: www.ipaustralia.gov.au
- E-메일: assist@ipaustralia.gov.au

8. 통관/운송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 수입 통관 절차

수입된 물품들의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하며,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추후 세무 조사 등을 대비하여 수입 절차 이행 후에라도 수입된 날짜로부터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수입 신고는 전 과정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검역에 관련이 없는 물품들의 98%가 Green Line으로 분류되며, 그 밖의 검사 과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소재하고 있는 호주 관세청에서 폭넓게 연결된 최신 컴퓨터 데이터망(Compile-System)을 통하여 검사의 체계적인 아웃라인이 잡히게 되며, 이 컴퓨터 시스템은 수입된 품목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 서류 신고 시 Electronic Entry에 A\$30, Manual Entry에 A\$50가량이 소요된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A\$2,000(약 1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통관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제출 서류와 절차

- 제출 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본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ountry of Origin)
- 기본적인 절차
 - 선적 및 선적 서류 송부
 - 도착 통보(Arrival Notice)
 - Shipping Company: 선박 도착 일시
 - Bank: B/L 원본 및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도착 통보
 - 통관 서류 제출(Fax /Courier)-Customs Agency
 - 품목별 상품 분류(Hs Code)-Tariff Classification
 - 제세 산출
 - 관세(Duty): FOB x Duty Rate
 - Goods & Service Tax(GST, 일종의 부가가치세): 관세 부과후의 금액 x 10%
 - Customs Entry(세관 신고-Customs Computer Terminal Compile 시스템)
 - Nature 10: Wharf 에서 통관
 - Nature 20: Wharf->Bond
 - Nature 30: Bond->통관

Nature10,20,30는 세관 신고 서류의 양식으로서, 일반적으로 Nature10,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화물인도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Nature20, Nature30를 선택한다. 식품류의 경우 Nature 10에 의하여 부두에서 조건부 통관한 후 지정된 검역 장소로 이동하여 검역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나. 세관 검사(Computer Clearance)

Green-Line으로 분류된 품목들은(98%) 검사가 생략되며, Red-Line으로 분류된 품목 들은 세부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 세관 직원에 의한 검사(Custom-Inspection)시 착안사항
 - 수량(Quantity)
 - 가격(Value)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라벨(Label)
 - 상업용 마크(Commercial Mark)
 - 유사 상품(Trade Mark)
 - Community Protection

다. 검역(Quarantine Inspection)

컴퓨터에 의한 검사와 검역 직원에 의한 검사로 나뉜다. 제품 및 컨테이너와 팔레트에 대한 훈증 처리 여부가 주로 체크되며, Wooden 패키징 시는 반드시 방역 또는 열처리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패키징에 사용 되는 목재는 표피(Bark)가 제거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라. 제세 납부

- 통관 수속과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제세
 - Duty
 - Goods & Service Tax(GST)
 - Overseas/Air Freight
 - B.S.R.A. & D/O/ITF & IDF
 - Custom Computer Terminal 사용료
 - Owner Code Application Fee
 - Supplier Code Application Fee
-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Service Charge 는 1 주일 내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Customs Agent's Fee/Professional Attendance Fee
 - Cartage to Warehouse Fee(필요한 경우)
 - Unpacking Fee(필요한 경우)
 - Cartage

마. 그 밖의 사항

모든 서류들은 알아보기 쉽게 명시/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 친 이후 수입된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15시간(공휴일 제외)이 걸린다. 통관 문제를 위하여 세관의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일 처리가 보다 신속히 진행되는데, 세관 브로커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 카운슬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el) 61-2-9314-1711, Fax) 61-2-9314-2484

세관의 전산화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략98%의 통관 수속이 별다른 방해 없이 진행되나 수입업자나 업체에서 개별적인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최소24 시간 이상의 시간 소모가 예상된다.

바. 관련 기관

일반적인 자료는 세관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케이스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할 경우 세관 정보센터의 이메일로 연락하면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Australian Customs House
 - 5 Constitution Ave Canberra City ACT 2601
 - Tel) 02-6275-5041/1300-363-263 / Fax) 02-6275-6005
 - <http://www.customs.gov.au>
 - Information@customs.gov.au
- AQIS Policy and International Division
 - Tel) 02-6272-5584 / Fax) 02-6272-3307
- Import Risk Analysis Secretariat
 - Tel) 02-6272-6337 / Fax) 02-6272-3307

사. 호주의 한국인 관세사

- Rohde & Liesenfeld P/L(윤광홍 공동대표)
 - 4A Lord Street (PO Box 362) Botany NSW 2019 Australia
 - Tel: 61-2-9666-1322
 - Fax: 61-2-9666-9466
 - E-Mail: bobyoon@rlaus.com.au

아. 운송

호주전체 교역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74%(수입 38%, 수출 36%)이며 항공 운송의 비중은 26%이다.

호주에는 크고 작은 35개의 항구가 있으며, 이 중 멜버른 항이 호주 최대의 항만으로 호주 전체 물동량의 약 40%를 처리하고 있다.

수입 물동량 기준으로는 시드니가 최대이며 시드니와 멜버른으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2개 항구가 호주 시장 진출의 관문이다. 이들 외의 주요 수입 항구로는 브리즈번, 프리맨틀, 아델레이드 항 등이 있다.

주요 항구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전망

(단위: 천 TEU)

주요 항구	2000	2005	2010
브리즈번	449	639	797
시드니	1027	1606	2252
멜버른	1327	1580	2165
아델레이드	127	170	206
프리맨틀(퍼스)	342	345	427
합 계	3273	4340	5847

자료: Freight Logistics In Australia

한편, 멜버른 항구는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의 접안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최근 항만 준설 등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박 운임

(단위: US\$)

	20'(TEU)	40'(TEU)
시드니	1,200	2,400
멜버른	1,200	2,400
브리즈번	1,200	2,400

주: 2009.4월 기준, 부산항 출발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환경 일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조달은 호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노동당 정부와 기존의 보수 연정(1996~2007년 집권) 모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해 왔다. 여기에는 방송, 항공, 통신 등 전통적으로 민감한 분야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기조는 2007년 말 집권한 노동당 신정부에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외투 기업은 자본 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으며 외환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도 투자 유치에 유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전통적으로 2차 산업보다는 유통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FDI 수요를 주도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은 전세계적 자원 붐으로 인해 광업 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호주화의 강세도 투자 동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호주화가 최근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투자 유치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진출 기지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 유망 분야는 매우 좁은 편이다. 중국발 자원 붐으로 인해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해외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나 이는 대부분 대기업 또는 대규모 자본의 영역에 해당하며 금융업, 서비스 분야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호주의 대형 유통망 등을 공략 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은 현지 법인이 아닌 납품 업체와는 거의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호주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소를 떠나서 법인 설립이 필수적이다.

호주의 투자 유치 기관인 AUSTRADE(www.austrade.gov.au)는 대호 유망 투자 분야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있다.

- 농업(Agribusiness)
- 바이오 산업(Biotechnology)
- 에너지 산업(Energy Industries)
- 환경 산업(Environmental Industries)
- 금융 산업(Financial Services)

- 정보통신 산업(ICT)
-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 광업(Minerals)
- 나노기술 산업(Nanotechnology)
- 서비스 산업(Services)

현재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 여지가 가장 큰 분야는 자원 개발 산업이다. 이미 채굴이 시작되거나 사전 조사가 끝난 프로젝트의 경우 유력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지분을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호주 투자진출의 장단점을 다시 정리해 보면(업종 불문), 다음과 같다.

- 장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인프라와 인적 자본 수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치 경제 시스템, 뛰어난 자연 및 도시 환경 등
- 단점: 높은 원가 및 제비용, 이력, 경력 등의 중시, 정해진 규정과 절차의 준수, 노동자 관리의 어려움 등

나. 주별 투자 환경

1) 퀸즐랜드(Queensland, 이하 QLD) 주

퀸즐랜드 주는 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단위의 투자 유치 기구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브리즈번을 포함한 남동 지역이 투자 유치 활동에 가장 활발하며 브리즈번 시와 퀸즐랜드 주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Brisbane Marketing' 이 기업 유치 활동을 담당한다. 'Brisbane Marketing' 산하 'Invest Brisbane'은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 브리즈번 인근의 Australia Trade Coast 지구(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전국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Australia Trade Coast 지구는 주 GDP를 A\$ 41억 증가시켰으며 향후 20년 내에 이 규모는 A\$ 94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퀸즐랜드 남동 지역은 호주 여타 지역에 비해 철도, 도로, 공항 등 운송 인프라 면에서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vest Brisbane이 수행하는 투자 유치 활동의 40%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해외 자매 도시와의 결연을 통해 대규모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퀸즐랜드 주는 향후 30년 내에 빅토리아 주를 제치고 인구 면에서 두 번째 주(1위는 NSW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퀸즐랜드 주의 GDP 성장률은 약 3.8%로 호주 전체 성장률 및 빅토리아 주, NSW주의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연간 2만 5,000명이 퀸즐랜드 주로 이주해 오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한편 브리즈번은 호 주 각 주도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 빅토리아(Victoria, 이하 VIC) 주

빅토리아 주 내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인구 및 제품·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여전히 비즈니스 기회가 다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아 주 내 중 소기업은 482,000개로 전체 기업 수의 96%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비즈니스 서비스는 회계, 법률 서비스 등을 의미함), 건설, 소매업, 금융 기업 등이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핵심 타깃 지역이 되고 있다. 신규 영업을 개시한 기업 중 3년 이상 활동하는 기업은 65% 수준이다.

3) 서호주(Western Australia, 이하 WA) 주

자원 붐에 따라 서호주 주의 투자 기회 및 투자 대상 지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서호주 내 자원 관련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규모는 총 A\$ 1000억 수준이며 이를 통해 3만 8,000 명의 신규 건설 관련 고용과 9000명의 영구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 부문의 중요성 증가와 서호주 내 투자기회 증가로 다수의 국제기업이 진출하였다.

- 자원 부문: Japan's Kansai Electric Power Company, Tokyo Gas, Osaka Gas Hess Corp, Chinese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등
- 비자원 부문: Fenner Dunlop Australia(컨베이어 시스템), Interzone(게임 제작)

서호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 인력 부족으로, 호주는 물론 전세계로부터의 인력 조달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State Migration Centre가 2006년 설치되어 해외로부터의 기술 인력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4)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이하 NSW) 주

호주 내 9,000여 개 외투 기업 중 60%,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regional office) 848개 중 65%가 NSW주에 소재하고 있다. 주택 및 노동 비용 상승, 상대적으로 낙후 된 인프라가 신규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정부는 2007년부터 logistics/transac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entertainment, design/media, manufacturing/resources 의 5개 분야를 중점 타깃으로 한 Innovation Statement를 발표하고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NSW주는 NSW skills council을 설치, 기술 인력 조달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인프라 확대를 위 해 50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드니 시내 인근 Millers Point 지역에 금융 지구를 설치하는 Barangaroo Project가 진행 중이다.

5) 남호주(South Australia, 이하 SA) 주

KPMG가 10개국, 136개 도시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한 결과 호주는 4위를 차지했으며 남호주 주의 주도 아델레이드는 다른 3개 주도(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비가 타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남호주 주의 장점으로 최근 Allianz사의 전국 콜센터 등 서비스 기업의 이주도 확대되고 있다. 주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 분야는 방위산업, 광업, 서비스, IT/전자 등이다.

다. 자원 부문 투자 환경

자원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투자 분야인데 동 부문의 투자 안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소개한다.

□ BEHRE DOLBEAR & COMPANY, INC 발표 자료 요약

- 호주는 4 년 연속(2005~2008) 가장 안전한 광업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
 - 컨설팅 기업인 BEHRE DOLBEAR & COMPANY, INC.는 광업 부문 투자의 종합적 안전도를 조사, 매년 부적격 투자국("NOT TO INVEST" countries)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호주는 종합 점수 60 점으로 캐나다, 칠레를 제치고 4 년 연속 가장 안전한 투자국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전 항목에서 1 위를 차지하여 어느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투자지로서 적격임을 보여주었다.
- 조사 내용
 - 조사 대상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콩고, 가나,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몽고, 나미비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러시아, 남아공, 탄자니아, 미국,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등 29 개국
- 조사 항목(호주 점수)
 - ECONOMIC SYSTEM: 경제적 자유도(10)
 - POLITICAL SYSTEM: 정치적 안정성(9)
 - SOCIAL ISSUES: 사회적 이슈 및 안정성(8)
 - PERMITTING DELAYS: 허가 등과 관련된 지연(8)
 - CORRUPTION: 부패도(10)
 - CURRENCY STABILITY: 통화 안정성(8)
 - TAX REGIME: 조세체계의 투명성(7)

2. 외국기업 투자동향

호주는 외국인 투자 통계를 통계청에서 외환 포지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건별로 집계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2008년 투자 유치액(순투자 유치액)은 5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투자 유치액(연별)

(단위: AUD 백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6,058	31,296	12,292	50,748	- 43,596	35,955	40,880	59,785

주: 연별 투자액이 (-)인 것은 투자 유입액에 비해 투자 유출(배당금, 대본사 차입금 상환, 회사 정리 등)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호주는 투자 유치액을 순투자의 개념으로 집계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호주 통계청

호주의 2008년 말 기준 투자 유치액(순투자 유치액) 누계액은 4,3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하였다.

투자 유치액(누계)

(단위: AUD 백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18,839	249,269	265,787	338,113	289,348	327,405	376,955	436,740

자료: 호주 통계청

국가별 투자유치 누계액을 보면 미국이 954 억 호주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단, 호주 통계청은 국가별 투자 유치액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위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중국이나 한국 등의 투자 누계액은 n.p(공개하지 않음)로 표시하고 총계에만 합산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 유치액(누계)

(단위: AUD 백만)

	2005		2006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75,554	-48	78,033	3.3	92,830	19	95,417	2.8
영국	52,501	20.5	55,868	6.4	63,968	14.5	60,373	-5.6
일본	21,402	18.2	23,602	10.3	26,992	14.4	35,959	33.2
네덜란드	21,531	19.6	24,989	16.1	25,290	1.2	25,085	-0.8
독일	9,753	15.9	10,557	8.2	17,627	67	13,738	-22.1
스위스	11,821	18.9	16,646	40.8	16,358	-1.7	19,509	19.3
프랑스	9,468	NA	12,124	28.1	13,158	8.5	13,406	1.9
캐나다	6,070	-6.2	7,428	22.4	10,566	42.2	10,177	-3.7
뉴질랜드	6,981	10	9,458	35.5	9,006	-4.8	5,362	-40.5
싱가포르	4,201	-18.2	5,587	33	7,595	35.9	10,103	33.0
벨기에	NA	NA	2,286	NA	2,887	26.3	5,240	81.5
기타	70,066		80,827		90,678		98,493	
계	289,34	-14.4	327,40	13.2	376,95	15.1	392,86	4.2

자료: 호주통계청

2005년 말 순투자 누계 기준으로 2차 산업이 19.3%를 차지하고 있으나 통계 발표를 담당하는 통계청은 2차 산업의 경우 세부 업종별 실적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요 제조업 외투 기업 리스트는 자동차 및 식품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광업이 전체 누계액의 21.1%, 유통업이 17.2%, 보험·금융업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통계는 2005년 말 기준 통계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 통계이다.

업종별 투자 유치 동향

(단위: AUD 백만)

	2003	2004	2005
1차 산업	3,131	1,341	7,503
- 농림수산업	-12	211	-112
- 광업	3,143	1,130	7,615
2차 산업(제조업)	7,560	40,639	-62,780
3차 산업	4,543	6,969	10,960
- 전기·가스·수도	-1,349	-993	615
- 건설업	690	534	729
- 유통업	1,869	5,957	3,323
- 숙박·요식업	-318	-372	-1,026
- 운수·통신	1,497	-1,936	-82
- 보험·금융업	1,772	3,583	5,961
-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55	59	1,340
- 기타 서비스	437	137	100
기타	-2,933	-64	-337
전체	12,301	48,885	-44,654

자료: 호주통계청

업종별 투자 유치 동향(2005년 말 누계)

(단위: AUD 백만, %)

	금액	비중
1차 산업	60,177	21.4
- 농림수산업	977	0.3
- 광업	59,200	21.1
2차 산업(제조업)	54,202	19.3
3차 산업	153,578	54.6
- 전기.가스.수도	8,579	3.1
- 건설업	6,700	2.4
- 유통업	48,240	17.2
- 숙박.요식업	1,323	0.5
- 운수.통신	26,422	9.4
- 보험.금융업	40,573	14.4
-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19,405	6.9
- 기타 서비스	2,336	0.8
기타	13,165	4.7
전체	281,121	100.0

자료: 호주통계청

참고: 호주의 20대 외투 기업

순위	기업명	외국 지분율(%)	투자국
1	Shell Australia	100	네덜란드
2	ExxonMobil	100	미국
3	BP Regional Australasia Holdings	100	영국
4	Metcash	61	남아공
5	Toyota Motor Corporation	100	일본
6	Shell Energy Holdings	100	네덜란드
7	Singtel Optus	100	싱가포르
8	Holden	100	미국
9	Xstrata Queensland	100	영국
10	Axa Asia Pacific	46.7	프랑스
11	Leighton Holdings	53	독일
12	Ford Australia	100	미국
13	IBM	100	미국
14	Burns Philp	53.7	뉴질랜드
15	Alcoa World Alumina Australia	60	미국
16	Australia Meat Holdings	100	미국
17	Allianz Australia	100	독일
18	DaimlerChrysler	100	독일
19	Nestle	100	스위스
20	GE Financial Services	100	미국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자원 개발 분야에 투자 재 집중, 도·소매업 비중도 지속 증가

우리나라의 대 호주 투자는 광산 개발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 밖에 종합 상사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골프장 매입 등 레저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 이민자들의 투자는 소액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7년 대호 투자는 총 신고건 117건에 신규 법인 수 54개로 가장 활발하였으나 건당 투자 금액은 200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 투자가 초신고 및 투자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의미한다.

2008년 한국의 대호투자는 신고 136건, 650백만 달러로 단일 연도 신고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광업 부문 투자가 백만 달러로 전체 신고액의 87.5%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국제 자원 가격 하락 및 유동성 위기로 신규 투자는 주춤한 상태이다.

2009년 대호 투자는 신고 127건, 1,246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최고치를 두배 가까이 갱신하였다.

한국의 대 호주 투자 동향

(단위: US\$ 천, 건)

연도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총계	1,006	473	3,883,682	2,138	1,732,116
1980-1999	356	179	2,256,530	859	475,976
2000	41	26	123,078	78	58,056
2001	30	18	11,607	71	10,608
2002	29	17	54,910	59	62,656
2003	44	18	186,775	57	49,982
2004	41	23	79,738	83	54,021
2005	72	46	132,558	138	104,711
2006	78	49	187,897	151	142,781
2007	117	54	155,062	223	119,934
2008	136	56	650,711	287	579,235
2009	127	34	1,246,186		235,86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한국 기업의 호주 자원 부문 투자 동향 (참고)

한국의 호주 광물자원투자 현황

광종	프로젝트	소재지	개발업체	지분(%)	'09년 누적투자액(천불)	'09 생산규모(천톤)	비고
유연탄	글레니스크릭-II	NSW	포스코	3.6	8,417	3,000	생산
	드레이톤	NSW	대성	5	54,898	5,000	"
	마운트쏘리	NSW	포스코	20	62,633	3,000	"
	샤본	NSW	SK	5	8,507	1,000	"
	스프링베일	NSW	광물공 등	50	135,499	3,100	"
	엔삼	QLD	LG상사	5	19,426	7,400	"
	클라렌스	NSW	SK	15	36,711	2,000	"
	폭스리	QLD	포스코	20	38,250	2,200	"
	카보로우다운즈	QLD	포스코	5	12,913	750	"
	미네르바	QLD	광물공	4	7,595	2,500	"
	앙구스플레이스	NSW	광물공 등	50	53,514	3,600	"
	맥아서	QLD	포스코	10	414,258	4,600	"
	뉴팩	NSW	포스코	10	20,277	2,100	"
	코카투	QLD	광물공 등	14.84	90,007	-	"
	와이웅	NSW	광물공 등	95	38,954	-	개발
	토가라노스	QLD	광물공 등	33.3	6,565	-	"
	물라벤	NSW	광물공 등	9	107,583	-	"
	다트브룩	NSW	GS글로벌	7	80,922		
	나라브리	NSW	광물공 등	7.5	66,836	-	"
	아데나	QLD	광물공 등	15	1,590	-	탐사
	타로보라	QLD	광물공 등	100	361	-	"
	반다나	QLD	삼탄	10	19,378	-	"
연아연	마운트가넷	QLD	고려아연	4.4	38,207	76 (정광)	생산
	타운스빌	QLD	고려아연	100	511,056	220 (금속)	"
철	POSMAC	WA	포스코	20	9,848	22,000	생산
	잭힐	WA	포스코	12.3	16,906	1,600	"
우라늄	마리	SA	광물공 등	50	1,588	-	탐사
	칼라보나	NSW	SK에너지	15.6	1,934	-	탐사
니켈	화이트클리프	SA	광물공 등	50	1,647	-	탐사
동	볼리아	QLD	광물공 등	100	248	-	탐사
마그네사이트	록햄튼	QLD	원진	100	1,641	-	탐사
	말보로	QLD	원진	100	200	-	탐사
암염	레이크맥레오드	WA	한주	49	1,500	-	개발
계	33개				1,869,869		

※ '09년 12월기준 한국의 해외광물개발 총 누적 투자의 32%인 U\$ 19억불 투자

자료 : 한국 광물 자원 공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유치 정책 전반

호주정부는 경제활동 및 고용기회의 확대, 신기술, 경영기술 및 해외시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가 작은 제안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규모가 큰 제안도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승인된다. 외 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는 관련 당사자와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을 중 합해 규모가 크거나 혹은 좀 더 민감한 외국인투자 제안이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까지 건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외국인투자 제한은 부동산 구입이었다. 정부는 주거용 택지 또는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 이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도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주택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 이외에는 지역 총괄본부(RHQ)의 유치나 연구 개발(R&D)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나. 투자 규제 개황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라디오, TV방송, 일간 신문, 민간 항공 산업은 규제 업종이다. 기타 외자 가이드라인이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 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A\$ 5,000만 이상인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나 외국인 1인이 1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다수 외국인의 지분 합계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A\$ 1,000만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및 미디어에 5% 이상 투자하거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 포트폴리오 투자, A\$ 5,000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 기업의 인수 혹은 50% 이상의 주식 취득,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정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투자도 사전 승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호주로, 혹은 호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화 및 호주달러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호주 내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호주달러를 사고 팔 수 있다. 외화의 경우 RBA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A\$ 1만 이상의 거래 및 환전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에 보고해야 한다.

다.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한 법규는 아래의 법률과 규정이 총괄하고 있다.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oreign Takeovers (Notices) Regulations
- 상기법령 전문은 <http://www.comlaw.gov.au>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투자 관련 법규는 아니나 현지 상법 상 투자자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통상 유한회사(proprietary Company)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등록조건으로 최소 1인의 대표이사(director)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 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일 것이 요구된다. (Corporations Act 2001) Australian resident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초기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파트너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인력 채용, 급여 부담,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의 개설 요원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된다. (proprietary Company는 주주의 수가 50명 이하인 비 상장기업을 의미하며 통상 Pty. Ltd로 표시함. 상대되는 개념은 상장 기업(Public Company)로 통상 Ltd. 로 표시함)

라. 투자 인센티브

1) 연방정부 투자 인센티브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아닌 ‘기업 투자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의 예는 찾기 어렵다. 최근 노동당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산업·과학·연구부 산하 투자유치청인 Invest Australia가 혁신·산업·과학·연구부 내부로 흡수되었다. 현재 투자 유치 기능이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AUSTRADE에서 이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윤곽은 올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방 정부 주요 투자 인센티브(내외국 기업, 업종 구분 없음)

R&D Tax Concession scheme	○ R&D Tax Concession - A\$20,000 이상 R&D 비용에 대해 125%의 법인 소득 공제 허용 - 외부 R&D 기관 외주도 허용되며 등록된 기관에 외주를 줄 경우 A\$20,000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이 소득 공제 대상임 ○ Premium R&D Tax Concession - 매출 실적에 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 기업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175%로 상향 적용 ○ R&D Tax Offset - 연매출 A\$500 만 미만으로 R&D 에 A\$2 만~100 만 달러를 투자한 중소기업은 위 소득공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세 액 환급(rebate)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ESVCLP)	○ ESVCLP 프로그램에 등록된 투자 펀드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해 비과세 ○ 등록 펀드의 규모는 A\$1 억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기업에 대해 펀드 전체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지원할 수 없음 ○ 수혜 기업은 자산 규모가 A\$5 천만 미만이어야 하며 수혜 기업의 자산 규모가 A\$2 억 5,000 만을 초과하면 투자 펀드는 투자액을 회수해야 함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COMET)	○ 기술 상용화 지원 자금 - 혁신적 기술의 초기 상용화를 위해 지출된 지원 대상 비용에 대해 · 1 단계: 전체 비용의 80%(최대 A\$64,000) · 2 단계: 전체 비용의 50%(최대 A\$56,000) 지원

Innovation Investment Fund(IIF)	○ 복수의 정부-민간 공동 펀드를 조성, 민간이 펀드를 운영하여 투자 수익을 신규 중소 기술기업에 투자 예) Cleantech Australia Fund 는 수익을 재생 에너지 등 청정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함 ○ 각각의 펀드 규모는 A\$3,000 만~5,000 만으로 민간 출자는 정부 출자의 200% 한도여야 함
Pre-Seed Fund Programme(PSFP)	○ 대학 또는 정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대 A\$100 만까지 Fund 에서 투자
Enhanced Project Byelaws Scheme (EPBS)	○ 광업, 식품가공업, 식품포장업, 농업, 제조업, 가스·전기·상수 공급 관련 신규 프로젝트(A\$1,000 만 이상) 등을 위한 자본재 수입시 해당 수입 품목이 기술 면에서 호주산에 비해 우수할 경우 관세 환급 실시

□ 산업별 연방 정부 투자 인센티브(내외국 기업 구분 없음)

산업별 연방 정부 지원책은 호주의 지속적인 수입 관세 인하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Strategic Investment Programme(TCF SIP)	섬유, 의류, 신발 산업 분야의 신규 시설 및 설비 투자, R&D 및 품질 제고 활동에 2010년까지 총 A\$ 5억 7,500만 지원
Automotiv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scheme	승용차 제조업계에 대해 양도 가능한 수입 관세 환급권(CREDIT) 지원

2) 주정부 투자 인센티브

주정부 역시 외국 기업뿐 아니라 다른 주로부터의 투자(inter-state investment)까지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단, 조세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의 지원은 주정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초기 정착 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주 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의 상용화라던가 초기 창업 지원 등에 투자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조세 감면 제도

연방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제(예;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가 있으나 이는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투자 유치책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조세상의 인센티브는 위에서 언급한 R&D Tax Concession이 거의 유일한 제도이나 동 제도는 고도기술 투자 관련 혜택은 아니며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특정 지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도 운영되지 않는데 연방 국가인 호주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는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나 현 세제상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 관련 조세 인센티브가 운영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타 현금 지원 및 재정 지원도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 자원 부문 규제 현황

□ 법령 규제

1) 광산 채굴권 신청 절차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북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州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해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 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탁시켜야 한다. 또한 6개주와 NT 모두 탐사 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6개주 모두 광물 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해금 필요시 개발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 요건으로 공표의 의무가 있는 등 탐사 라이선스와 유사하다.

호주 전 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퀸즐랜드 주(QLD)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 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 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시 공표의무가 주어진다.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채광 작업이 인근 주거 지역의 100~200m(南호주의 경우 400m) 내에서 이뤄질 경우 채광 지역의 지주(地主)와 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 관할 총독(Governor-in-Council)이 임대 기간을 결정하는 퀸즐랜드 주 및 담당 에너지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태스 매니아주와 NT(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채광 임대는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건들이 있다. 채광 임대를 위한 첫 해 비용은 서호주(WA)의 A\$ 1,200(100헥타르 기준, 신청료 포함)에서부터 퀸즐랜드 주의 A\$ 4,340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2) 관련 정책 및 법규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 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西호주(WA: Western Australia) 州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 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하기의 4개 법이 적용되고 있다.

○ Mining Act 1978(採鑛法)

- 광물 탐사 단계부터 채굴에 이르기까지 라이선스 발급 등 WA 의 역내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할하고 감독하는 법임.
- 채광 업체가 본 법을 위반할 시, WA 의 주 정부는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
- 본 법과 관련해 주 정부와 채광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 시 주 총독 관할 법정(Warden's Court)에 분쟁 조정이 위탁됨.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환경보호법)
 - WA 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역내 채광 작업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될 시 채광 작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토지관리법)
 - Mining Act 1978 에 의하면 1899 년 이전 자유롭게 취득된 광물 자원을 제외하고 WA 역내 모든 광산 및 광물자원은 호주 연방정부(혹은 호주의 현 군주인 영국 여왕: the Crown)에 귀속돼 있는 바 채광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채광 지역에 대한 임대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함.
- Native Title Act (NTA) 1993 (원주민 토지 보호법)
 - 1992 년 호주 연방 최고법원인 HCA(Hight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 및 보호할 목적으로 원주민 소유의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채광 희망 지역이 원주민 소유의 토지일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이는 상거래 능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토지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호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법규임.
- 한편 호주의 역외(offshore) 자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 감독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하기 Offshore Minerals Act 1994 가 있음.
- Offshore Minerals Act 1994 (the OM Act, 域外 광물 자원 보호법)
 - 본 보호법은 1994 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호주의 연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 자원을 제외한 기선(baseline) 3 해리 이상의 영해(領海) 해저 수역에 매장된 모든 광물 자원과 관련해 탐사, 발굴,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를 제공하고 있음.

3) 환경 관련 규제

국가 경제의 약 70%(GDP 대비 산업별 비중)가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 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호주 정부의 환경 정책은 채광과 원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다. 각 주의 주정부들은 연방 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 (baseline)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있어 광물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하기 2개 법이 있다.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the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
-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4) 세제상 규제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각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합 운용해 광물 및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 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고용주에게는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 급여세(Payroll tax, 4.75~6.85%),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부세(Fringe Benefits Tax: FBT, 약 48.5%)가 부과된다.

아울러 호주 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GST)가 일괄적으로 징수된다. (참고: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채광 지역, 유전(油田), 그리고 광물 수송 장비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채광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활동(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EPA)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호주는 거주 국가와 수출 국가의 국제적인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과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다.

호주 정부는 또한 이중 과세방지협약을 바탕으로 해 타 국가 거주사업자들이 호주 내 취득한 배당 이익(약 15%의 상한선), 이자(약 10%의 상한선) 그리고 지불로열티 (약 10%)에 대해 과세 상한선을 규정해 지나친 과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는 광산업 및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연료 사용(Off-road component of energy grants)에 대한 세제혜택(Fuel Excise Credits)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2006년 7월 개시 예정). 이의 결과로 향후 동 산업 개발에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 일반 연료 소비세 기준 50%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물 자원 발굴 및 생산을 위한 로열티(royalty)는 주 정부에 의해 징수되고 있으며, 2000~2001년 기준 호주의 총 광산물 생산 이익금의 약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징수됐다. (호주 총 GDP의 5.3%)

호주의 각 주 정부 및 NT에 지불되고 있는 로열티의 과세 비율은 하기 표와 같다. (주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름) 판매 이익은 프로젝트 기반이며 운용 비용, 운용자산감가상각 비용, 재고 비용, 임대 이자, 탐사 비용 등의 프로젝트 비용을 공제한 후 산출된다.

해안 기선 3해리 이내 수역에 매장된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반면, 3해리 이상의 역외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 관련 로열티는 Offshore Minerals Act 1994(역외광물자원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통상 석유자원을 제외한 역외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60%, 그리고 연방 정부가 40%를 수취한다.

현재 역외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통일된 로열티 시스템이 없으며 단지 Offshore Minerals(Royalty) Act 1981(역외 광물자원 로열티 관련법)을 기초로 연방정부 담당 장관 및

주정부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Joint Authority)를 설치해 석유 자원을 제외한 모든 광물 자원들에 대한 로열티 유형과 과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3해리 이내 주 정부 단독 관할 수역의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입법이 될 때까지는 역내(Onshore) 광물 자원 로열티 시스템에 준해 로열티의 유형과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기업법(Corporation Act 2001) 상 구분

1) 비공개 회사(Proprietary Company, Pty Ltd)

- 우리나라 상법 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법인으로, 주식, 사채, 및 기타 증권의 공모가 금지
-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모 방식의 주식 발행 및 담보 부기채 가능, 재무제표는 세무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의 의무 없음

2) 공개 회사(Public Company, Limited 또는 Ltd)

- 우리나라 상법 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 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 원칙, 발행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등록
- 재무제표의 공개의무, 감사 등 비공개 회사보다 많은 통제를 받음

3) 무한책임회사(No Liability, NL)

- 광산(Mining) 및 석유 탐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정산의 경우 주주가 아직 납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더라도 납입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Pty Limited) : 현지법상 비공개 회사

- 현지 법인은 'Pty Limited' 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 등록 기관인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에 등록
- 등록완료 시 ACN (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 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해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 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 발생
-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 A\$218 납부 의무 발생
- 영업 이익 발생 시 법인 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

- 순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금 형식으로 보낼 경우에는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으나 세금 공제전 배당금 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 국세청에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로 납부
 -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보낼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음
- 2000년 7월 1일 GST가 도입됨에 따라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과 호주 내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10% GST가 부과
- GST는 고용주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며 회사에 따라 Monthly /Quarterly/Yearly Basis로 국세청에 신고

2) 대표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회사법상에는 명시된 개념은 아니나 호주 기업의 주요 사업체 운영 형태 중 하나
-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영업 활동을 지원하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

3) 외국법인 (Australian Registered Business Number)

- 외국 법인의 설립 역시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 내용 변경 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무 존재
- 실제 사업 형태는 실제 사업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법인)의 형태
-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호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현지 법인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
-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일
-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credit을 인정받기 때문에 전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 의무를 가짐

다.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 형태 및 장단점

-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세무상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초기 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세 (30%)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 없음
-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많은 외국기업이 호주 현지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실제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 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의 경우 보통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 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

1)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 장점
 - 사업관련 발생 비용을 모두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보고(annual return)비용이 외국 법인보다 저렴(매년 AUD\$218)
 - 생산 전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인정
 - 현지기업으로 분류되므로 현지법의 보호를 받음
 - 투자비가 많은 경우, 투자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회사가 이익이 나는 시점에서 손실금의 보전 효과
 - 이에 따른 회사 세금 납부 연장의 효과 존재
- 단점
 - 100% 주주가 외국 자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매년 감사의 의무
 - 그에 따른 감사 비용이 발생

2) 외국 지사인 경우,

- 장점
 - 감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 비용이 절감
- 단점
 - 기업법 상 현지 기업이 아니므로 현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특히, 자산보호의 측면에서 외국법인의 경우 현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초기 발생 비용을 세무 상 인정받을 수 없음
 - 회사 보고(Annual return) 비용이 현지법인보다 비쌈(매년 AUD\$1,029)

라.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현지 법인과 외국지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일)/비용
1	설립요건	최소 1명 이상필요	법인의 경우 Local Company 로 등록	ASIC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 Committee)	
		자본금 1불 이상	지사의 경우 Foreign Company 로 등록		
2	사전허가 승인 여부 판단	투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에 제출	특정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에 사전 투자 허가를 승인 받아야 함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N/A
3	구비서류	회사명칭	TRUSTEE 등 명칭에 삽입 불가 단어 존재	대행업체(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정관	비공개 법인은 정관이나 부정관에 주식 이전 권의 제한, 주주의 50인 이내 제한(고용인 주주 제외) 및 저당 설정 또는 주식공매 금지조항 등을 명시		
		부정관	외국지사의 경우 한국 본사 정관/부정관 및 이사진 보고		
		법인 중역진 명단	이사의 경우 최소 1명은 영주권자여야 함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소요기간(일)/비용
4	등록 신청	해당 구비서류 일체		ASIC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 Committee)	15 일
5	등록 완료				
6	구좌개설			은행	
7	TFN 발급 (Tax File Number)	법인 등록 완료 후 국세청에서 자동 발급	세금 납부 내역 관리용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8	ABN 등록 (Australian Business Number)	ATO 에서 발급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 기업 관리용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서류 검토의 시간이 더 소요					

마. 추천 법무법인/ 회계 법인

1) 회계 법인(각 3~4 개소 내외)

- 주소 : Level 10, 1 Margaret St. Sydney, NSW 200 Australia
- 전화 번호 : +61 2 9240 9797
- 홈페이지 : www.pkf.com.au
- 이메일 : Christine.park@pkf.com.au
- 규모 관련정보 : 110 개국 400 여개 사무실 규모 국제 법인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 유/ Christine Park (박희숙 공인회계사)

2) 법무 법인

- 주소 : Wentworth Lawyers & Partners
- 전화 번호 : 61 2 1300 577 502
- 홈페이지 : 없음
- 이메일 : johnpark@wwlp.com.au
- 규모 관련정보 : 현대중공업, 현대 상사, GS 글로벌, 영사관 문화원 법인 설립 지원 경력
- Boutique Firm 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특별한 전략으로 고객 지원
- 한인/교포 변호사 유무 : 유 / JOHN Park (박정호 변호사)

6. 투자입지여건

가. 개요

호주의 산업 공단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것이 없고, 주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되었으며 일부는 민간 개발 업체에 의하여 조성되어 있다. 각 주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지역 개발을 위하여 산업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나 국토에 비하여 인구 규모가 적고 분산되어 있는 호주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단들은 시드니 등 대도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에 19개의 산업 공단이 있으며 이중 테크놀로지 파크가 8개, 일반 단지가 11개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공단은 전문적인 제조업 위주의 산업 공단이라기 보다는 일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이 혼재해 있는 지역 개발 목적상의 산업 지구의 성격이 강하다.

호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 공단의 형태는 테크놀로지 파크로 일반적으로 산학 협동을 통한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구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세제 등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호주 내에는 우리나라나 일부 국가에서와 같은 전문화된 대규모 생산 단지와 같은 개념의 산업 공단은 없는데 이는 호주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호주의 산업 공단은 비즈니스 지역 또는 연구 단지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산업 공단에 진출할 경우 정보통신, 생명 공학 등 호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소 등의 형태로 테크놀로지 파크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IT 산업 단지

호주에는 특정 산업의 집중 유치를 공단을 조성하거나, 입주 내외국인 기업들에게 세제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을 포함한 중소 벤처 기업의 창업 등 초기 활동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큐베이터 시설은 크게 두 개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는 4개 주요 대학(NSW대학, Sydney대학, UTS대학, ANU대학)의 공동 스폰서 체제로 운영하는 ATP(Australian Technology Park)이며, 다른 하나는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CITA) 산하에서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10여 개의 인큐베이터 시설을 들 수 있다.

ATP의 경우, 현재 40여 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외국 업체 입주자는 없으나 외국 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은 없다. 그러나, CITA산하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5개 주 10여 군데에 분포되어 있는 BI의 경우 호주 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호주 내 사업자 등록은 비교적 소액의 경비로 쉽게 등록이 가능함)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주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호주 내 비즈니스 관련 조언 제공 및 비서/리셉션 서비스, 사무용 필수품(팩스/인터넷/복사기 등)의 공동 사용 등이 있다.

다. 주요 인큐베이터 현황

- Australian Technology Park
 - <http://www.atp.com.au>
- Australian Distributed Incubator Pty Ltd
 - <http://www.adinc.com.au>
- Blue Fire Group
 - <http://www.bluefire.com>

- EiR Pty Ltd
 - <http://www.entres.com.au>
- ePARK
 - <http://www.epark.com.au>
- Information City Victoria
 - <http://www.informationcity.com.au>
- ITem3 Pty Ltd
 - <http://www.item3.com.au>
- IT & C Incubator of the Northern Territory
 - <http://www.itcint.com.au>
- SA BITs (Playford Centre)
 - <http://www.palyford.com.au>

라. 자유무역지대

1) 호주의 자유무역지대 개황

호주는 아래의 다원 자유무역지대 외의 어떠한 자유무역지대도 조성하지 않고 있다.

2) 다원 자유무역지대

- 설치 목적
 - 저개발 지역인 Northern Territory 주의 개발 촉진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수출주도 산업 육성
- 설립 시기 및 규모
 - 설립 시기: 1986년 12월
 - 규모: 약 200ha(60만 평)
 - 소재지: Northern Territory 주의 Darwin
- 수출 지원 제도
 - 관세 면제: 가공 및 변형 후 재수출할 경우, 수입 후 12개월 이내에 재수출 할 경우
 - 관세 및 GST(부가세) 환급 (Single Export Shipment Claims): 수입 물품 전량이 가공 및 재수출될 경우 환급
 - 신용 환급(Approved Exporter Claims): 기존의 성실한 수출 이행 실적으로 세관이 신용을 부여한 경우, 수출 이행 검사가 면제되어 월별 수출 이행 보고 및 환급 요청 만으로도 관세 및 GST(부가세) 환급
- 인센티브 제도
 - 주정부 인센티브: 공장 부지 특별 분양, 편의 시설 활용 혜택 부여, Payroll tax 및 인 지세 면제

- 금융 지원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공장 설립 및 확장 자금, 철거 및 이전 경비, 운송 경비 등 지원, 산업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주택 지원, 종업원 채용 및 훈련 지원
- 선납 관세의 단기 무이자 지원
- 연방정부 인센티브: 수출 시장 개척 자금 지원 대상 자격 부여,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 대상 자격 부여,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최고 50년까지 공업용 부지 장기 임대 및 자기 소유 건물 신축 허용

마. NSW주의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

New South Wales 주(주도: 시드니)는 시드니 서쪽 약 50km 지점에 호주판 실리콘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NSW주는 그간 타 주에 비해서 인프라 부족, 복잡한 세제, 비기업 친화적인 행정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였다. 2004년 호주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Capral Aluminium이 시드니 인근 지역에 생산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엄격한 환경 규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결국 퀸스랜드 주 임스워치로 투자 지역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산 시설은 퀸즈랜드(주도: 브리스번) 주와 빅토리아주(주도: 멜버른)으로, 서비스 시설은 운영비가 저렴한 남호주주(주도: 아델레이드) 등으로 이동하면서 NSW주의 경제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실리콘 밸리 청사진

- 위치: 시드니 서부 근교 Badgery's Creek 지역
 - 주요 도로(M4, M7)가 교차
 - M4 도로 주변 지역에는 산업 단지가 다수 조성되어 있음.
- 면적: 약 1만 헥타르(3,000만 평)
- 투입예산: 5억 6,000만 호주달러(연계 인프라 포함)
- 주요 유치 대상 업종: New hi-tech, IT, bio-medical, 기타 제조업
- 운영 방식: 일종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운영되며 입주 기업은 토지세 및 급여세(총 급여 규모가 연 6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부담) 인하 혜택을 받게됨.

2) 연계 인프라 투자 및 전망

조성 예정 지역과 연계되는 공공교통망 구축 및 도로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호주 최대의 상업항인 보태니 항과 직접 연결되는 화물 교통망(도로 및 철도)도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주정부는 5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60억 호주달러의 GDP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바. 주요 지역별 사무실 임대료

최근 임대료 동향 및 전망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의 보고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사무실, 산업 시설, 주택 등의 동향이 수록되어 있으며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 <http://www.landmarkwhite.com.au/Research/Research.html>

사. 호주 투자 시 입지 선정 시 관련 참고 사항

- 호주 투자 진출 시 입지 선정의 우선 고려 사항은 사업 유형과 그에 따른 입지 형태의 선택이다.
 - 신규 공장 건설: 나대지를 구입 또는 임차 하고 별도의 공장 시설을 건설
 - 기존 공장 인수: 기존 공장 시설을 구입 또는 임차
 - 창고의 구입 또는 임차: 특별한 제조 시설 등이 없이 단순히 스토커용으로만 쓰는 경우를 의미함. 사무실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와 사무실은 별도 위치에 마련하는 경우로 나뉨.
 - 사무실의 구입 또는 임차: 창고와는 별도로, 또는 창고는 없이 사무실만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임.
- 사무실만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구입보다는 영업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 적정 가격대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시에는 반드시 변호사(solicitor)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등 행정 비용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호주 현지 부동산 기업 또는 한인 부동산 업체를 통해 적절한 곳을 물색할 수 있다.
- 창고의 구입 또는 임차
 - 공업 단지(Industrial Area) 내에 설치된 대형 창고를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스토커 양이 많지 않은 경우 이른바 ‘셀프 창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셀프 창고의 경우 소수의 관리인이 있어 그들을 통해 상품의 반입 및 출하를 할 수도 있고 설비를 이용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들 셀프 창고는 대형 창고에 비해 시내 인근에 인접해 위치한 경우도 적지 않다.
- 신규 공장 건설 또는 기존 공장 건물 인수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Landlord)와 지방 정부(Council)이다. Council 은 한국의 개념으로는 대도시의 경우 구, 지방의 경우 군 정도에 해당하며 이들 council 은 공장지로 활용할 수 있는 ‘Industrial Area’를 설정해 두고 있다. 단, Industrial Area 에 대해 지방 정부가 소유권 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은 통상 수 개의 부동산 기업, 금융 기업, 개인 기업에 나뉘져 있다.
- 공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뉘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4A, 4B 의 구분이다. 후자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 4A 지역은 주 중에도 정해진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작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해당 공업 용지상에서 원하는 공장 운영이 가능한지의 검토와 최종 승인은 Council 의 Planning Division 을 통해 진행하며 이때 유능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특히 Council 에 따라 산업 시설 유치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른데, 불과 30Km 떨어진 council 에 동일한 내용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한 곳은 5 주가 소요된 반면 다른 곳은 5 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일부 산업 시설 유치에 호의적인 지방 정부의 경우 특히 고용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상 부동산 에이전트는 의뢰인으로부터 적정 토지의 물색에서 시작해 소유주와의 가격 협상, 지방 정부와의 절차 진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A\$50~300 까지 다양하다.
- 호주에서는 일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약 한 달간 공시하고 이의를 접수,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따라서 공장 건설 시에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드니가 소재한 NSW 지역에서 입지 선정 시 호주 최대의 상업항인 보타니 항, 시드니 공항과의 연계, 시드니, 울릉공, 뉴캐슬 등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NSW 지역의 도로망은 퀸즐랜드 주나 빅토리아 주에 비해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www.yahoo.com.au 에서 "industrial property + 해당 지역(예: 시드니, NSW)" 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하면 많은 상공업 관련 부동산 사이트들이 검색되므로 이들 사이트들을 통해 대략적인 임차 및 구입 비용을 참고할 수 있다.

아. 영업장 임차 시 주의 사항

무역업 등 주로 사무실에서 영업하는 개인 기업이나 회사는 사무소를 필요로 하고 식당이나 카페, 기타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길가 또는 건물 안의 점포가 적당하다. 이러한 사무소나 점포는 임차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해당 카운슬(council)에 가서 그 사무소나 점포에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여도 좋은지, 아니면 허가를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지정 용도에 비추어 그러한 사업장을 운영해도 좋은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가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요구 조건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그 동의나 허가를 위한 비용이 많다면 매입 가격을 조정해서 그 비용을 상쇄시키거나 매입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상당 기간 운영되어 오던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확인은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주가 카운슬의 허가 없이 사업을 해왔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에 관 하여 카운슬에서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의 대상에는 영업 시간, 고용할 직원의 수, 소음, 주차 대수, 방화 시설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7. 노무관리

가. 일반 고용 환경

4.3% 대의 사상 유래 없이 낮은 실업률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계가 기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건설 경기 부진이 예고되면서 그간 건설 부문으로 집중되었던 인력 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채용난과 고임금,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업무 효율 저하가 가장 심각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나. 채용

가장 일반적인 인력 채용 방법은 Sydney Morning Herald 와 같은 일간 신문의 구인란에 광고를 통하는 방법이다. 간부직 혹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옐로 페이지에서 헤드헌팅(채용) 전문 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채용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야에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구인 광고의 활용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사이트는 www.seek.com.au와 www.mycareer.com.au로 광고 비용은 신문 등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A\$160선이다. (추가 옵션 없는 일반 광고 기준, 한 달간 게재)

다. 임금

산업별 단체 협약(호주에서는 Award로 표현함)에 의거,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 용자의 급여가 동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급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급여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 된다.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주당 38시간이다.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Award가 정하는 지급 체계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초과 근무 3시간 까지 및 토요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 초과 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2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2005년 이후 광업계에서 시작된 고급 기능 인력 부족 사태가 여타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유경력 용접공의 연봉이 의사의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임금 수준 동향은 <http://www.rba.gov.au/Statistics/Bulletin/G06hist.xls>의 통계를 참고할 수 있으며 5대도시의 직종별 평균 임금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임금 수준 동향

(단위: A\$천/연간)

직종	아델레이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regionall/district manager	95	120	120	115	119
personal assistant	50	55	51	50	50
financial analyst	82	105	100	90	95
graduate assistant accounts	40	40	40	41	41
IT manager	95	115	110	120	110
Helpdesk support/service desk	35	40	40	40	40
account clerk	45	47	49	43	46
back-office processing	36	36	35	36	36
HR consultant/adviser	72	80	75	74	75
marketing graduate	35	45	40	38	35
learning and development consultant	65	80	75	66	70
평 균	59	69	67	65	65

주: 임금 외 연금 등은 제외

자료: 호주중앙은행, 2008년 기준

라. 휴가 제도

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례 휴가, 병가(Sick leave, 근무 1차 년도에는 연 5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의 장기 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주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등을 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도 하다. 연례 휴가비(Annual leave loading)는 통상 임금의 17.5%를 휴가 전에 지급 해야 한다. 1994.3.31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 휴가를 (원할 경우)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마. 사회보장 제도

퇴직 연금(Superannuation)이 있으며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해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된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 이상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바. 노동조합 활동

영국식의 강력한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노사 분류가 맞고 규모가 큰 것이 특징으로, 호주의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은 물론 중, 고교 등 교육자들의 파업도 빈번한 실정이다.

호주의 노동조합은 강력 한 이익 집단으로 정권의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노조 활동이 최대한 보장 되어 있다. 직장 단위 노조는 거의 결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산업별 노조의 협상력이 막 강하기 때 문이며, 동일 직장 내의 산업별 노조 복수 가입도 인정 되고 있다.

노조는 대표 기 구인 호 주 노동조합 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를 정점으로 45개의 산업별 노조가 있으며, 직장별 노조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당이 정권을 새로이 잡으면서 2006년3월 자유당 정부가 실시한 개별 근로 계약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관계법(Work Choice)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1) 호주의 노동법 개정 개요

호주 정부는 2008 년 3 월 27 일 신 노동법을 공표함으로써 호주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근로 조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2006 년 하워드 정부가 기업가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노동 선택법은 도입된 지 2 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 되고, 2010 년부터는 신 노동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2008 년 말 총선 승리로 노조 세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 었으나, 실제 개정이 이뤄지자 노동계와 기업가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 호주의 노동법 개정 내용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 계약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향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 체결 시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나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개별 근로 계약은 2012 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과도기 개별 근로 계약은 2009 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신 노동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0 년 이전까지는 신규 계약 시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지만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근로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체결한 개별 근로 계약을 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개별 근로 계약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근로 계약서 사전 승인제가 도입된다. 향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개별 근로 계약 및 단체 계약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노동청은 계약서의 근로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임금 체계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10 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 예정에 있다. 10 대 개선 과제는 최저 근로 시간 명문화, 학부모에 대한 변동 출퇴근 시간제 도입, 유급 출산 휴가제 도입, 연차 휴가 정비, 병간호 휴가제 도입, 지역 봉사 휴가제 도입, 장기 근무 휴가제 도입, 공휴일 제도 정비,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한 명문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폐지로 구성되어 있다.

3) 시사점

현지 노조 단체는 이번 노동법 개정은 이전 정부의 근로 개악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현지 기업가 단체는 노조의 단체 협상권 부활과 근로 조건 개선은 곧 노무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 노동법 공표 이후 노동부가 노조 단체와 기업가 단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임금 체계 및 근로 조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호주 노동위원회에 위임하고 향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호주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향후 부당해고 금지법 개정도 피력하고 있는데, 100 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까지 부당해고 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노조의 영향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지가 강한데,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노무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 진출을 고려하거나 기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번 노동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전개될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 세부 사항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법과 노무 관리 분야는 현지법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현지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호주 노동법 관련 세부 정보는 호주 노동청 홈페이지(www.workplaceauthority.gov.au)를 참조하기 바란다.

노사 분류 건수의 변화 추이

기간	노사 분류 건수(분기별)
Mar-2003	162
Jun-2003	141
Sep-2003	193
Dec-2003	187
Mar-2004	187
Jun-2004	190
Sep-2004	194
Dec-2004	149
Mar-2005	119
Jun-2005	138
Sep-2005	150
Dec-2005	96
Mar-2006	101
Jun-2006	24
Sep-2006	44
Dec-2006	50
Mar-2007	33
Jun-2007	32
Sep-2007	45
Dec-2007	36
Mar-2008	36
Jun-2008	52
Sep-2008	48
Dec-2008	38
Mar-2009	45
Jun-2009	53
Sep-2009	66
Dec-2009	69
Mar-2010	42
Jun-2010	48
Sep-2010	62
Dec-2010	63

자료: 호주 통계청 Industrial Disputes 6321055001(table1.)

8. 조세제도

가. 호주의 조세제도

2000년 7월 1일부로 종전 판매세(Sales Tax)가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일종인 상품 및 서비스세(GST: Goods & Services Tax)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2009년 9월 기준 호주의 법인 소득세는 30%이며, 개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된다.

개인 소득세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2009.7월부터 새로운 개인 소득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래 '라'항 참조) 경기위축과 관련한 호주의 재정정책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축에 소요되는 바 저소득층 적용 세율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의 세제 중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부동산 양도 소득세인데, 호주에는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 차익)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 소득세 부과 시 합산 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부가가치세(GST) 세제 개황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 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이며, GST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등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GST는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 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 행위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Enterprise)는 GST를 환급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다.

GST는 모든 수입활동에도 적용이 되나,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 되어 수출업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1) 세율

10% 단일 세율

2) 부과 대상

일부의 면세나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과 용역의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과된다.

3) 적용 단계

모든 거래의 단계에서 적용된다. 생산자는 거래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GST(Input GST)를 판매 시에 징수하는 GST(Output GST) 금액에서 차감하며 동 차액만큼만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납부하면 된다.

4) GST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영세율 대상(GST Free Supply)

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판매에 대하여 GST를 징수할 필요가 없고 매입 시에 부담한 GST는 환급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GST가 없게 된다.

-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 수출품, 진료, 의약품, 개인 의료보험 등 건강 관련 품목, 교육, 종교, 자선 사업, 물, 어린이 보호용품 등

□ 면세 대상 (Input Taxed Supply)

면세 대상 사업자는 판매에 대하여는 GST를 부과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 사업자와 달리 매입 시에 부담한 GST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

- 면세 대상 품목: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이 금융 서비스 활동, 주거용 집세

5) GST 사업자 등록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단체로 GST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GST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일 년간 매출액이 일정 한도(A\$ 50,000, 비영리 단체의 경우 A\$ 10,000)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같이 매입에 관련된 GST를 부담하여야 하나 판매에 대하여는 GST를 징수할 수는 없다.

6) 신고서 작성

연간 매출이 A\$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자는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간 매출이 A\$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자는 신고서와 세액을 컴퓨터를 통하여 제출 해야 하며, 신고서와 납부는 매월 말 또는 분기 말 다음달 21일 까지 제출/납부해야 한다.

기타의 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매월 별로 신고할 수 있다.

환급의 경우 호주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환급을 해주어야 하고, 이를 지 키지 못할 경우 환급 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환급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호주 국세청에 납부할 다른 종류의 세금(법인세, FBT 등)과 상쇄할 수 있다.

7) 세금 계산서

공급 가격이 A\$50 이하인 경우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 계산서에는 호주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급 가격 등의 사항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다. 법인세율

호주의 법인세율은 30%로 이는 이익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에서 호주는 높은 편으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 아래 자료는 지방 정부 등에서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인세 형태의 지방(주)소득세는 존재하지 않으나 NSW주의 임금 총액세(전체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에 따른 과세) 등 명시적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조세들이 존재하므로 경험 많은 회계사 및 세무사 등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OECD국가 법인세율 비교

UnitedStates	35.0
France	34.4
Belgium	34.0
Italy	33.0
NewZealand	33.0
Spain	32.5
Japan	30.0
Australia	30.0
UnitedKingdom	30.0
Mexico	28.0
Norway	28.0
Sweden	28.0
Germany	26.4
Finland	26.0
Netherlands	25.5
Korea	25.0
Portugal	25.0
Austria	25.0
Denmark	25.0
Greece	25.0
CzechRepublic	24.0
Luxembourg	22.9
Canada	22.1
Hungary	20.0
Turkey	20.0
Poland	19.0
SlovakRepublic	19.0
Iceland	18.0
Ireland	12.5
Switzerland	8.5

주: 2006년 기준 작성자료로 '09년 9월 기준 변경사항 없음

라. 개인 소득세율(2010. 7월부터 적용)

Tax rates 2010~2011(연간 소득 기준)

Taxable income(AU\$)	Tax Rate(%)
\$0~6,000	0
\$6,001~\$37,000	15
\$37,001~80,000	30
\$80,001~180,000	37
\$180,001 and over	45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호주의 외환 관리 기구는 중앙은행인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 은행이 통화 발행 및 금융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1959년 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 관리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 준비 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 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되었다.

호주는 1983년 12월부터 외환 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외환 관리를 대폭 자유화 했으며, 현재는 외국정부 및 외국 기관과 외국 은행의 대호 투자와 호주 통화의 해외 반출 및 세무 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 거래 대상
 - 관련 법규: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 거래 업체 및 귀금속 취급 업체가 A\$1 만 이상의 현금 거래 및 A\$5,000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 환율 제도
 -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나, 1983년 12월 변동 환율 제 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 은행이 지난 20년 간 환율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6회에 그치고 있다. 당일 기준 환 율 및 이전 시점의 환율 통계는 호주 중앙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www.rba.gov.au)
- 무역 대금 결제
 - L/C 방식의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 수입상은 T/T 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호주 은행이 L/C 발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담보액이 크고, 절차 지연 등으로 불측의 지급 지연상태가 있는 경우 등도 있어 L/C 개설을 꺼리는 바이어가 많다.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A\$ 5,000 미만인 경우는 A\$ 30, A\$ 5,000~50,000의 경우는 A\$ 5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으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은행에서도 가급적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자금 조달

호주는 금융 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은행 등 자금 조달원이 매우 다양하며 대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율 또한 높아졌으나 경기 침체를 우려, 중앙은행은 2008.9.2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연이어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며 2009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추후 5%까지 지속 인상 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준 금리 동향

(단위: %)

변경 시점	금리
2010/11	4.75
2010/5	4.50
2010/4	4.25
2010/3	4.00
2009/12	3.75
2009/11	3.50
2009/10	3.25
2009/4	3.00
2009/2	3.25
2008/12	4.25
2008/11	5.25
2008/10	6.00
2008/09	7.00
2008/03	7.25
2008/02	7.00
2007/11	6.75
2007/08	6.50
2006/11	6.25
2006/08	6.00
2006/05	5.75

다. 현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세후 소득이다. 이는 외국 피투자회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기업입장에서는 간접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100% 공제가 가능하고, 조세조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0% 공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조세 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특법에 따라 50%만 공제가 된다.

- 예: 한국계 호주회사가 100원을 벌어서 30원을 호주 국세청에 납부하면 70원의 소득이 생겨서 이를 전부 한국본사로 송금하였을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
 -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납부한 30원 중 15원(50%)만 공제됨.
 - 한국의 과세소득: 70(배당소득) + 15원(납부세액의50%)= 85원
 - 세율: 호주와 동일30%
 - 산출세액: 22.5
 - 간접외국납부세액: 15
 - 추가납부세액: 7.5

현지 진출 법인들은 이 같은 문제로 본사 송금보다 현지 재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외에, 정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즉 정부지원책중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 중인 주요 정부 지원책('09.9월 시점)

R&D Tax Concession scheme	○ R&D Tax Concession - A\$ 20,000 이상 R&D 비용에 대해 125%의 법인 소득 공제 허용 - 외부 R&D 기관 외주도 허용되며 등록된 기관에 외주를 줄 경우 A\$20,000 한도 제한없이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임. ○ Premium R&D Tax Concession - 매출 실적에 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 기업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175%로 상향 적용 ○ R&D Tax Offset - 연 매출 A\$ 500만 미만으로 R&D 에 A\$2만~100만 달러를 투자한 중소기업은 위 소득 공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rebate)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ESVCLP)	○ ESVCLP 프로그램에 등록된 투자 펀드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해 비과세 ○ 등록 펀드의 규모는 A\$ 1억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기업에 대해 펀드 전체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지원할 수 없음. ○ 수혜 기업은 자산 규모가 A\$ 5,000만 미만이어야 하며 수혜 기업의 자산규모가 A\$ 2억 5,000만을 초과하면 투자펀드는 투자액을 회수하여야 함.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COMET)	○ 기술 상용화 지원 자금 ○ 혁신적 기술의 초기 상용화를 위해 지출된 지원 대상 비용에 대해 - 1단계: 전체 비용의 80%(최대 A\$ 64,000) - 2단계: 전체 비용의 50%(최대 A\$ 56,000) 지원
Innovation Investment Fund(IIF)	○ 복수의 정부-민간 공동 펀드를 조성, 민간이 펀드를 운영, 투자 수익을 신규 중소 기술기업에 투자 - 예) Cleantech Australia Fund 는 수익을 재생 에너지 등 청정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함. ○ 각각의 펀드 규모는 A\$ 3,000만~5,000만으로 민간 출자는 정부 출자의 200% 한도여야 함.
Pre-Seed Fund Programme(PSFP)	○ 대학 또는 정부 연구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대 A\$ 100만까지 Fund에서 투자
Enhanced Project Byelaws Scheme(EPBS)	○ 광업, 식품 가공업, 식품 포장업, 농업, 제조업, 가스·전기·상수 공급 관련 신규 프로젝트(A\$ 1,000만 이상) 등을 위한 자본재 수입 시 해당 수입품목이 기술면에서 호주산에 비해 우수할 경우 관세 환급 실시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Strategic Investment Programme (TCF SIP)	○ 섬유, 의류, 신발 산업 분야의 신규 시설 및 설비 투자, R&D 및 품질 제고 활동에 2010년까지 총 A\$ 5억 7,500만 지원
Automotiv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scheme	○ 승용차 제조업계에 대해 양도 가능한 수입 관세 환급권(CREDIT) 지원

자료: AUSINDUSTRY, www.ausindustry.gov.au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호주는 768만KM2의 광대한 국토에 인구는 2,100만 명에 불과한 적은 규모의 시장이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 소액 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민 증가율(0.3%)을 포함해도 연간 인구 증가율이 1.2%에 불과하다. 호주의 총 인구 중 약 60%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아델라이드, 퍼스 등 거점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상권도 이들 5개 도시에 분산, 광역화되어 있다.

주별 인구 분포와 GDP 현황을 볼 때, 시드니와 멜버른이 소재하고 있는 남부의 New South Wales 와 Victoria주가 호주 전체 인구의 60%, GDP 6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의 Queensland주와 South Australia주를 합치면 인구와 GDP에 있어서 각각 85%에 육박할 정도로 동남부 해안가에 인구와 경제력이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더욱이 수입 물품의 75%가 시드니와 멜버른을 통과함에 따라 호주 동남부 지역은 호주 시장 진출의 관문이다.

나. 시장 특성

호주는 지리적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주요 수출 품목은 농수산물, 광산물로 이들 1차 산업 제품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제품, 생활용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호주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공급자의 시장 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호주의 주요 도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통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주 동부의 시드니에서 서부의 퍼스까지의 거리는 3,400Km로, 이는 서울에서 홍콩까지의 거리보다 먼 거리이다.

시드니에서 퀸즐랜드주 북부에 있는 슈퍼 체인점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2,000Km 이상을 운송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견고한 외 포장과 적절한 내 포장 등 이중 포장 장치가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되며 호주에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해외 공급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유통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대 소비량이 적음으로 인해 수입품의 소매 가격은 턱없이 높게 형성되는데, 일반적인 제품은 수입 원가의 400% 선에서 소매 가격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다. 유통 채널

호주의 유통 채널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특히 최종 소매업체들도 직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량 주문이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 유통 채널은 수입→Wholesaler / Distributor→소매상의 단순한 경로를 가지고 있으나, 대형 유통 체인은 Buying Agent를 통한 구매 방식도 취하고 있다. 유통 마진율은 단계별로 상이하지만 높은 인건비, 운송비, 임대료 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의 3~4배 이상으로 소매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금 결제 방식에 있어서 대형 수입상은 DA/DP 조건, 소형 수입상은 L/C 개설보다 T/T 송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연중 구매 시즌은 업종 및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11월 및 4~5월이 가장 활발하다.

유통 단계별 마진율은 시장에서의 상품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쟁이 충분한 경우의 마진율은 아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쟁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300% 이상의 마진을 붙이기도 한다.

라. 소비자 특성

호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08년 기준 US\$ 50,150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나, 호주 소비자들은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브랜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내구재가 아닌 소비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특히 선호한다.

그러나 자동차, 가전제품, 모바일폰, 가구 등 내구재는 가격 이외에도 품질, 기능, 서비스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이다. 호주는 12월 말부터 1월까지가 세일 시즌으로 소비자의 구매가 가장 왕성한 기간이다.

호주는 인구가 2,100만 명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라 마케팅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시장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이동통신 서비스 이외의 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매우 느린 특징이 있다.

마. 수출 유망 상품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도가 높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면 호주 시장에서도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중장비, 플라스틱 레진, 철강제품, 기계·공구류, LED, 보안 장비, 의료기기 등이 대 호주 수출 유망 상품이다.

단, 시드니 중심의 NSW지역의 경우 인구상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나 제조업이 미발달하여 기계 및 공구류, 제조업 용 원자재 등은 수요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 최근의 유망상품은 다음과 같다.

- Green Product (LED 등):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소비자 인식 증가
- RFID 관련 품목 (POS 결제 시스템 등)
- 재택 소비형 제품 (게임, 홈엔터테인먼트 등): 불황시대의 효자 품목
- 미니/개인형 전자제품 (미니 노트북, 포터블 DVD 등)
- Silver 제품: 구매력, 소비자규모 면에서 최유력 시장
- 보안장비류: 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경쟁이 격심
- 포장재류(스트래핑, 필름 등): 중국산에 대한 실망이 대한 수요 촉발

2. 물가정보

(1 US\$ = 1.12 AUD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AUD)
식품류	쌀 1kg	3.29
	계란 12개	6.30
	쇠고기 등심 1kg	19.96
	돼지고기 등심 1kg	17.99
	우유 500ml	1.50
	식용유 1L	7.99
	생수 1L	2.9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7.95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0.2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45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588.8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55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5,000.00
	무연휘발유 1L	1.25
	자동차 등록비	8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80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6.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3.20
	시내버스 기본요금	1.90
	택시 기본요금	3.7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3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27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78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39.95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96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8,70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1,00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2,50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79.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7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43,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6,0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80,000~ 15,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38시간
	출산휴가일수	52주
	연간 국경일수	10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9.5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업체 디렉터리(KOTRA 무역 자료실에서 이용 가능)

- Yellow Pages Sydney 2009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Yellow Pages Melbourne 2009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Yellow Pages Sydney 2008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Yellow Pages Melbourne 2008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White pages Sydney 2008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White pages Melbourne 2008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 Kompas Australia 2007 / APN Business Publishing Pty Ltd Group
- The Business Who's Who Products and Trade names Guide 2007 / Dun & Bradstreet (Australia) Pty Ltd.
- 상기 디렉터리 중 실제로 가장 유용한 자료는 옐로 페이지이다. 업데이트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며 내용도 매우 풍부한 편이다. www.yellowpages.com.au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2) 주요 협회 리스트

- Advertising Federation of Australia Limited(AFA)
- Aerosol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AIA)
-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AREMA)
- Association of Liquid-paperboard Carton Manufacturers Inc(ALC)
- Australasian Bottled Water Institute Incorporated
- Australasian Soft Drink Association Ltd(ASDA)
-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AAA)
- Australian Automotive Aftermarket Association Ltd
- Australia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AusBiotech)
- 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 Australian Canegrowers Council(CANEGROWERS)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ACCI)
- Australian Computer Society(ACS)
- Australian Council of Wool Exporters
- Australian Direct Marketing Association
- Australia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nufacturers' Association Ltd
- Australian Federation of Travel Agents(AFTA)
-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AFGC)
- Australian Foodservice Manufacturers' Association
- Australian Fruit Juice Association
- Australian Industry Group
- Australia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AIIA)
- Australian Market Research Society(MRSA)
-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Ltd
- Australian Pump Industry Association(PIA)

- Australian Record Industry Association Ltd(ARIA)
- Australian Society of Perfumers and Flavourists
- Australian Toy Association Ltd(ATA)
-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BCA)
-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of Australia Inc(CTFAA)
- Council of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of Australia Ltd
- Direct Selling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 Federation of Automotive Products Manufacturers
- Food and Beverages Importers' Association
- Grains Council of Australia
- Hairdressing & Beauty Industry Association
- Medicines Australia
- Motor Trades Association of Australia(MTAA)
- National Association of Forest Industries
- National Farmers' Federation(NFF)
- Packaging Council of Australia(PCA)
- 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
- Proprietary Medicines Association of Australia Inc
- Refrigerated Warehouse and Transport Association
- Restaurant and Catering Association of Australia
-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Union of Australia(TCFUA)
- Wool Producers

3) 전시회 정보

2008~2009년에 개최되는 호주 내 주요전시 정보는 시드니 전시컨벤션센터(www.scec.com.au), 멜버른 전시컨벤션센터(www.mcec.com.au) 및 브리즈번 전시컨벤션센터(www.bcec.com.a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KOTRA 전지포탈(www.gep.or.kr)을 통해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유력 전시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호주는 공급자(바이어) 중심 시장으로 공급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들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당한 수준의 유력 기업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지극히 단순한 형태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 정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주 옐로 페이지: <http://www.yellowpages.com.au/>
- 호주 화이트 페이지: <http://www.whitepages.com.au/>
- 제조 업체 검색: <http://www.ausmanufacturers.com.au/>
- 기업 검색: <http://www.industrysearch.com.au/>
- 공급 업체 검색: <http://www.ferret.com.au/>
- 업체 전반 검색: www.hotfrog.com.au
- 유료 업체 정보 검색: www.dnb.com.au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호주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북반구와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물품 주문 시 자신의 판매 계획을 감안해 물품 인도 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만일 해외 공급업체가 이들의 지정한 인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가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 업체들은 인도 날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가. 소량 수입 주문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미국이나 EU와 비교할 때 1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TARGET, K-MART 및 BIG W, WOOLWORTHS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 체인점들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남성용 와이셔츠에 대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문량은 3~4가지 색상에 300다즌 정도이며 DAVID JONES와 같은 중형 백화점은 2-3가지 색상에 150다즌 정도이다.

그러나 호주는 OECD 국가 중 하나로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대중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어 주문 회수가 비교적 많고 일단 거래 및 신뢰가 형성되면 주문이 꾸준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호주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공급업체들은 호주의 이러한 시장특성을 이해하고 소량 주문이라도 적극 수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나. 미국 달러화로 FOB 기준의 견적 요구

관세는 FOB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유통업체들은 FOB 가격 기준의 미국 달러화로 견적을 내줄 것을 요구한다.

다. 표준 팔레트 크기의 견고한 포장 요구

호주에서 쓰이는 팔레트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의 팔레트와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호주 유통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출 포장은 여타국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 표준 팔레트(PALLET)인 1,165MM X 1,165MM 크기의 카톤 포장에 외포장된 상태에서 카톤 당 총 중량이 20KG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여타국과 다른 점은 다중 포장(MULTIPLE PACKS)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광대한 국토에 거점 시장이 분산되어 있는 호주에서는 시드니나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 있는 중앙 창고에 수입 물품이 도착되면 겹포장은 뜯어내고 내포장물만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체인점들로 운송하는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주 유통 업체들은 장거리 운송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내포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각 내포장에도 참조 번호, 상품 명세, 수량들이 인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호주 표준 라벨링 규정 준수

호주 연방 및 각 주정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해외 공급업체들이 유의해야 할 이러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수입품들에는 원산지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제품에는 성분 표시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면 신발은 SOLE 과 UPPERS 가 가죽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야만 하며, 식료품은 모든 성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중량 및 크기는 미터법으로 표시되어야 함.
- 몇몇 제품들은 특정 규격에서만 판매가 가능함. (예: 중량 단위 75G, 100G, 125G, 150G 등)
- 모든 섬유 제품에는 취급 시 주의 사항, 원산지 등이 영어로 상세히 설명된 TAG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한국산 의류 중 계절 이월 상품 재고 처분 시 영문 라벨링이 없는 제품이 수입되곤 하는데, 통관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 모든 식료품에는 제조일과 유통 기한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잠옷의 경우 FLAMMABILITY 에 관한 경고문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마. 표준 규격 및 소비자 보호

호주 표준협회는 매우 광범위한 표준 규격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지 않은 상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호주 소매업체는 물론 해외 공급업체들도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호주 표준 규격에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공정거래법(TRADE PRACTICES ACT)을 통해 철저히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 법은 기만적인 상관행 및 불량품 판매 금지, 애프터 서비스 및 보증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 식품 수출 시 검역관련 사항

돼지독감 등을 전후하여 검역관련 절차의 엄격성과 기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부 한국식품 수입업체에 따르면 4월부터 검역기간이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 기타 유의 사항

호주의 시장 규모가 협소하여 다품종 소량 소액 주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데다가 제품의 규격이 한국과는 다르고 계절마저 상이하다 보니,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호주 시장을 재고 처리 시장으로 인식하고 생산 과정에서부터 우선 순위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호주가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 소비 성향이 매우 높은 편이고 일단 거래가 시작되어 파트너와의 신뢰가 쌓이면 좀처럼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량, 소액 주문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후발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품질 고급화 노력이 요구된다.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납기 지연, 가격 인상 요인 발생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업체의 양해를 구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클레임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신속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금 결제 방식도 L/C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D/A, D/P 조건 등 다양한 결제 조건을 수용하는 유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도 저가 포장재 사용 및 포장 불량으로 물건조차 저가품으로 인식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압축 포장 및 고가 포장재 사용을 통해 고급품 이미지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소형 수입상들은 L/C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복잡성 때문에 직송금 방식(T/T, D/A, D/P) 거래를 선호하는 바 대금 결제에 있어서 신속성을 요하며,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 시에 FOB(부산) 등을 기준으로, 품목별 가격표 준비가 필수적이다.

호주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지사가 시드니에만 집중되어있어 멜버른과 같은 여타 지방 상권에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망되는 실정이다. 마케팅 방법에 있어서는 다품종 소량 주문형 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 재고 판매 전략도 채택해 볼 만한 것으로 보인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상관습

상관습은 매우 보수적이며 인콰이어리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지 못하지만, 단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거래를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은 인구로 인하여 시장 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거래가 소액 소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장기 안정적인 거래선으로 확보하려는 자세가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관건이다.

또한 호주는 제품 안전 규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정착돼 있어 사후 클레임의 소지가 큰 시장임을 숙지하여, 수출 시 관련 안전 규정과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나. 유통 마진

품목 및 업종에 따라 크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에 민감한 식료품 분야는 13~15% 정도이고, 할인 백화점에서 의류 및 일반 잡화의 유통 마진은 30~40% 정도이나, 고급 백화점에서는 100% 이상이다.

의류전문 소매 체인점들은 30~50% 정도의 유통 마진을 보고 있다. 판매량이 적은 소형 소매점들은 최소한 80% 이상의 유통 마진을 보고 있으나, 야채와 과일은 40% 이하 수준이다.

대형 도매업자들의 경우 대량 주문에는 15%, 소량 주문에는 30~40% 정도의 유통 마진을 보고 있다.

다. 국산품 선호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내적으로 전개한 국산품 애용 운동의 영향도 없지 않으나,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수입보다는 우선적으로 국내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납기일 때문에 유행이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이 없어 의사 소통이 원활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없고 광고, 선전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가 국내 공급업체들이 해외 공급업체들보다 용이하며 L/C 개설, 통관 등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장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호주 대형 유통업체들은 운송료, 보험료, 관세 등 수입에 따르는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국내 제품 가격보다 최소한 10-15% 정도는 저렴해야 수입을 고려한다. 국내 제조 업체가 없어 수입을 할 경우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BUYING AGENT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있으나 주문량 이소량이거나 마무리 공정이 수입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상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수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직접 수입하는 소규모 소매상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북반구와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물품 주문 시 자신의 판매 계획을 감안하여 물품 인도 날짜를 지정하고 있다. 만일 해외 공급업체가 이들의 지정한 인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으로 거래가 중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업체들은 인도 날짜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근무 시간에 이뤄지며 오후 5시가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 또는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 인들은 타인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2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 시간, 주말(토, 일요일), 금요일 오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 처리는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인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썰렁하다. 이미 퇴근 시간대의 러시 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마. 관공서 관행

호주에서는 사회 관행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모든 일에 원리 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관의 수입 물품 통과 절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 심사 위주로 진행되나, 샘플링 검사에서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신뢰를 쌓기까지 이후 5-6회 동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주 관공서의 일 처리 태도는 매우 친절하나 결코 서두르지 않으므로, 성격이 급한 편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은행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서두르는 법이 없다. 호주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하고 이를 당연시하며, 차례를 기다리지 않는 행동을 싫어한다. 또한 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주변의 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관공서는 물론 은행, 전철역, 버스 정류장, 식당, 쇼핑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일 처리가 느린 반면 처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철저하다. 빨리빨리 대강 대강이란 게 없다.

관공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휴가(통상 1개월)를 떠나거나 장기 출장을 떠났을 경우,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달리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업무가 마비되나, 호주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단 관공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월 중반부터 약 한달 간은 현지 휴가 기간으로 대부분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 용수 다량 사용업체 투자진출 유의

호주는 2002 년 이후 최근까지도 30 년 내 최대 가뭄으로 인하여 수자원 부족이 심각하여 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전기료 인상도 예상된다. 따라서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호주의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사. 호주의 숙련 인력 부족

호주의 기업가들은 기업 운영 시 최대 애로 사항으로 흔히 노동 인력 부족을 꼽는데, 최근 국제적인 자원 가격 폭등으로 호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3%를 상회하는 등 경제 활황으로 실업률이 4%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 호주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현지 근로자 채용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 한국 BT기업 호주 투자 진출 검토 필요

호주는 세계 최초의 자궁경부암 백신개발, 페니실린의 다양한 치료 메카니즘 발견, 인공 귀 이식수술 성공, 헬리코박터 감염과 위궤양과의 관계 규명, 천식 치료제 개발 등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위염, 항 감염 분야에서는 노벨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호주의 BT 기술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동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는 호주와의 기술 협력 또는 투자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자. 한국 상품 진출 여건 개선

최근 호주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낸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 → 현지진출 자동차, 전자제품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대폭 제고 노력 전개하고 있다. 또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 중국 등지에 비해 안정적인 공급선으로서 한국 기업 선호도가 높아진 편이다. 한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극히 실용적인 구매 패턴에서 디자인 및 부가 기능을 중시하는 비중이 증가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 → 휴대폰의 패션 아이템화)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한솔 흥데코(성공 사례)

한솔 흥데코는 1993년부터 서호주 주(West Australia) 번버리(Bunbury)항 인근 지역에 조림 사업을 개시했다. 한솔의 유칼리투스 조림지는 번버리 항 인근 150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현재 약 1만 6,000ha(여의도의 약 30배)에 달한다. 동 조림 사업은 목재 펄프 원료(우드칩) 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조림 사업 시작 후 10년이 소요되었다.

동사는 2004년 3월 우드칩 공장을 완공,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으며 초기 단계에는 연 50만 톤 생산/매출 210억을 목표로 향후 연 100만 톤 생산/매출 500억 수준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동 공장은 조림지와 항구로부터 모두 근접, 내륙에 위치한 일본 기업들보다 10~15%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

한솔의 조림지는 특히 교토 협약에 즈음하여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조림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의 판매가 가능하다. 호주 조림지의 CO2 흡수량은 2008~2023년간 25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한솔 측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조림지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가 1,000억 원~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찬스(Kim Chance) WA주 농산림부 장관은 한솔의 조림 산업이 양국 모두에 큰 성과를 주었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프 갤럽(Geoff Gallop)에서 호주 수상은 한솔이 서호주의 수출 기지로서의 가치를 일찍이 예견한 점, 조림 산업과 우드칩 공장이 서호주 고용에 크게 기여한 점, 공장 건립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나. 광업진흥공사(해외 자원 개발 성공 사례)

광업진흥공사가 SK와 함께 50%의 지분을 투자한 호주 스프링베일 석탄광은 호주 광산업을 대표하는 몇 개의 석탄광 중의 하나이다. 원래 1990년대 초반에 한국의 한 대기업이 스프링베일 광구 입찰에서 운영권을 따내어 1992년도부터 지표 시설 및 갱도 굴진을 시작하였으나, 몇 년 동안 운영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손을 떼고 말았다.

그 후 2000년 12월에 광업진흥공사와 SK가 지분 참여를 시작하여 2002년에는 손을 떼기로 한 한국 기업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1) 안정된 거래선 확보

호주 New South Wales주 Lithgow시 북쪽에 위치한 스프링베일 석탄광은 시드니로부터도 북쪽으로 16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으며, 근처에 철도 및 국도가 통과하고 있고 Port Kembla항이 동쪽으로 240km 지역에 있어, 지리적인 입지 조건도 아주 좋은 편이다.

여기에서 1994년 1월에 인근 Delta 전력이 보유한 2 곳의 인근 발전소와 장기 석탄공급 계약까지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Mount Piper 발전소와 Wallerawang 발전소에 연간 230만 톤의 석탄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상기 230만 톤의 장기 공급분을 초과하는 생산 물량은 대부분 Delta 전력에 Spot 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석탄가격이 회복되고 광산 생산량이 늘어나 호주국내 공급 초과분에 대한 수출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04년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파동 당시, 장기 공급분 외의 여유 물량을 한국으로 수출하여 한국의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 영업 현황

탄광 영업 초기에는 생산에 차질이 있었으나, 1999년 이후부터 현장 기술진이 막장 지질에 기술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정상 궤도에 도달하였다. 노천에서 생산되는 양을(1996~1999 년: 약 60만 톤) 제외한 순수 스프링베일 갭 내 생산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말 약 300만 톤에 이르고 있다. 또 판매의 월별 변동 및 대금 입금 시차에 기인해 현금 흐름의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2000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호주화로 2,0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D사(성공 사례)

D 사의 U\$ 1,200 만 대호주 수출 쾌거는 2005 년 멜버른 KBC 가 현지 A 자동차 부품 업체가 원가 절감 목적으로 기존 호주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관련 부품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A 사가 한국 업체로부터의 소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멜버른 KBC 는 한국 부품 업체들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bench marking 을 위한 가격 비교 검토라도 줄으니 RFQ(Request for Quotation) 기회를 달라고 적극 설득하였다. 이에 호주 A 사 구매 담당자는 큰 기대없이 굳이 원한다면 알루미늄 고압 주조 다이캐스팅 공법을 이용한 하우징 부품류의 자체 개발 능력과 해외 수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발굴하여 주면 가격 비교를 검토해 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멜버른 KBC 에서 관련 한국 업체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을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업체인 한국의 D 사를 발굴해 호주 A 사에 소개하였다.

호주 A 사는 D 사가 단순히 도면을 보고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 제품 디자인 자체 개발 능력까지 갖춘 업체라는 것을 알게되자 D 사에 대해 관심을 가 지기 시작하였다. 호주 A 사는 또한 당시 서울에서 개최된 제 1 회 KOAA Show(한국 AS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도 참관 바이어로 방한하여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우수성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D 사를 방문하여 상담과 공장 실사를 실시한 호주 A 사는 방한 출장 후 곧바로 정식 RFQ 작업을 진행시켰다. 약 3 개월간에 걸쳐 모든 검증을 마친 호주 A 사는 드디어 한국 D 사를 OEM 부품 공급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1 차 메이저 프로젝트는 호주 A 사가 당시 생산 중이던 4 속 변속기의 알루미늄 고압 주조 다이캐스팅 하우징 제품으로 확정됐다.

1 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D 사는 호주 A 사의 신규 프로젝트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술 협의가 잦아지면서 멜버른 KBC 는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현지에서 기술 협의에도 참석하였다. 거래 과정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차 프로젝트에 이어 호주 D 사의 신규 프로젝트에 한국 D 사가 견적 제출 후 발생한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으로 인 하여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호주 A 사가 가격 인상 수용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바람에 거래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 도래하였다.

한국 D 사도 수입업체가 가격인상 요인을 수용해 주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거의 포기하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멜버른 KBC 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하여 급기야 2008 년 2 월 가격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U\$ 1,200 만 상당의 계약이 성사되게 되었다.

라. DH 사(성공 사례)

DH 사는 세륵기 제조업체로 2007 년 11 월 시장 개척단으로 멜버른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상담한 바이어와 6 개월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5 월 드디어 4 만 3,000 미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향후 대량의 추가 오더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도로교통법 규정에는 아직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세륵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연방 정부 환경감독기관인 호주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에서도 트럭을 통하여 진흙 등이 공사 현장 밖 일반 도로에 묻어 나오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5 년 이상 지속된 오랜 가뭄으로 인해 건설 또는 광 산 개발 현장에서 진흙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아 트럭에 묻은 모래 먼지 등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 현장 출구에 설치된 자갈 또는 트럭용 발판 등을 통하여 모래 먼지 등을 털고 나 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절수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EPA 에서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7 년 11 월 동사의 멜버른 방문을 앞두고 멜버른 KBC 에서는 우선 EPA 를 방문하여 세륵기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멜버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 이외에 세륵기가 쓰여질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 트럭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물류회사, 시멘트 회사, 광산업체, 트럭 판매 업체, 대형 건설 회사, 쓰레기 처리장 및 중장비 대여 업체 그리고 자동차 세차 장비 업체등 관련 업체들을 대부분 접촉하였으나 모두 허사였다.

이에 따라 멜버른 KBC 에서는 멜버른과 거리가 멀어 상담회에 방문 가능성이 낮지만 세륵기가 꼭 필요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호주 전역을 대상으로 바이어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멜버른에서 약 3,000km 떨어진 호주 Queensland 주에 있는 자동차 세차 장비를 전문 수입 유통하는 A 사가 관심으로 보였고 멜버른까지 방문하게 유도하였다. 어렵게 발굴하고 멀리서 상담회에 참석한 만큼 당연히 세륵기에 관심이 많았으며 DH 사와 멜버른 KBC 에서도 에스키모 인들에게 냉장고를 홍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세륵기 홍보에 열과 성을 다했다. 이에 A 사는 상담장에서 세륵기 수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세륵기 수입에 관심을 가진 호주 A 사를 다시 DH 사와 멜버른 KBC 에서 적극 독려하여 한국으로 DH 사를 방문하게 유도하였다.

시장 개척단 이후 약 6 개월에 걸친 DH사와 멜버른 KBC 간의 적극적인 호주 시장 개척 의지로 드디어 지난 5월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입 업체는 세련기의 성능과 시장성이 확인되면 향후 대량의 추가 오더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을 내비쳤다.

마. K사(실패 사례)

호주 바이어들의 구매 성향은 보편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는 데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그리고 약간의 가격 차이로 현 거래선을 바꾸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현지 바이어들의 의하며 일반적으로 가격 차이로 거래선을 바꿀 경우에는 현재 구입 가격보다 15~20% 정도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시도한다고 한다. 이는 현 거래처를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제품 test 검증 및 인증 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를 감안할 때 최소 15~2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선을 바꾸는 일이 다른 나라 바이어에 비하여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반면에 한번 공급자로 선정이 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한국의 K사는 특수 보안 장비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관련 업계에서는 특수 보안 장비 사업의 후발 주자로 업계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K사가 단기간에 제품을 개발해 수출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불가사의한 기적과 같은 사례로 평가를 할 정도였다.

K사는 대기업 또는 큰 규모의 업체만이 손을 댈 수 있다는 특수 보안 장비 사업에 과감히 뛰어들었고,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관련 업체들의 소문을 뒤로 한 채 우여곡절 끝에 첫 모델을 성공리에 개발하여 당시 미국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전시장을 방문한 몇몇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선금까지 받으면서 제품 생산과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되지만 진통은 바로 이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품 개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 투자가 물색에 나서게 되지만 경험이 부족한 K사에게 좀처럼 투자가가 발굴이 되지 않자 곧 시련이 닥치기 시작한다.

처음 두어 번 오더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납기 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자 걱정이 앞선 해외 바이어 업체들은 그 동안의 선금 지불 방식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K사의 자금 사정은 더욱 극도로 나빠지고 심지어 급한 자금 회전을 위하여 수출 상품에 불량 요소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수정하여 보내지 않고 LC 결재를 위한 목적으로 불량 제품을 싣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K사로부터 제때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부품 하청업체들은 급기야 제품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K사가 개발 중인 특수 보안 장비는 모델 사양이 매우 빠르게 바뀌는 제품 류인데 항상 자금에 압박을 받은 K사는 그때 그때마다 바이어들과의 제품 개발과 선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호주 바이어는 K사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하여 많은 현지 주요 딜러망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 받는 악순환으로 발전되었다. 급기야 K사는 모든 바이어들로부터 거래를 거절 당했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그 동안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준비가 안된 무모한 의욕만을 앞세운 계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호주 바이어에게 손해를 끼친 흔하지 않은 사례이며 K사가 제품 불량을 인식하고서도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무리수를 쓴 것이 오히려 호주 업체로부터 더 이상 오더를 받지 못할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된 사례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위치, 전철(City rail)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아동을 위한 학교를 미리 고려한 다음, 학교 인근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주택 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나 일요판 신문에 실리는 임대 광고를 통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마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복덕방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구역 내의 매물을 가격대, 평형대, 주택 형태별로 매물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의가 있을 경우 집을 보여주고(inspection) 상담을 해준다. (주요 웹사이트: <http://www.domain.com.au>)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선불리 쉽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다만 시드니 지역의 경우 최근 주택 임대 수요가 워낙 높아 며칠 간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수요자에게로 임대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것은 사전에 부동산 업자들과 매물이 있는지 전화 상으로 확인하고, 적당한 매물이 있는 경우 만날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복덕방을 찾아 가서 바로 집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 거의 실패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여러 복덕방을 접촉하여 매물의 조건 등을 확인한 다음 주택 내부를 살펴볼(Inspect) 집 리스트를 작성하여 중개업자와 시간 약속을 하고 집을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신규 주택 건설이 부진한 반면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급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경우 집 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인기 거주 지역의 경우 임차 매물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호주의 집세는 1주 단위로 계산된다. 즉 주당 A\$ 500 혹은 A\$ 700 정도 하는 식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서류상 집주인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관련 비용 접수 등 모든 일을 대행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Bond/4주 분의 월세)과 월세(rent/1개월 분 임차료)가 전부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되나, 퇴거 시 집의 상태에 따라서 원상 복구비 명목으로 일부는 돌려 받지 못한다. 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집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양식(inspection form)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동 Inspection 작성 시 임차인은 추후를 대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물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한 후 계약을 맺고 입주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호텔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에 한 달 정도 거주하면서 제반 사항을 해결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권한다. 4인 가족 기준 1실의 한 달 민박료는 식사 포함 A\$ 1,200 전후이다.

나. 은행 계좌 개설

호주 국민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Westpack 등 다수 지점을 가진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집세 납부는 본인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 이체하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산에서 발행한 deposit book을 매월 작성 현금 혹은 수표로 해당 은행에 직접 내거나 혹은 최초 소개받은 부동산에 가서 현금 혹은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 계좌 개설 시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언급한 민박집 주소를 활용할 수 있다. 호텔 주소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주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차후 은행카드 송부, 수표책 송부 시 여러모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다. 전화 신청

호주 국영 통신회사(민영화 진행 중)인 텔스트라에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새로운 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택 임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영어로 의사 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바꿔 달라고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ww.telstra.com.au)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다수 있는 바, 이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 연결(ADSL)까지 해결할 수 있다.

라. 가스, 전기, 수도

가스는 The Natural Gas Company(전화: 131 606)를 통하여 연결을 요청하고,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들을 접촉할 경우 집 주소, 집 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 등을 물어 오므로 주택 임차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물론, 가스, 전기, 수도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세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동 사항은 아래의 전기, 수도 연결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기는 Energy Australia (전화 131 535)를 통하여 연결하고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주별로 전기 회사가 상이함). 수도의 경우, UNIT(연립주택), 아파트는 집주인이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련 수도국에 연락하여 신규 입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 비품 구입

호주는 TV 및 비디오가 한국과 달리 PAL 방식이어서 Multi 기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전압이 240V로서 한국의 220V보다 높고 싸이클도 달라 (50 Hz: 한국 60 Hz) 전압 및 싸이클에 민감한 제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 제품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승압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필요한 전자 제품은 호주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가격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 생활 정보 수집 방법

호주에 도착하여 가장 빨리 정착하는 방법은 한국 교포들이 발행하는 주간 정보지를 입수해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어로 제작되는 주간 정보지는 시드니에서 10여 종이, 멜버른에서 4종이 발간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매주 금요일에 발간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이 활발한데 www.hojunara.com 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매주 금요일에 한국 식품점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주간 정보지에는 한국인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기관은 물론 동문화 연락처와 병원, 중고품 판매 광고, 비디오 대여점 등 한국인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시드니 KBC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좌측 중하단부에 있는 “호주교민 의 통신 마당”에서 교민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멜버른 지역에서는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라디오 한국어 방송(AM 1224 KHZ)이 매주 일요일 오후 3시-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멜버른 교민 소식은 물론 종합 뉴스, 일요 시사, 웰빙 건강, 문화 공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호주에 도착한 경우라면, 택시를 이용해서 “캠시” 또는 “이스트 우드”, “스트라스필드” 전철역에 가자고 하면 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당도하게 된다. 한국 간판이 걸린 근처의 아무 가게에 들어가도 주간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요일에 발간되기 때문에 금, 토, 일요일에 구하기가 가장 쉽다.

사. 자녀 교육 여건

1) 호주의 교육 제도

호주의 학제는 초등학교(Primary) 6년, 중고등학교(Secondary) 6년, 대학교(Tertiary) 3~6년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중고등학교(Secondary)는 HighSchool이라고 칭하는데, 중등 과정 4년(7~10학년), 고 등 과정 2년(11~12학년)으로 나누어지며, 중등 과정을 마친 후 대학 진학에 뜻이 없거나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바로 졸업하게 된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만 고등 과정에 진학하며, 11~12학년을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 호주의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은 주마다 달리 운영되는데, 시드니 지역에서는 HSC (High School Certificate)로 불리며, 멜버른 지역에서는 VCE(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로 불린다. 시험 내용은 장시간에 걸친 주관식으로 논리성과 응용력 테스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등 과정(10학년)까지만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기술 전문 학교(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에 진학하는데, TAFE는 약 200개가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이다. 한편 호주의 학제는 매년 2월에 시작되어 11월에 마치게 되며, 2학기로 운영된다.

2) 시드니에서의 자녀 한국어 교육

호주에 파견된 국가 공무원이나 주재상사 직원들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교과 과정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드니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교포 자녀를 위한 기초 한글 과정 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주재원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한 교과 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드니에는 North Turamurra라는 지역에 주말 한글 학교(린필드 한국 학교)가 있어서 주재원 자녀들이 귀국했을 때 받게 될 학습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국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 학교는 한국의 동급 학년에서 받는 수업과 동일한 진도로 수업을 진행되나, 매주 토요일에만 운영되어 어려움이 따른다.

- 린필드 한국 학교 수업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뤄지는 수업은 2시간을 한 묶음으로 해서 3교시 수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 20여명과 학생 수 150여 명으로 구성된 린필드 한국 학교는 시드니 북부 지역의 하이스쿨을 빌려서 운영된다.
 -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과목을 두루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한자 교육 포함)와 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오후에 사회 관련 과목의 수업이 추가된다.
 - 현재 학교의 학급 구성은 유아부(3세부터), 유치부(초등학교 입학 전 기초 한글 교육), 초등학교 학년별 6개 학급, 중등부 학년별 3개 학급, 고등부 2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년별 수업 진행 방향
 - 유아반, 유치반
 - 오전 1 교시(9:30~11:20)와 2 교시(11:50~1:30) 수업을 진행하며, 유아반은 학생들의 사회성 교육을 중심으로 미술, 음악, 예절 등의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 유치반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기초 교육과 사회 활동성 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 한국의 교과 과정에 따른 기초 한글과 기본 수학 익히기를 중심으로 1 교시(9:30~11:20)는 국어, 2 교시(11:50~1:30)는 수학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오후 수업은 없다.
 -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 한국의 교과서를 공급받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오전에는 국어, 산수를, 오후에는 사회 과목 수업을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한다.
 - 중학교 과정
 - 한국의 교과서를 공급받아 교과서를 중심으로 오전(9:30~오후 1:30)에는 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오후에는(2:00~3:30) 주로 사회와 국사 등을 가르친다. 국어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한자 수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 현실에서 중시되는 논술 교육, 토론 교육을 도입해 2000 년도부터 시행되는 수행 능력 평가제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 과정은 한국의 대학 입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국어와 수학 2 개 과목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후 수업도 국어 수학을 격주로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국어의 경우 교과서와 함께 논술 수업에 주안점을 두고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주요기사 등을 복사해 토론하거나 쓰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과외 공부도 가능한데, 과외비는 개인 과외의 경우, 시간당 A\$ 60달러(US\$50) 수준이며, 그룹일 경우 학생 2~3명에 A\$ 120달러(US\$ 90) 수준이다. 각종 악기 교습비도 위 과외비와 유사하다. 한편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 하는 영어 교습이 다수 존재하여 문법에서 에세이 작문까지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다.

자. 자동차 구입

호주 생활에 있어 자동차 구입은 필수라 하겠다. 대중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시설면, 용량면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차량 구입에 있어 우선 결정할 사항은 신차를 구입할 것이냐 중고차를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호주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재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체제기간 등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

시드니 지역의 경우 중고차 매매점은 파라마타 로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소재해 있다. 교민 잡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매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때 보험 문제, 차량 등록 문제, 명의 이전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의 경우에도 유가가 크게 상승하여 연비가 높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요 웹사이트: <http://www.drive.com.au>)

차. 신분증 및 운전 면허 취득

초기에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대용하나 여러모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현지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별 교통 관리국(NSW주의 경우 RTA)에서 발급하는 Photo ID 카드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Photo ID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과 거주지에 대한 증명서 필요하다. 거주지에 대한 증명서는 해당 주소와 신청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고지서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Photo ID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의 확인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Photo ID 카드는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 운전 면허는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유효 기간 내의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운전 면허증은 비용만 지불하면 바로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제 운전 면허증도 인정이 되나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은 한국 운전 면허증을 공증 번역하는 것으로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번역 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번역 비용은 A\$ 80 선이다.

본격적으로 호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과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 시험은 한국어로도 응시할 수 있고 기출 문제가 교통 관리국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합격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주행 시험의 경우 통상 몇 주 정도 개인 강사에게 수강을 받은 후 응시하게 된다.

NSW주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시험 응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운전을 하여야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된 한국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www.rta.nsw.gov.au)

카. 병원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일단 주거지 인근의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 진단을 받고, GP의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거나 다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급 환자가 있을 경우 공립 병원(public hospital)의 응급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000번을 눌러 앰بول런스를 부를 수 있다. 최근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증가 추세이다.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의 경우 메디케어라 불리는 일종의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대부분의 진료 및 치료를 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가 커버 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고, 사립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립 병원의 경우 때로는 치료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함) 별도의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주권이 없는 단기 체류자는 민간 보험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험료는 통상 월 300~400호주 달러(가족 기준)이며 안과, 치과 등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 보험사: www.mbf.com.au)

다. 인터넷

4대 통신사(Telstra, Optus, Vodafone, 3)와 TPG 등 별도 사업자, 이들로부터 라인을 할당 받은 중소 ISP 등 여러 업체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사양은 전화라인을 이용한 ADSL2 상품으로 일반적인 상품은 월 50달러 정도에 다운로드 용량이 30기가 정도로 제한된 상품이다. 통상 최소 1년의 계약기간을 요구하는데 프리페이드(prepaid) 방식의 무선 인터넷(Wibro)를 이용하면 원하는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장비는 재판매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Telstra, 3, Unwired 등이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한다.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기후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465mm로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동절기: 7~9월, 하절기: 12~2월)

대표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은 하절기 낮 기온이 평균 30°C, 동절기 최저 기온은 평균 5°C 내외로 기후 조건이 매우 뛰어나며,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퍼스 등 주요 도시의 기후 조건도 양호한 편이나 해풍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다소 심하다.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 피부암 발생율이 세계 1위일 정도로 태양광선이 매우 강하므로 하절기에는 선블록 크림과 선글라스가 필수적이다.

나. 시차/Business hours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캔버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르다. 즉 한국이 오전 10:00일 때, 호주는 11:00이다. 단 매년 11~3월은 서머타임을 실시하며 이때는 한국과 2시간의 시차가 생긴다. 퍼스와 같은 서부 지역은 시차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이는 호주 대륙이 워낙 넓은 관계로 세 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여름 기간(10월 마지막 일요일~ 4월 첫째주 일요일)은 서머 타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동부 도시들과의 시차가 2시간으로 늘어난다. 즉, 한국이 10:00일 때, 호주는 12:00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퀸즐랜드 주(브리즈번)는 서머타임을 시행치 않아 여전히 1시간의 시차가 유지된다.

다. 비자

1) 비자 관련 일반 사항

호주 입국시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Transit을 위해 공항 내에서만 체류할 경우에는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화된다. 관광비자로 입국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발급 절차가 간편한 ETA (전산방문 비자)는 3개월 미만 호주를 방문할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

2) 비자 발급

관광, 상용비자는 호주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ETA(전산비자)를 인터넷 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ETA 전산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ETA를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인터넷 서비스비로 지불해야 한다.

ETA 비자 취득은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신청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 경우를 예상하여 출국 최소 5일 이내 비자를 신청해야 함.

ETA 비자 취득 조건: 유효한 여권 소지, 방문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할 경우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시 단기방문/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호주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련정보 www.australia.or.kr를 참조.

라. 출입국 절차

1) 호주 입국 절차

- 입국 심사: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 및 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기내 배부 또는 입국 심사장에 비치)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 창구에 제출.

2) 출국 절차

- 항공편 체크인
- 이민성 출국 심사(여권, 항공권, 탑승권, Outgoing Passenger Card 제출)

3) 여권 분실 해결 절차(여행 증명서)

여행 증명서는 정식 여권 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하거나, 해외 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자가 귀국하는 경우에 발급받는다.

- 구비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칼라 사진 3매, 항공권 원본 및 사본, 수수료(A\$13), 한국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 여권 분실 경위서 1부,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함.
- 소요 기간: 1주일
-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접수하되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함. 우편 접수 시 분실 우려에 대비하여 접수 및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는 추적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고, 반송 봉투에 수취인 주소를 기재함.

4) 통관 절차

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에 명시된 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동 Statement 제출)한다.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US\$ 150 상당)을 내야 함.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호 주가 환경보호 의지가 강하여 미신고 식품이 적발되면 입국 절차도 복잡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벌금을 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 쳐야 한다.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 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 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 된다.

- 무세 반입 허용 범위
 - 1인당 술 1리터, 담배 250개피 또는 250그램(18세 이상)
 - 개인용 의류(모피류 제외), 신발류, 위생 및 장식용품(향수 및 보석 제외)
 - 출국 시 재반출할 물품
 - 모피 의류, 향수, 보석을 포함한 기타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총 A\$ 400(18세 미만은 A\$200) 미만인 경우에만 면세
 - 김, 고추장 등 식품의 경우, 밀폐 포장되고 내용 성분 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휴대 반입 이 허용되며, 집에서 담근 고추장, 김치 등 식품은 모두 압류 조치된다.

마. 통화/환전

1) 통화

화폐 단위는 Australian Dollar(A\$)이며, A\$ 1 = 100 Cents이다. 원래는 파운드화를 사용했으나, 1966부터 달러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폐의 종류는 A\$ 100, A\$ 50, A\$ 10, A\$ 5 (2종) 등 6종이며, 동전의 경우에는 A\$ 2, A\$ 1, 50 Cents, 20 Cents, 10 Cents, 5 Cents 등 6종이 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호주의 화폐는 고액권으로 갈수록 크기도 커지는데, 동전의 경우 2달러짜리가 1달러짜리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호주달러화의 환율은 2010년 6월 기준 평균 A\$ 1= US\$ 0.91수준으로 호주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시 큰폭의 가치하락을 보였으나 금리 인상, 미달러 약세로 강세로 반전하였으며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 및 경제 성장 전망으로 당분간 호주달러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환전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환율이 유리하나,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소액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환전소는 환율이나 수수료 면에서 매우 불리한 편이다. 원화는 호주에서 환전할 수 없다.

환전 금액이 클 경우 HKSB(홍콩상하이뱅크)와 같은 시중의 중국계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이 경우 모든 환전 창구에서 신분증(여권 등)을 요구한다. 한편, 면세점이나 관광객 상대 기념품점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에서는 거의 미화를 받지 않는다.

바. 교통

1) 한국과의 교통

인천~시드니 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각각 주 7회 운항 중이며, 비행시간은 약 10시간이 소요된다.

인천~브리즈번 및 인천~멜버른 간 직항편(대한항공)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비수기에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직항편 외에도 홍콩, 동경,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는 다수 노선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간상 여유가 있다면 이용해 볼 만하다.

인천~시드니-멜버른 항로로 이동할 경우,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시드니 도착 시간과 멜버른행 비행기 탑승 시간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선 청사도 2개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 착오로 엉뚱한 국내선 청사에 내릴 경우 무거운 여행 가방과 함께 수백 미터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택시 이용 시에 본인이 이용할 다음 국내선 항공편 번호를 운전 기사에게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2) 시내 교통

한국에서 호주를 방문한 출장자가 시드니나 멜버른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차량 핸들이 우측에 있는 문제 이외에도, 도심 내에 일방 통행로가 많아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심각한 주차 문제로 인해 주차료가 택시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시내 버스, 전철, 모노레일 등 대중 교통편 이용도 출장자가 상담을 위해 이동하는 데에는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목적지에서 정확히 내리지 못할 경우 약속 시간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차하는 지역마다 안내 방송을 하기는 하지만, 독특한 호주식 영어 발음은 초행자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마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대중 교통을 이용해 보는 것도 호주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시드니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하여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의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이 약 2달러(A\$2.8)이나, 탑승과 동시에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된다. 1Km마다 1.2달러가 부과되기 때문에 탑승하여 3Km를 간다면 5.6 달러가 소요된다. 그러나 도심에서 시속 25Km 미만의 속도일 경우 시간 할증료 (분 당 약 50센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택시요금은 우리나라 3배 수준으로 보면 착오가 없다.

통상 전철역에는 빈 택시들이 다수 기다리고 있어, 택시를 잡는 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 그러나 용무를 마치고 전철역으로 돌아갈 택시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갈 때 이용한 택시 기사에게 1시간쯤 후에 또는 몇 시간쯤 후에 다시 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다시 와줄 경우에는 약 1.1달러(A\$1.4)의 부킹료를 더 내게 된다.

시내 버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두 시간에 세대 꼴로 운행된다. 그나마 노선별 막차 운행 시각이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저녁 7시를 전후하여 시내 버스가 마감된다. 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탑승할 때 행선지를 말하고 이에 합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전철의 경우, 노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출장자들의 이용도 권장된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편도 요금에 110~130% 정도로 왕복권을 살 수가 있다. 전철 구내 방송이 잘 알아 듣기에 쉽지 않고, 역사마다 역명이 잘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목적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호주의 공항에는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내 관광 안내 책자를 공항 안 여러 곳에 비치 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요소요소에 비치된 안내 책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 권쯤 가져 올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주요 지역별 지도, 전철 노선도, 기타 가볼 만한 곳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주소 개념

- 호주를 방문하는 출장자에게 곤혹스러운 일 중 하나가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도로명이 한 도시 안에도 여러 개가 존재하여 자칫하면 엉뚱한 주소로 찾아갈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도 도로명 뒤에 표기된 구역 명을 함께 알아 두어야 실수가 없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지역 명칭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통상 시드니라고 칭하는 지명은 도시 명이 아니고 NSW 주에 속한 여러 개의 소지역 (우리나라 구청급 행정 구역) 명이다. 따라서 시드니나 멜버른은 우리나라 서울이나 대전처럼 도시명이 아니고 종로구 또는 유성구와 같은 구에 해당하는 지역명이다. 호주 사람들은 시드니의 중심부 상업 지대를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로 칭하기도 한다.

시드니에는 Albert Street가 54개나 존재하고, Albert Road는 5개, Albert Avenue는 4개 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동일 명칭의 도로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 속한 Albert Street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택시를 이용할 때 실수가 없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 할 때에는 "124 Albert Street, Hornsby" 또는 "83 Albert Street, Sydney"처럼 구역명을 함께 불러줘야 한다.

○ 호주는 우측 핸들 시스템

- 호주는 영국식 교통 체계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
- 좌회전, 우회전 신호 체계도 마찬가지로이며,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는 로터리(Round About)가 많이 설치되어 과속을 방지하고 있다. 로터리에서는 언제나 우측 차량에 진입 우선권을 줘야 한다.

- C.B.D에서는 택시 이용이 바람직
 - 호주의 상업 중심 지역은 도로가 좁을 뿐 아니라, 주차장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주차장을 찾더라도 주차 요금이 택시 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자가 운전의 경우 목적지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택시 이용이 바람직하다. 또한, 좁은 도로에서 일방 통행 차선과 진입 금지 표기가 많아 현지에 거주하는 운전자들도 자주 이용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목적지를 길 건너편에 두고도 한참을 다시 돌아야 목적지 앞에 차를 댈 수 있다. 우측 핸들에 자신 있는 운전자에게도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 도심 외곽 지역이라면 렌터카도 O.K
 - 도심 외곽 지역에서 바이어와의 약속이 있다면, 택시 이용보다 렌터카 이용이 유리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왕복 20Km 거리를 택시로 달리게 되면, 웬만한 승용차 하루 렌트비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차량은 공항에서 임차하거나, 투숙 호텔 주변의 렌터카 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국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렌터카 회사가 많기 때문에 출국 전 준비가 필요하다. 렌터카 회사는 시내 지도책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 그러나 호주의 교통 체계가 우측 운전대 시스템인 관계로 호주가 초행길인 출장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곤란하며, 통역원 등 현지 교통에 익숙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KOTRA 현지 호텔 평가표

호텔명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부대시설	평점
Shangri-La Sydney	9	10	10	10	9.75
Sydney Harbour Marriot	9	10	10	10	9.75
Novotel Sydney on Darling Harbour	7	8	9	8	8.0
Stamford Plaza Sydney Airport	6	9	8	8	7.75
Carlton Crest	8	8	8	8	8.0

1) Shangri-La Hotel, Sydney (☆☆☆☆☆)

- 위치: 사진자료상 표기 57번(176 Cumberland St. The Rocks)
 - 시드니공항에서 차로 25분, 시내 Wynyard(윈야드) 전철역에서 도보 8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450(성수기), A\$400(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 따라 가격차이가 20%이상 나기도 함.
 - 시즌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대부분 포함되어있으나 요금에 따라 확인 필요)
 - 각종 회의실에서는 무선LAN과 2Mega급 고속인터넷 사용도 가능 (사용료와 설치비가 따로 청구됨)

- 각종 부대시설
 - 특급관광지에 소재한 특급호텔로서, Gym, Spa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회의실로 사용가능한 룸은 총 18개이며, 최대규모 Ballroom은 670sm이나, 2개를 연결(벅을터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 각테일파티의 경우 1,800명을 동시수용할 수 있음.
- 연락처
 - 전화: 61-2-9250-6000 / 팩스: 61-2-9250-6250
 - 웹사이트: www.shangri-la.com
 - 한국 수신자 부담 예약 창구: 00798 601 8228

2) Sydney Harbour Marriot (☆☆☆☆☆)

- 위치: 사진자료상 표기 18번(30 Pitt St. Circular Quay)
 - 시드니공항에서 차로 25분, 시내 원아드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450(성수기), A\$289(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따라 20%이상 가격차이가 나기도 함.
 - 시즌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에서 검색 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대부분 포함되어있으나 요금에 따라 확인 필요)
 - 각종 회의실에서 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특급관광지에 소재한 특급호텔로서, Gym, Spa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각기 다른 크기의 평선룸 20개 보유
 - 최대룸인 The Gallery는 252sm이며 옆방과 터서 사용할 경우 3배로 확장이 가능
- 연락처
 - 전화: 61-2-9259-7000 / 팩스: 61-2-9251-1122
 - 웹사이트: www.marriot.com.au
- 특기사항:
 - 호텔에 렌트카 서비스업체(AVIS)가 상주해, 렌트카에 가장 편리함.
 - 시드니에 동명호텔(Sydney Marriot)이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Novotel Sydney on Darling Harbour (☆☆☆☆)

- 위치: 사진자료상 표기 32번(100 Murray St, Darling Harbour)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350(성수기), A\$200(비수기)
 - 호주의 호텔은 방의 전망에따라 가격차이가 20%이상 나기도 함.
 - 호텔별 객실요금, 객실 크기별 요금은 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대부분 포함되어있으나 요금에 따라 확인 필요)
 - 각종 회의실에서는 고속인터넷 사용이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시드니 전시컨벤션센터에 인접한 중상급 호텔로서, 회의시설은 많이 보유하지 않으나, 그 외 대부분의 시설을 완비함.
 - 12개의 회의실 갖고 있으나, 모두 소규모의 방으로 구성됨.
- 연락처
 - 전화: 61-2-9934-0000 / 팩스: 61-2-9934-0099
 - 웹사이트: www.novoteldarlingharbour.com
- 기타 특이사항: 전시회 참가시 투숙이 권장되는 호텔임.

4) Stamford Plaza Sydney Airport (☆☆☆☆)

- 위치: 시드니공항에 인접 (30 Pitt St. Circular Quay)
 - 시드니공항에 인접, 시내와는 차로 25~30분 거리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400(성수기), A\$150(비수기)
 - 이 호텔은 전망에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
 - 시즌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은 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고속인터넷 이용 가능(요금별 상이, 호텔과 확인요망)
 - 각종 회의실에서 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 각종 부대시설
 - 공항에 인접한 호텔로서, Gym, Spa등 모든 시설을 구비함.
 - 11개의 각기 다른 크기의 평선룸 보유
- 연락처
 - 전화: 61-2-9317-2200 / 팩스: 61-2-9317-3855
 - 웹사이트: www.stamford.com.au
- 특기사항:
 - 시드니 다른 지역에도 Stamford 호텔이 있는 바, Airport를 강조해야 함.

5) Carlton Crest Hotel (☆☆☆☆)

- 위치: 사진자료상 표기 27번(169 Thomas St, Sydney)
- 객실 요금 (Standard Room기준/싱글, 트윈 요금 동일)
 - A\$225(성수기), A\$170(비수기)
 - 이 호텔은 전망에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음.
 - 호텔별 객실요금, 객실 크기별 요금은 www.wotif.com에서 검색가능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모든 객실에서 전화모뎀 인터넷 이용 가능(사용료: 분당 A\$0.5)

- 각종 부대시설
 - 시드니 도심 차이나타운 인근에 위치한 중급 호텔로서, 비즈니스 호텔이라기 보다는 절약하려는 여행자에게 적합한 호텔임. 따라서, 식당, 로비, 아주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함.
 - 11개의 중소규모 회의실 갖고 있음.
- 연락처
 - 전화: 61-2-9281-6888 / 팩스: 61-2-9281-2213
 - 웹사이트: <https://www.mirvachotels.com/>
- 기타 특이사항: 바이어와의 상담을 염두에 둔 호텔이라기 보다는 저렴한 여행을 즐기려는 가족에게 적합한 호텔임.
 - 시드니 시내지도 및 호텔 위치(<http://www.scvb.com.au/why/sydney/maps>)

자. 식당

KOTRA 현지 식당 평가표

식당명	맛.위생	분위기	편의성	서비스	평점
Cafe Sydney	8	10	8	9	8.75
Machiavelli	8	9	9	8	8.5
Kabuki	9	8	8	9	8.5
Golden Century	10	8	8	7	8.25
DOORAE	8	7	9	8	8.0

1) Cafe Sydney (R5)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55번과 15번의 중간지점(5층, Customs House, 36 Alered St, Sydney)
- 주요 메뉴: 스테이크 종류와 생선요리(서양식)
- 가격대: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시 일인당 A\$60~90(US\$45~70)
- 전화: 61-2-9251-8683
- 웹사이트: www.cafesydney.com

2) Machiavelli (R5)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6번과 20번의 중간지점 (123 Clarence St. Sydney)
- 주요메뉴: 스테이크 종류와 스파게티 (서양식)
- 가격대: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시 일인당 A\$45~80(US\$35~60)
- 연락처: 61-2-9299-3748
- 특기사항: 지하에 위치해 전망은 없으나, 호주 역대 수상들이 즐겨찾은 명소중 하나임.

3) Kabuki (R2)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6번과 7번의 중간지점 (31 Market St. Sydney)
- 주요 메뉴: 일본식 스시, 사시미 등 (서양식)
- 가격대: 중식 기준 일인당 A\$30~40(US\$25~30)
- 연락처: 61-2-9267-4552

4) Golden Century (R3)

- 위치: 위 호텔지도에서 28번과 33번의 중간지점 (393 Sussex St. Sydney)
- 주요메뉴: 바다가재, 왕게, 새우, 전복 등 해산물 요리(중국식)
- 가격대: 일인당 A\$50~70(US\$38~54)
- 연락처: 61-2-9212-3901
- 특기사항: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 식당으로 알려지고 있고, 손님이 너무 많아 조용히 환담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님. 맛을 즐기는 식당임

5) DOORAE (R4)

- 위치: 위 호텔지도의 6번과 17번의 중간지점 (209 Clarence St. Sydney)
- 주요메뉴: 김치찌개, 칼국수 등 한식 일체
- 가격대: 일인당 A\$10~20(US\$8~15)
- 전 화: 61-2-9290-1004
- 특기사항: 시드니 CBD에 소재한 한식 대중 음식점으로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나 음식맛은 좋은 편이며 2층에 룸이 준비되어 있음
- 식당 분류(용도에 따른 분류)
 - R1: 가벼운 런치나 간단한 식사 혹은 차를 즐길 수 있는 식당
 - R2: 비즈니스 미팅.상당에 적합한 조용한 식당
 - R3: 주류를 중심으로 접대에 적합한 식당
 - R4: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2층에 별도 방 마련
 - R5: 제대로 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아. 관공서 관행

□ Business Hours

일반 회사의 근무 시간은 보통 09:00~ 17:00이며, 토요일요일은 휴무이다. 매주 목요일은 Shopping Day라 하여 대부분의 소매 상점들이 저녁 근무 시간을 21:00까지 늘리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당 40시간 미만의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 4월부터 Westpac 은행이 고객 편의 확대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시행 중인 것이 특색이다.

자. 공휴일

시드니가 소재한 NSW주의 2011년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주별로 공휴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타 주의 공휴일을 확인할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 www.australia.gov.au > topics > australian facts and figures > public-holidays

	2011	2012
New Year's Day	Saturday, 1 January	Sunday, 1 January
Additional Day	Monday, 3 January	Monday, 2 January
Australia Day	Wednesday, 26 January	Thursday, 26 January
Good Friday	Friday, 22 April	Friday, 6 April
Easter Saturday	Saturday, 23 April	Saturday, 7 April
Easter Sunday	Sunday, 24 April	Sunday, 8 April
Easter Monday	Tuesday, 26 April	Monday, 9 April
Anzac Day	#Monday, 25 April	Wednesday, 25 April
Queen's Birthday	Monday, 13 June	Monday, 11 June
Labour Day	Monday, 3 October	Monday, 1 October
*Additional Day	Sunday, 25 December	
Christmas Day	##Monday, 26 December	Tuesday, 25 December
Boxing Day	Tuesday, 27 December	

차. 체류 시 유의 사항

□ 의복 준비

호주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이나 시드니의 겨울은 그리 춥지 않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겨울 옷가지는 한국의 늦가을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호주의 겨울은 한국에 비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밤과 새벽에는 오싹할 정도로 쌀쌀하므로 감기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에는 기온은 높으나 한국과 달리 고온 건조한 날씨이다. 옷가지는 한국의 여름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나, 태양 광선이 강하므로 선블록 크림과 선글라스를 함께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될 경우 머리 두피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 착용도 권장된다.

□ 전기 규격

240V, 50Hz의 전기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콘센트 구멍이 3개(Y타입)로 되어 있어 한국 전기 제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호주에서 별도의 어댑터(A\$ 10불 정도)를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호텔에는 110V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다.

□ 치안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흉기나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양호하나, 킹스크로스과 같은 유흥가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야간에는 시내에서도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호주가 마약에 대해 관대한 나라는 아니지만, 약한 환각성 물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수단의 하나로 킹스크로스 지역에 마약 주사실을 정부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 중독자들이 지하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시내 주요 거리나 대중교통수단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에는 곳곳에 Help Point라는 긴급 구호 요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최근 택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모든 택시에는 운전 사의 좌석을 중심으로 안전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 응급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 '000'번을 누르면 안내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준다. 000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나, 응급실 이용 등 개인 관련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지의 의료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일반 진찰 시 A\$65 정도를 지불하면 된다. 영어를 할 수 없다면, "Korean Translator Please"라고 하여 한국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 팁관행

호주에서는 청구된 요금 이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음식점에서는 주말 및 평일 밤 12시 이후에(24시간 레스토랑일 경우) 서비스료로 10%를 음식 값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값의 10% 정도를 팁으로 줄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 식수

일반적으로 시드니의 수돗물은 식수로 이용이 가능하다.

카. 주요 연락처

1) 주요 연락처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호주한국대사관(캔버라)	대사 김우상	(61-2)6270-4100	http://aus-act.mofat.go.kr/
시드니총영사관(시드니)	총영사 김진수	(61-2)9210-0200	http://aus-sydney.mofat.go.kr
시드니KBC(시드니)	센터장 황중하	(61-2)9264-5199	www.kotra.or.kr/sydney
멜버른KBC(멜버른)	센터장 어성일	(61-3)9867-1988	www.kotra.or.kr/ktc/mel
한국관광공사(시드니)	지사장 조준길	(61-2)9252-4147	www.visitkorea.or.kr
한국광물자원공사(시드니)	법인장 이정기	(61-2)9959-5444	www.kores.or.kr

2) KOTRA KBC 안내

□ 시드니 KBC

○ 오시는 길

- 방법1: 택시-Market St. 1번지 빌딩 하차, 공항에서 30 여분 소요
- 방법2: 대중교통-시드니 Kingsford 공항에서 전철 또는 300번 공항버스 이용. Town

Hall 역에서 하차, Kent St. 방향으로 도보로 5분 정도 이동하면 건물(Market St. 1번지, BT Tower)이 보임. 30분 가량 소요

○ KBC 연락처

- 주소: Korea Trade Centre, Sydney Suite 240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전화:(61-2)9264-5199 / 팩스:(61-2)9264-5299
- E-mail: info@kotra.org.au

□ 멜버른 KBC

○ 오시는 길

- 방법1: 택시 - 멜버른 공항에서 KBC 까지의 택시 요금은 통행료를 포함하여 약 A\$ 45 내외로 소요 시간은 약 35-45분 정도임(KBC 주소를 보여주면 됨)
- 방법2: 대중 교통(Skybus & Tram) - 멜버른 공항에서 Skybus를 타고 '멜버른 타운 홀'에서 내린 후, 타운 홀 앞에서 St. Kilda행 트램으로 갈아탄 다음 '도메인 인터체인지'에서 내림. KBC 는 '도메인 인터체인지'역 앞에 위치함.

○ KBC 연락처

- 주소: Korea Trade Centre Melbourne Level 6, 20-22 Albert Road, South Melbourne, Victoria, 3205 Australia
- 전화:(61-3)9699-3833
- 팩스:(61-3)9699-3811
- E-mail: kotramel@bigpond.net.au

타. 기타 정보

1) 'KOTRA'가 추천하는 바이어 선물

바이어와의 첫 만남이라면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한국적인 제품이되 바이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저렴한 것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갈피, 열쇠고리, 핸드폰 액세서리, 팬 등이 선물하기 좋다.

첫 상담이 아닌 기존의 바이어라면 바이어의 성향에 따라 인삼차, 자개 보석함, 명함함과 같은 한국 전통 공예품이되 개인용 소지품이 적당하다. 하회탈과 같은 나무 공예품은 세관 통관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벽걸이 공예품은 아시아 문화 애호가га 아니면 처치 곤란한 선 물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2) 호주 문화 이것만은 주의하자

□ 상담 시간

호주인들은 상담 중 점심시간이 1~2시간 지나도 전혀 관계치 않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식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초면에 정규 근무 시간(오전 9~5시) 외의 상담이나 주말에 상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례가 되는 일이니 삼가는 것이 좋다. 호주인들은 '접대 문화'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먼저 권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사전 약속은 필수

업체와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 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은 호주에서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특히 큰 업체의 경우 구매 담당자는 2개월 전에도 약속을 잡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사전 약속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이 주선된 바이어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바이어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상담을 진행시킬 수 있다.

□ 비즈니스 쇼핑

출장자를 고민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귀국 선물 구입이다. 가족, 친지는 물론 동료 뉘까지 챙겨야 할 때가 적지 않은 때문이다. 호주는 가전 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한국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선물로 구입할 물품의 범위가 무척 제한적이다. 호주의 토산 품으로는 양모 이불, 캥거루 가죽 모피, 마누카 꿀과 같은 건강 식품 등을 들 수 있다. 토산품 중에서도 크기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는 건강식품류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토산품 구입은 Chatswood, Eastwood 등과 같이 한국 교포가 다수 모여 사는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리에 어둡고 교통편도 없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쇼핑에 나서기도 하는데, 십중팔구는 나중에 3배 이상의 바가지를 썼다고 울분을 토한다고 한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Chatswood, Eastwood 등 전철역 인근에서는 한국인 가게를 찾는 일도 어렵지 않다. 한국인 가게에 들러 인근의 선물 용품 판매업소 위치를 물어 찾아가면 바가지를 쓰는 일은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낯선 전철역에 내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되니 일거 양득이라 하겠다.

4) 유용한 현지어 표현

호주영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 영어와 조금 차이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호주 영어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파벳 a의 발음을 대부분 '아'로 발음한다. 가령, 'I can't'의 경우 미국식으로는 '아이 캔트'가 되지만 호주에서는 '아이 칸트'로 발음한다.

그 밖에 알아두면 호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 Shout는 한잔 사기

동료들과의 술자리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함께 자리한 동료들에게 한턱 낸다는 뜻으로 "That's my shout"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표현은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표현으로 호주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mateship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B.Y.O

B.Y.O는 Bring Your Own의 약자이다. 이것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힘든 호주의 식당들이 손님에게 마실 술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있게 배려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전에 B.Y.O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Licensed'라고 쓰여 있는 음식점은 주류 판매 허가를 얻은 곳으로서, B.Y.O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Aussie와 Mateship

호주에서는 Aussie(오지)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 말은 순수 토박이 호주인을 일컫는 것으로 상당히 친밀감이 있는 단어이다. 영국 및 아일랜드계의 이민자의 자손들은 스스로를 Aussie라고 칭하면서 호주 개척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진다. 'Mate'은 호주 남 성들이 자주 쓰는 말로 친근하게 상대방을 부르는 표현이다.

□ G'day mate!

호주 발음으로 '그데이 마이트'라고 읽히며,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인사로 쓰이는 말이다. 영국식 인사 Good Day에서 줄여져 사용되고 있다.

□ 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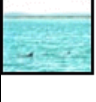
'타'라는 말은 'Thank you'를 슬랭 형식으로 짧게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다. 이 외에도 Cheers 역시 Thank you 대신 사용되는 말이다.

파. 관광정보

□ 비즈니스 관광

관광은 휴식을 줄 뿐 아니라 시야도 넓혀 주고 바이어와의 대화 소재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매년 호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600만명을 넘고 있어 시드니나 멜버른에는 호주인들이 운영하는 일일관광 여행사뿐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일관광 여행사도 많다.

지리 정보에 어둡고 교통 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출장자에게는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프로그램		주요 경유지 및 관광거리	비용(1인)
	시티고급 투어	아쿠아리움 (수족관) - 본다이 비치 - 더들리 페이지-갭 공원- 미세스 맥과리포인트-오페라하우스 - 하버브릿지 - 하버하이 라이트 크루즈- AMP 타워	A\$ 100
	시티일반 투어	본다이 비치- 더들리 페이지-갭공원- 미세스 맥과리포인트 - 오페라하우스- 하버 하이라이트 크루즈	A\$ 65
	블루 마운틴 & 동물원	동물원- 세자매봉-괘도 열차-웬트워스 폭포	A\$ 75
	남태평양 돌고래 투어 (1박 2일)	사막 투어-조개잡이-돌고래 크루즈-포트스테판 와이너리	A\$ 80
	제놀란 동굴 & 블루마운틴	제놀란 동굴- 세자매봉- 괘도 열차	A\$ 90

	캔버라	인공호수-국회 의사당-대사관 마을-에인즐리 마운틴	A\$ 80
	시티 야경 (3시간 코스)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 오페라 하우스- 노스 시드니- 해저터널 - 록스	A\$ 30

일일 관광 주요 프로그램(시드니 중심)

위 요금은 입장료와 간단한 점심이 포함된 것으로 여행사에 따라 1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내 소재 호텔에는 외국인 여행사의 일일 관광 안내서가 거의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다. 한국인 여행사를 이용하려면 아래 회사별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시드니에 도착한 후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도 과히 비싸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시드니에 소재한 한국인 여행사는 일주일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관광객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멜버른의 경우 비수기 때에 일정 계획이 축소 되기도 한다.

주요 한국인 운영 일일 관광 여행사

회사 명	전화	소재 도시	특기 사항
Sun Tours	02-9764-4088	시드니	일일관광 + 골프, 사냥, 낚시 (www.suntours.com.au)
대한관광여행사	02-9235-0000	시드니	일일관광 + 항공권 발급 (www.ottworldnet.com)
오세아니아 여행사	02-9267-2525	시드니	일일관광 + 항공권 발급 (otssyd2000@yahoo.com.au)
멜번여행사	03-9571-0866	멜버른	일일관광(landsuntravel@hotmail.com)
멜번테마여행	03-9650-3800	멜버른	일일관광(www.msqtravel.com)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2011 주요 전시회 일정

번호	전시회명	전시기간	도시
1	선물 박람회	2011/01/30~2011/02/02	멜버른
2	정보 통신 박람회	2011/02/01~2011/02/03	시드니
3	호주 시드니 장식디자인 박람회	2011/02/02~2011/02/04	시드니
4	호주 국제가구전	2011/02/02~2011/02/04	시드니
5	호주 퍼스 건강 & 피트니스 컨퍼런스	2011/02/05~2011/02/06	퍼스
6	호주 신발 박람회	2011/02/11~2011/02/13	시드니
7	호주 라이프 인스타일 박람회	2011/02/17~2011/02/20	시드니
8	호주 퍼스 여행, 휴가 엑스포	2011/02/19~2011/02/20	퍼스
9	호주 애완동물 박람회	2011/02/19~2011/02/20	시드니
10	호주 시드니 가정 & 선물용품 박람회	2011/02/19~2011/02/22	시드니

번호	전시회명	전시기간	도시
11	호주 선물용품 박람회	2011/02/19~2011/02/23	시드니
12	호주 오일 & 가스 박람회	2011/02/23~2011/02/25	퍼스
13	호주 건설 장비전	2011/02/24~2011/02/26	멜버른
14	호주 방위산업 박람회	2011/03/01~2011/03/06	멜버른
15	호주 국제 에어쇼, 항공 우주 박람회	2011/03/01~2011/03/06	멜버른
16	호주 홈쇼 & 가정기술 박람회	2011/03/04~2011/03/07	퍼스
17	호주 패션 박람회	2011/03/06~2011/03/08	시드니
18	호주 가방 & 악세사리 박람회	2011/03/06~2011/03/08	시드니
19	호주 장난감 박람회	2011/03/10~2011/03/13	멜버른
20	호주 멜버른 완구 및 취미용품 전시회	2011/03/10~2011/03/13	멜버른
21	호주 시드니 타투 & 바디 아트 전시회	2011/03/11~2011/03/13	시드니
22	호주 편의점 박람회	2011/03/16~2011/03/17	시드니
23	호주 퍼스 캐러반 & 캠핑쇼	2011/03/17~2011/03/21	퍼스
24	호주 퍼스 서비스업 박람회	2011/03/20~2011/03/22	퍼스
25	24 회 국제안과학회 및 박람회	2011/03/20~2011/03/22	시드니
26	호주 포장기자재 박람회	2011/03/22~2011/03/25	멜버른
27	호주 아델레이드 도시발전 산업 컨퍼런스	2011/03/28~2011/03/31	아델레이드
28	호주 시드니 우표 박람회	2011/03/31~2011/04/03	시드니
29	호주 프랜차이즈 & 사업구상 박람회	2011/04/01~2011/04/03	브리스베인
30	호주 자원수송 박람회	2011/04/05~2011/04/07	멜버른
31	호주 청소 & 위생 엑스포	2011/04/05~2011/04/07	멜버른
32	호주 탄소량 배출 저감대책 박람회	2011/04/05~2011/04/07	멜버른
33	호주 안전보안 박람회	2011/04/05~2011/04/07	멜버른
34	호주 브리즈번 4륜구동차 박람회	2011/04/08~2011/04/10	브리스베인
35	호주 건축, 인테리어 엑스포 2011	2011/04/13~2011/04/15	멜버른
36	호주 조경 전시 & 컨퍼런스	2011/04/14~2011/04/15	브리스베인
37	호주 화이트니스 산업 컨벤션 2011	2011/04/15~2011/04/17	시드니
38	호주 보석 박람회	2011/04/15~2011/04/17	브리스베인
39	호주 브리스베인 관광 여행박람회	2011/04/15~2011/04/17	브리스베인
40	호주 시드니 혼수용품 박람회	2011/04/16~2011/04/17	시드니
41	HIA 홈 아이디어 쇼 2011	2011/04/28~2011/05/01	멜버른
42	호주 건강 푸드 & 라이프 스타일 쇼	2011/04/29~2011/05/01	멜버른
43	호주 프린트 엑스포 2011	2011/05/04~2011/05/06	시드니
44	호주 수자원 박람회	2011/05/09~2011/05/11	아델레이드
45	호주 글로벌 소싱 & 제조업 박람회	2011/05/11~2011/05/13	멜버른
46	호주 디자인건축 박람회 2011	2011/05/11~2011/05/13	시드니
47	호주 자동차 부품 박람회	2011/05/12~2011/05/14	멜버른
48	호주 부품수리 관련 전시회	2011/05/12~2011/05/14	멜버른
49	호주 퍼스 직업, 교육 & 고용 박람회	2011/05/13~2011/05/15	퍼스
50	호주 글루텐 프리 박람회	2011/05/14~2011/05/15	브리스베인
51	호주 건설 기자재/용품 박람회	2011/05/15~2011/05/18	아델레이드
52	호주 시드니 주택 박람회 2011	2011/05/19~2011/05/22	시드니
53	호주 로봇공학 & 자동화 컨퍼런스	2011/05/24~2011/05/27	멜버른
54	호주 플라스틱 관련 산업 전시회	2011/05/24~2011/05/27	멜버른
55	호주 제조업 워크 전시회	2011/05/24~2011/05/27	멜버른
56	호주 실버산업 및 노후설계 박람회	2011/05/27~2011/05/29	캔버라
57	호주 국제 스키 여행 엑스포	2011/05/28~2011/05/28	멜버른
58	호주 시드니 정보통신 박람회 2011	2011/05/30~2011/06/01	시드니
59	호주 빅토리아주 클럽&호텔 전시회	2011/05/31~2011/06/01	멜버른
60	MBA 건축 및 홈 단장박람회	2011/06/04~2011/06/06	퍼스

번호	전시회명	전시기간	도시
61	호주 퍼스 여성관련상품 박람회	2011/06/24~2011/06/26	퍼스
62	호주 식품 & 와인 박람회	2011/07/01~2011/07/03	시드니
63	호주 국제 식품 가공 박람회	2011/07/10~2011/07/13	시드니
64	주거개선박람회 2011	2011/07/15~2011/07/17	멜버른
65	시드니 만화 & 애니메이션 쇼	2011/07/16~2011/07/16	호주
66	미디어 기술산업 회의 및 전시회 2011	2011/07/19~2011/07/22	호주
67	멜버른 국제 가구전	2011/07/21~2011/07/24	호주
68	골드코스트 홈 & 카라반 & 캠핑 박람회	2011/07/22~2011/07/24	브리스베인
69	호주 실버산업 및 노후설계 박람회	2011/07/22~2011/07/24	시드니
70	시드니 국제 보트 쇼	2011/07/28~2011/08/01	시드니
71	호주 퀸즐랜드 레저 박람회	2011/07/29~2011/07/31	브리스베인
72	멜번 커리어 박람회	2011/07/29~2011/07/31	멜버른
73	시드니 광학전	2011/08/05~2011/08/07	시드니
74	오가닉 & 그린 박람회	2011/08/05~2011/08/07	시드니
75	호주 가정 & 선물 용품 박람회	2011/08/06~2011/08/10	멜버른
76	시드니 이벤트산업 박람회	2011/08/10~2011/08/11	시드니
77	호주 비즈니스 이벤트 박람회	2011/08/10~2011/08/11	시드니
78	시드니 국제미용 박람회	2011/08/13~2011/08/14	시드니
79	구나다 농기계 박람회	2011/08/16~2011/08/18	구나다
80	호주바이오산업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11/08/16~2011/08/19	아델레이드
81	헤럴드썬 홈 & 가든 쇼	2011/08/18~2011/08/21	멜버른
82	호주 그린 건축 박람회	2011/08/18~2011/08/21	멜버른
83	호주 프랜차이즈 & 사업기회 박람회 2011	2011/08/19~2011/08/21	멜버른
84	호주 게임 박람회	2011/08/21~2011/08/23	시드니
85	호주 보안산업 박람회	2011/08/24~2011/08/26	시드니
86	시드니 보석전 2011	2011/08/28~2011/08/30	시드니
87	호주 패션 박람회	2011/08/28~2011/08/30	멜버른
88	호주 비즈니스 & IT 박람회	2011/08/30~2011/08/31	시드니
89	호주 조경 박람회	2011/09/01~2011/09/02	멜버른
90	호주 낚시, 레저 박람회	2011/09/02~2011/09/04	멜버른
91	시드니 식품 박람회 2011	2011/09/05~2011/09/08	시드니
92	광산업 전시회	2011/09/06~2011/09/09	시드니
93	시드니 봄맞이 홈 쇼	2011/09/10~2011/09/11	시드니
94	라벤스도프 야생초 쇼	2011/09/10~2011/09/24	퍼스
95	알루미늄캐스트 하우스 테크놀로지 전시회	2011/09/11~2011/09/14	멜버른
96	호주 선물용품 박람회	2011/09/17~2011/09/20	시드니
97	전자상거래 회의 및 박람회	2011/09/27~2011/09/28	시드니
98	호주 홈쇼 및 수영장 & 스파 박람회	2011/10/08~2011/10/09	퍼스
99	호주바이오산업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11/10/16~2011/10/19	아델레이드
100	시드니 보안/안전 박람회	2011/10/25~2011/10/27	시드니
101	전자 상거래 박람회	2011/10/27~2011/10/27	시드니
102	시드니 여행 & 백팩커 박람회	2011/11/06~2011/11/07	시드니
103	호주 전기 발전 박람회	2011/11/16~2011/11/18	브리스베인
104	시드니 오토바이 쇼	2011/11/25~2011/11/27	시드니
105	호주 모터사이클 박람회	2011/11/26~2011/11/28	멜버른

주: 전시회별 세부내역은 www.gep.or.kr(한국 사이트) 또는 <http://www.eeaa.com.au>(호주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무역투자 관련 주요 유관기관 웹사이트

기관명	업무	웹사이트
AUSTRADE	국가 무역투자 진흥	www.austrade.gov.au
Clean Energy Council	녹색산업대표단체	www.cleanenergycouncil.org.au
Environment Business Australia	녹색산업대표단체	www.eba.org.au
Energy Suppliers Association of Australia	에너지 공급기업 대표단체	www.esaa.org.au
NSW 주정부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www.nsw.gov.au
빅토리아 주정부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www.vic.gov.au
퀸즈랜드 주정부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www.qld.gov.au
서호주 주정부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www.wa.gov.au
남호주 주정부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www.sa.gov.au
Australian Customs	관세청	www.customs.gov.au
AQIS	검역청	www.aqis.gov.au
Australian Taxation Office	국세청	www.ato.gov.au
ASIC	증권관리위원회(기업등록)	www.asic.com.au
IP Australia	지재권 감독 정부기관	www.ipaustralia.gov.au
Standard Australia	호주 국가표준 감독	www.standards.com.au
FIRB	해외투자 승인기관	www.firb.gov.au